

ISSN :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11 / 2017. Winter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11. 2017 Winter

2017년 12월 31일 초판 발행

2018년 10월 31일 제 2판 발행

역은이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364

FAX 070-4850-8428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1길14 배재대학교 21세기관 448호

펴낸곳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지원(NRF-2014 B0153)하에 시작,
2016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NRF-2016 B0131)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

디 자 인 : 이다용

표지사진 : 이재혁(Nordkap, 2012)

목 차

논 설

러시아 혁명 100주년과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150주년: 북극을 중심으로 (한종만) 1

한국과 일본의 북극 연구 경향 및 전략 비교 (김정훈, 백영준) 7

슈발바르 군도를 둘러싼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관할권 갈등 (박종관) ... 27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지역 소수민족 정책 (계용택) 48

알류산열도의 지역적 특성 (한종만) 65

북극 러시아를 위한 협력과 개발 방안 연구 (양정훈) 86

북극 원주민의 권리 (서승현) 101

시베리아 소수민족 장난감 문화 (계용택) 105

부 록

북극권 관련 뉴스 (2017.09.26 – 2017.12.20. 최신 뉴스순 정리)

북극연구단 소개

러시아 혁명 100주년과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150주년: 북극을 중심으로¹⁾

한종만

I. 주요내용

▶ 2017년은 러시아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 러시아혁명(1917년) 100주년, ‘루스카야 아메리카(알래스카)’ 미국 양도(1867년) 150주년, 북극의 개방과 평화지대를 주창한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1987년) 30주년인 동시에 북극점 근처 해저에 러시아 잠수정 미르호에 의한 티타늄으로 제작된 러시아 국기계양 사건 10주년(2007년).

▶ 세계사의 대변동을 가져왔던 러시아혁명에 대한 재조명과 소련 해체 이후 발트 해, 흑해, 카스피 해 제해권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기는 하였지만, 북극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북극제국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분석 필요.

▶ 따라서 알래스카 매매 15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배경과 의미,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 관점에서 알래스카를 조명하고자 함.

▶ 지구온난화, 과학혁명으로 인류의 생활공간이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 북극권과 알래스카의 가치는 더욱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신북방’ 정책도 대륙국가 뿐만 아니라 동해를 거쳐 오호츠크 해와 베링 해를 포함하는 북미 북극권까지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1. 소련 시대의 러시아 혁명 혹은 ‘10월 혁명’의 평가:

-1917년 10월 25일(러시아가 쓰던 구력인 율리우스력,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1월 7일)에 케렌스키 임시내각의 접수에 성공하면서 매 11월 7일 혁명기념 축제와 행사를 거행해왔음.

-레닌의 치밀한 혁명 전략과 1917년 4월 테제 중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에게’, ‘모든 토지는 농민에게’, ‘독일과 휴전 협정’ 강령이 혁명의 도화선으로 부상함.

-소련 해체 이전까지 러시아 혁명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밑으로부터’, 자발적이며 내부에 의해 성공한 혁명으로 자찬해왔으며, 서구의 일부 지식인들도 지지해왔음.

-세계 여러 연구기관과 지식인, 특히 역사학자의 ‘러시아혁명사’의 연구와 대학에서 강의가 개설되었음.

-이를 기반으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냉전 시대 ‘제2세계’권을 구축했음.

1) 이 글은 ‘『EMERiCs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년 12월 6일, pp.1-6’ 게재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1924년 초 레닌 사망 이후 전격적인 ‘레닌의 영웅화 혹은 신격화’ 작업 시행; 소련의 모든 도시에 레닌 기념물 설립[레닌광장, 레닌대로(혹은 거리), 레닌동상], 상트페테르부르크(당시 페트로그라드) 도시명도 레닌그라드로 명칭 변경(이 도시명은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갔지만 아직도 ‘레닌그라드 주’는 존재함), 1960년 세계최초의 핵추진 쇄빙선도 ‘레닌 호’도 진수됨.

2. 사회주의 대붕괴 이후 러시아 혁명의 재평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도미노 방식으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몰락함.

-레닌의 평가절하로 레닌동상 철거와 함께 영구보존 처리된 크렘린 지하 레닌 묘의 이장 여론이 증가됨

-러시아 사학자들도 10월 혁명은 민중혁명이 아니라 일부 볼셰비키들에 의한 ‘위로부터’, 내부와 자생적으로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 모든 권력이 소비에트 구성원인 인민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민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음.

-러시아 공산당을 제외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강한 러시아’ 슬로건을 내건 푸틴 대통령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향수와 국가자본주의 정당성을 위해 10월 혁명과 소련의 공과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소련 시대만큼 군과 방위산업의 현대화와 해양대국(흑해 크림반도 병합, 발트, 태평양, 북극함대)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3.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150주년

▶ 원인과 분석:

-알래스카는 알류트어로 ‘거대한 땅’ 혹은 ‘섬이 아닌 땅’.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 일만 년 전 베링해협은 아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을 연결하는 육로연결로(Beringia) 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대륙으로 이주하는 계기를 조성하면 알래스카 원주민이 어업과 수렵 생활을 한 지역이었음.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해로의 모색을 주문한 포트리 대체의 명에 따라 덴마크 계비투스 베링은 1741년 알래스카 해안에 유럽인 최초로 접근했지만 귀환 과정에서 후에 베링섬으로 명명된 지역에서 사망했음.

-러시아는 모피 거래를 위해 알래스카에 관심을 가졌으며 1741년부터 여러 번 탐험을 시작한 이래로 1867년까지 식민화했으며, 원주민 툴링깃 인들과의 전투에 승리한 알렉산더 바라노프 총독은 1808년 알래스카의 행정수도로 노보아르한겔스크[지금 시카(Sitka)]를 지정했음.

-러시아의 모피 거래의 원천(물개와 바다수달 등)도 남획으로 사라지면서 알래스카 모피사업의 수익성의 매력이 상실되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부터 알래스카까지 여행은 반 년 이상 걸리면서 효율적 행정의 어려움과 러시아 통치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했음. 스페인도 알래스카를 여러 차례 정복하려고 했지만 높은 비용과 수익성 문제로 포기했음.

-러시아의 남하정책(중앙아시아와 흑해지역)과 서남아시아를 식민화한 대영제국과의 충돌, 특히 크림 전쟁(1853년 10월-1856년 2월) 패배 이후 당시 대영제국의 영토인 캐나다로부터 인접한 알래스카 침략 가능성이 높아졌음.

-‘1812년 전쟁’(미국과 프랑스의 무역 간섭을 내걸면서 대영제국이 1815년까지 미국 영토를 공격한 전쟁)으로 미국과 영국 관계 악화를 간파한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는 재정난의 극복과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신흥 강국인 미국에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의 남북전쟁(1861-65년)으로 협상이 연기됨.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은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의 영토 팽창의 야심과 더불어 북태평양의 선점과 러시아 경유 유럽 전진망 선점을 통해 영국의 견제 역할도 주효했음.

-1867년 3월 30일에 주미 러시아 공사 에두아르트 스톡클과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는 720만 달러(현재 16억 7,000만 달러)로 알래스카를 매매하기로 한 협상에 조인(알래스카의 면적은 미국 면적의 5분의 1로 160만km²로 매매가격은 1km² 당 5달러 수준)함.

-당시 알래스카 구입은 미국 국내에서 ‘바보짓’ 혹은 ‘슈어드의 얼음박스’라 조롱받았으며, 앤드류 존슨 대통령도 ‘북극곰의 정원’이라 비판받음

-의회 비준이 늦어지면서 공식적으로 10월 18일(알래스카 날)에 지금의 깃카 향 언덕의 국기 게양식(러시아 국기를 내리고 미국 성조기를 올림)으로 일단락 됨.

-현재 알래스카 구입은 미국에게 축복을 안겨 준 전대미문의 거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성공한 슈어드에 관련한 여러 기념 작업이 시행되고 있음: 매년 3월 마지막 월요일을 ‘슈어드의 날’로 지정, 알래스카 내 ‘슈어드 만’, ‘슈어드 하이웨이’, ‘슈어드 항과 시’ 등을 지정함.

-실제로 알래스카 구입 이후 19세기말 골드러시, 수산업(킹크랩, 연어, 큰 넙치 등), 광산개발(구리, 석탄, 비철금속), 목재개발, 유전발견과 연간 100만 여명의 크루즈선 관광 등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 달러의 가치를 상회하고 있음.

-1942년 일본군은 알류산 열도 어널스카(Unalaska)와 애머크낙(Amaknak)섬 폭격, 1943년 알래스카 아투(Attu)섬과 키스카(Kiska)섬을 점령(아투 전투): 사가들은 이 전쟁을 영국군에 이어 2번째로 미국 영토가 침범당한 ‘잊힌 전쟁(Forgotten War)’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알래스카는 군사적 목적(항구개발과 군사기지 조성)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조성됨.

-1964년 3월 27일 알래스카 대지진(순간 규모 9.2, 진도 8.4)의 자연재해와 1989년 3월 23일 엑슨발데즈 원유유출 사고의 인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의 가치는 여전히 높음.

-경제적 가치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의 전쟁, 냉전 시대 때 알래스카는 군사기지, 미사일방어 체제, 핵잠수함, 1965-71년 알류산 열도 암치카(Amchitka)섬에서의 핵 실험장 운영, 북극 연안국으로 북극이사회 창설 정회원국의 지위확보 등 지정학적 및 지전략적 가치는 급부상(북동항로와 북서항로의 관문인 베링 해와 알류산 열도의 상당부분이 위치)하고 있음.

-미국 의회는 알래스카를 1912년 준주로, 1959년 1월 3일 49번째 주로 승격함.

-현재 알래스카의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16년 7월 1일 기준으

로 총 인구수는 74만 1,894명, 수도인 주노 시의 인구수는 3만 2,568명, 가장 큰 도시인 앵커리지의 인구수는 29만 8,192명이며, 유픽, 이누피아트, 틀링깃, 하이다, 아타파스카, 알류트 인 등의 원주민((북극이사회의 창설 시기부터 영구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음)의 비중은 13% 정도임.

-그러나, 알래스카의 적은 인구와 지리적 원격성 그리고 고립된 영토로 인해 북극권 국가라는 미국의 정체성은 여타 북극권국가보다 미약한 편이며, 실제로 냉전 붕괴 이후 북극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북극 개발과 쇄빙선을 포함한 전략적 자산의 구축을 등한시했으며, 러시아의 강력한 북극개발과 영유권 확대 준비, 군사 기지의 재구축 외에도 비북극권 국가인 중국의 북극 개입이 심화된 이후 미국은 최근 북극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러시아혁명 100주년은 러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대전환점을 조성한 사건으로 러시아혁명의 공과(功過)는 공보다 과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혁명’이라는 용어는 항상 자기성찰의 반영을 재조명할 수 있으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보다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150주년은 당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지만, 현재 관점에서 그 공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공 러시아는 과가 많다고 생각됨.

-백해 아르한겔스크 출신이며, 러시아의 대학자이며,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창설자 미하일 로모노소프는 예카테리나 2세 아들 파벨 황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베리아와 북극해는 러시아 국부와 강대국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기술한 바 있음.

-로모노소프의 지적처럼 러시아는 영토대국, 군사대국, 자원/에너지 강국, 농업강국, 물류대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미국도 알래스카 구입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함.

-세계의 모든 패권 국가들은 바다의 지배를 통해 부상하였으며, 예를 들면 로마제국은 지중해를 통해 팍스 로마나(Pax Romana), 대영제국은 대서양을 통해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ica), 미국은 태평양을 통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를 구축했음.

-지구온난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북극의 자원개발과 이용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팍스 아티카(Pax Arctica)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북극으로 진출과 이용을 모색하면서 자원/물류 전쟁을 가시화하고 있으나, 그 개발과 이용은 우주탐사처럼 고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지구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과학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또한 북극은 지구의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민감한 지역으로 지구촌의 협력과 평화를 바탕으로 생태계에 기반을 둔 개발과 북극항로(북동, 북서, 북극점 경유 항로)이용 정책이 필요하며, 러시아 추코트카 반도와 알래스카를 잇는 베링해협 터널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서 중단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역발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와 미국 간 평화로의 달성뿐만 아니라 세기의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세계경

제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명실 공히 글로벌 파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북극 파워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나, 대륙붕 외연 확대 권리를 지닌 북극권 국가(Arctic 5)인 동시에 북극 개발과 이용 그리고 환경보존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88 올림픽 이후 한국의 대 북방정책은 대 사회주의권과의 협력과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북방 혹은 신북방 등의 용어개념을 통해 북한, 동북아, 유라시아공간으로 확대 정책은 전체 북극공간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팍스 아티카(Pax Arctica) 시대의 대비와 한국의 성장공간과 비전을 위해 유라시아를 포함해서 북극의 전초기지로 나아갈 해양공간인 한국의 동해, 오희츠크 해, 알류산 열도를 포함한 베링 해와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극권까지 포함하는 ‘유람시아(Euramsia: **E**urope**A**merica**A**sia)’어젠다로 확대할 필요성 있음.

-이를 통해 한국은 대륙세력뿐만 아니라 해양세력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대 중국 경사도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일본과 미국의 학자들은 아메리카 북극권과 북태평양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미국, 일본, 캐나다의 3각 협력 동맹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 협력체제에 편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정재원, “100주년 맞은 러시아 혁명의 현대적 의미,”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450호, 2017년 11월 13일.

최윤필, “알래스카 할양식(10월 18일),” 『한국일보』, 2017년 10월 18일.

한종만, “미국의 북극개발 전략,” 이상준, 김준기, 한종만, 이대식, 조정원 공저, 『강대국의 북극개발전략과 한국의 북극개발 참여 방안』, 2015년 헌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총서, pp.79-129.

Carr, E. Edward,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23* (London: Penguin, 1952).

Carr, E. Edward and Robert W. Davies, *The Russian Revolution, From Lenin to Stalin 1917-29* (London and Basingstoke, 1979).

Cohen, Stephen, *Bukharin and Bolshevik R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Norris, Tina, Paula L. Vines, and Elizabeth M. Hoeffel, “The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 Issued Jan. 2012, pp.1-21.

“Russia Transfers Alaska to the United States: 150th Anniversary, October 18, 2017,” *Release Number: CB17-SFS.91*.

Кинжалов, Р. В., *Русская Америка* (Москва: Мысль, 1994).

Миронов, Иван, *Аляска преданная и проданная история дворцового заговора* (Москва: Книжный мир, 2017).

한국과 일본의 북극 연구 경향 및 전략 비교¹⁾

김정훈·백영준

I. 서론

이전 세기의 북극은 국가의 위신 또는 개인의 명예를 위한 탐험가들의 도전대상이었다. 하지만 혹독한 자연환경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도전은 자원 개발이나 영토 확장 같은 물리적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냉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발전적인 개발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북극 주변국가의 극도로 제한된 국내적인 용도로 이용되었을 따름이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인해 북극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1996년 북극인접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등의 8개국을 주축으로 소수민족과 NGO등을 포함한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가 발족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북극개발 문제는 개별 국가의 단독적 차원이 아니라 북극 주변국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북극 빙하 감소와 기술의 발전 등은 북극권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북극권 자원개발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주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로 인한 국내외 학술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 사이에 있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북극권의 석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비철금속, 수자원 및 수산자원 그리고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²⁾

동시에, 2007년 러시아가 로모노소프 해령 기저에 티타늄으로 된 자국의 국기를 꽂으면서 북극해 영유권에 관련된 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부각되고, 북극 이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북극권 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국가들의 북극관련 정책과 전략 수립의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은 2008년 북극이사회에 가입지원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간 결과 2013년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 내 북극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 같은 시기에 북극 이사회에 가입한 일본 역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북극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해 나가고 있다. 같은 공간에 대한 한일 양국에 대한 관심 고조는 경쟁 및 협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 북극정책 수립 및 실행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우선, 북극이사회 가입 준비가 진행되었던 2008년부터 현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6S1A5A2A03926235)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의 한국 시베리아 연구 2017년 21권 2호지에 실린 내용을 게재한 것임.

2) 한종만 외,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서울: 신아사, 2010), pp. 232-249.

재(2017년)까지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양적, 분야별 분석을 시도한 후, 동 기간 동안의 양국의 북극정책 전개에 대해서 정리 분석하여 정책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문헌 조사,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 등을 통한 양국의 북극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한국과 일본의 대 북극정책 이해의 종합적인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공간적 특성과 경향

1. 양국의 연구경향과 연구의 독창성

연구 대상 기간의 한일 양국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경우 인문학적 측면에서 러시아 북극권 거주 소수민족인 코미와 네네츠 등의 언어에 관한 논문(김태진: 2012, 2013)들이 양산되었다. 정치 및 국제관계적 측면의 연구물로는 북극과 거버넌스, 안보문제 및 바렌츠해 국제법 분석에 관한 업적(배규성: 2010, 2011, 2016, 이영형: 2010, 2017)과 해양안보 문제 및 대한민국의 북극정책과 국제협력에 대한 논문(윤영미: 2010, 2013)들이 발표되었다. 수산자원 및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이재혁: 2013, 2015)가 시도되기도 했다. 특히 수많은 연구결과물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경제와 지리에 관련된 연구활동(한종만: 2011, 2014, 2015, 2016)들은 한국의 북극연구 경향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공학부문의 연구결과로 아라온호 운항으로 얻은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이탁기: 2013)들을 비롯한 북극환경과 기후문제에 관련된 논문들도 다수 양산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다소 유사한 연구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연구결과물의 양적 부분을 고려한다면 기후 및 환경관련의 자연과학과 공학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업적을 살펴보면, 우선 북극해 온난화와 해빙변동에 관한 연구(榎本 浩之(에노모토 히로유키): 2012, 2014), 북극해 해빙경감에 대한 고찰(島田 浩二(시마다 코지): 2008, 2010), 북극 생태계에 관련된 북극곰의 생태 식성으로 본 환경적응(妹尾 春樹(세노오 하루키): 2008) 등의 연구물이 있다. 이외에도 북극해 항로의 수송비용에 대한 분석(大塚 夏彦(오오즈카 나츠히코): 2014), 북극해 항로의 해상운송 변화의 특징 및 북극해 항로 실현을 위한 종합적 연구(大塚 夏彦(오오즈카 나츠히코): 2017)등과 같은 북극항로와 물류 등 경제부문의 업적들도 다수 생산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개발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本村 眞澄(모토무라 마스미)은 북극해 자원개발의 현황과 장래(2009), 북극권의 에너지 자원과 일본의 역할(2012), 신자원지대의 가능성(2013), 북극권 가스 개발에 대한 제언(2014)와 러시아 북극권 석유와 가스 현황(2017)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극권에 대한 연구활동은 인문학으로부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극이사회 가입 시도로부터 약 10년이 지나는 시점을 통해 양국 간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양국 간의 협력 및 경쟁에 관련된 준비를 시도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북방정책의 실현 뿐 아니라 비슷한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나라의 선의의 경쟁과 공조를 통해 인류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제기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시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북극전략과 관련된 연구물의 분석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양국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물에 한정했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인프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동일한 조건에

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당기간 해당분야에 생산된 연구성과물을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물 자료 수집의 기준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현재) 사이에 발표된 양국의 연구성과물을 자료로 했으며, 양국의 학술계 시스템과 운영이 일치할 수 없기에 각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KCI)에서 제공하는 논문 검색서비스³⁾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학술검색’ 사이트를 활용했다(주 검색어: 북극). 일본의 경우 역시 일본 국립 정보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일본어 논문검색사이트인 CiNii⁴⁾와 ‘구글 학술검색’ 사이트를 활용했다(주 검색어: 북극).

3. 연구공간에 대한 이해

3.1. 북극

북극(Artic)은 그리스어의 ‘Arktikos’(곰)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북극의 방향이 별자리 중 큰곰자리와 비슷한데 기인한 것이다. 북극권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국가별, 단체별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정의되고 있기에 확실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북극권의 개념정의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는 있다.

① 천문학적 정의: 위도 66도 32분 51(혹은 66도 34분)부터 북극점까지 펼쳐진 지역을 의미한다. 북극의 천문학적 정의는 따뜻하고 차가운 해양조류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 및 식생적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② 기후 지리적 정의: 연중 가장 따뜻한 7월 평균기온이 10도 이하인 지역을 의미한다.

③ 지형생태학적 정의로 북극점부터 지속적인 영구동토지대 남방한계선까지로, 수목한계선부터 북극점까지로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의 툰드라(영구동토지대)지역과 북극해를 의미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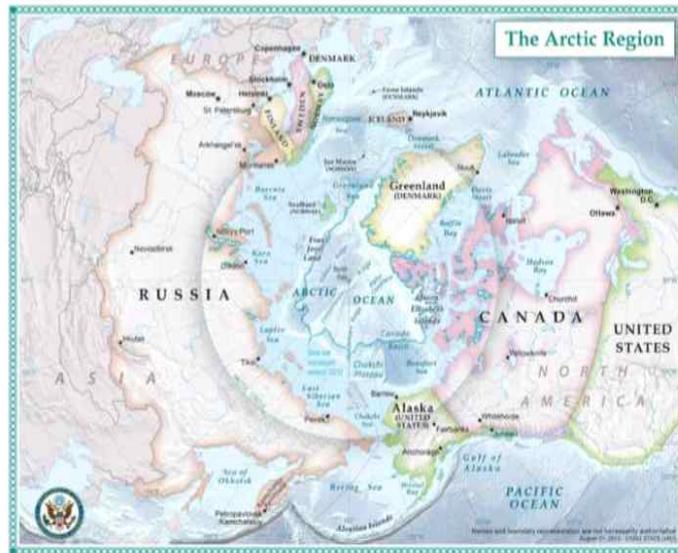
이외에도 행정 및 소수민족의 분포 등이 북극권 정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색인(KCI):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4)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일본어 논문검색사이트: <http://ci.nii.ac.jp/>

5) Volker Steinbach, *Erdöl und Erdgas der Arktis - Chancen und Herausforderungen*, 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 und Rohstoffe (BGR), Hannover 2010, p. 2.; 한종만,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40(2), pp. 57-90, 2016.08. 기타사회과학 재인용

[그림 1] 북극지역 구분



각주: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북극지역 지도 <https://goo.gl/rASxUK> (검색일: 2017년 7월 4일)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북극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극권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영토문제, 자원개발, 기후문제, 생태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가장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북극관련 용어는 아마도 ‘북극항로([그림 2] 참조)’일 것이다.

북극항로는 베링해협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캐나다를 통해서 그린란드로 이동하는 항로를 ‘북서항로’와 베링해협에서 동쪽으로 나아가서 러시아의 영해와 북해를 지나 로테르담으로 나아가는 항로를 ‘북동항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2개의 북극항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빙하가 지속적으로 녹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기존 물류 통로인 수에즈 운하 혹은 파나마 운하를 통하여 운반하는 것보다 짧은 항해일정 그리고 물류 운송 과정에서의 해적에 의한 약탈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의 경제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⁶⁾

북극항로 중 ‘북동항로’가 ‘북서항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객관적이다. 북서항로를 통한 항해거리는 북극항로와 비슷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북동항로보다 어려운 빙하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서항로는 북동항로에 비해 더 많은 빙하와 암초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행 안전에 대한 보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입증하듯, 지금까지 북서항로를 관통하는 항해는 약 40번 밖에 실행되지 않았지만 북동항로를 이용한 수송은 연중 20척의 러시아 선적들의 동서 관통과 약 200척의 단순한 연안 항행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⁷⁾

6)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기존 한국에서 유럽 암스테르담 항까지 선박을 이용했을 경우 약 20,000km의 거리이고 수에즈 운하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북동항로를 이용할 경우 15,000km의 거리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7) Пересыпкин В.И., Яковлев А.Н.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 \ Навигация и гидрография, 1998, № 6,

[그림 2] 북극항로



출처: <https://goo.gl/Lh8UFD> (검색일: 2017년 7월 4일)

3.2. 북극항로 활용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고조와 한국, 일본

현재 북극권 인접국을 포함해 북극개발에 대한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이다.

러시아에서는 1987년 무르만스크 주도를 중심으로 한 북동항로를 통한 국제화물 수송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으며, 소련 붕괴 후 북극항로 개발은 1991년 “북극항로 항해를 위한 규제”의 지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규제는 북동항로를 어떻게 국가의 간선 항로화 할 것인가 그리고 항로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빙하의 종속관계 등 러시아 영해 및 해양 경제구역의 정의를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⁸⁾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인 도전의 결과는 참담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수송된 외국선박 오직 프랑스 국적의 아스트로야비야(Астролябия)호뿐이었다. 냉전이 끝난 직후였고 북극항로 자체가 국제적인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⁹⁾ 1998년부터는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국내외 적인 방해요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실행되지 못했고, 쇄빙선의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해 북동항로 개발은 사실상 동결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기후조건이 완화되는 등 다시 북극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국제법에 의거한 북극해 방향의 대륙붕 조사를 통한 국제 사회에서의 북극해 영유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특히 2007년 러시아 대륙붕 탐사팀의 미르1호 잠수함이 로모노소프 해령 심해 4,302m 바닥에 변형되지 않는 티타늄제 러시아 국기를 꽂고 북극해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¹⁰⁾

이와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를 시베리아와 북극권 개발과 연결시켜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북극지역 개발전략을 승인하고 ‘러시아 극지방 사회경제 개발정책 2020(Socio-

c. 11.

8) *ibid.* c. 8.

9) *ibid.* c. 10.

10) Шадрин А.И. , 김 Чжон Хун, Бэк Ён Чжун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КТ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География и геоэкология на службе науки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пуск 12, Красноярск, 2017. сс. 322-327.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until 2020)’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 전략에 의거해 러시아 정부는 150여개의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연간 5조 루블(1조 루블은 정부 예산, 4조 루블은 외부 투자 조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북극개발위원회’를 설립해 해당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 과학기술 발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및 국제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북극 지역 개발은 크게 오일, 가스 등 지하자원 개발과 물류 인프라 신규 구축 및 개선, 조선, 항공 등의 기반 구축과 노후 인프라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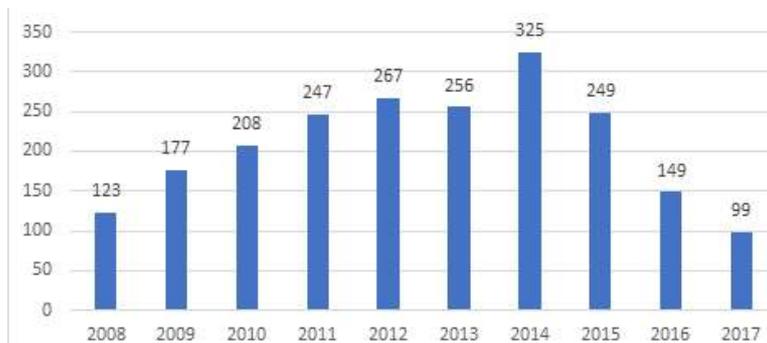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권 지역에 직접적인 영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일 양국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북극 이사회(AC, Arctic Council)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13년에 공동으로 정식옵서버 지위를 얻는데 성공하여 북극권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참여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 기업, 연구단체 및 학계의 관심과 활동도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북극 개발 및 연구활동에 한일 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양국의 북극에 대한 연구활동을 분석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공동의 이익 또는 시너지효과 창출에 대한 기반 모색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성과의 통계적 분석

1. 한국의 연구 성과의 통계적 분석

우선적으로, 검색엔진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학술검색’을 이용하여 검색어 ‘북극’으로 하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학술자료로 검색되는 성과물들을 취합해서 아래와 같은 <표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한국어 북극관련 논문 2008-2017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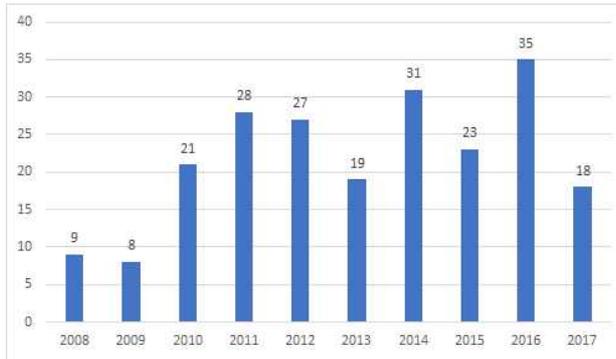


출처: Шадрин А.И. , Ким Чжон Хун, Бэк Ён Чжун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КТ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География и геозкология на службе науки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пуск 12, Красноярск, 2017. с.322-327. <표 3>의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업데이트한 자료임.

다음으로, 한국의 정보 수집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색인에서 제공하는 등재후보지/등재지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보았다. 검색어는 ‘북극’으로 동일하며,

검색된 자료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았다. 검색과 카테고리 분류작업을 통해서 찾아낸 자료의 총합은 219건이다.

<표 2> 한국연구재단 KCI검색 2008-2017년 연구성과물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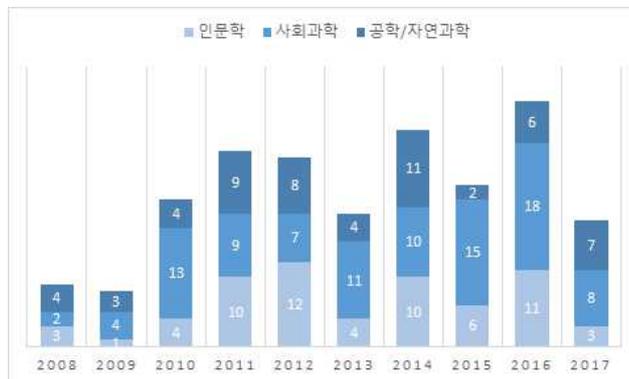
연도별로 구축된 연구성과물은 인문학 64건, 사회과학 97건, 공학/자연과학 58건 등으로 나타난다.

<표 3> 카테고리별 데이터베이스 수치 정리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자연과학	연도별 합계
2008	3	2	4	9
2009	1	4	3	8
2010	4	13	4	21
2011	10	9	9	28
2012	12	7	8	27
2013	4	11	4	19
2014	10	10	11	31
2015	6	15	2	23
2016	11	18	6	35
2017	3	8	7	18
분야별 총합	64	97	58	219

연도별로는 2008년은 9건, 2009년은 8건, 2010년은 21건, 2011년은 28건, 2012년은 27건, 2013년은 19건, 2014년은 31건 2015년은 23건, 2016년은 35건, 2017년은 18건으로 총 219건이다. 양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사회과학으로 97건의 연구성과물이 생산되었다.

<표 4> 2008-2017년 카테고리 별 연구성과물 분류



한국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카테고리 분류 결과 연도별 연구성과물의 비교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과학 방향성의 연구성과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카테고리 분류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더욱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았다.

<표 5> 사회과학 카테고리별 세분화분석

	정치외교	경제	법	군사안보	지리	사회과학 일반	연도별 합계
2008	0	0	0	0	2	0	2
2009	0	1	1	1	1	0	4
2010	3	1	3	0	3	3	13
2011	1	1	4	0	2	1	9
2012	0	0	1	0	1	5	7
2013	2	0	2	0	3	4	11
2014	0	5	1	0	1	3	10
2015	1	5	1	0	0	8	15
2016	3	2	6	0	1	6	18
2017	2	3	1	0	0	2	8
분야별 합계	12	18	20	1	14	32	97

2008-2017년 기간 동안 한국에서 북극관련 사회과학 일반논문이 가장 많은 32건이 쓰였다. 다음으로 많이 쓰인 부분은 법학으로 20건이 쓰였으며, 경제학 18건 지리학 14건 정치외교 12건 군사안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연구시점 이전(2000-2007년)의 한국의 북극연구 성과물은 양적으로 약 70~190여개로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¹¹⁾, 2008년 북극이사회(AC)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점점 북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 성과물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양적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포럼에서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북극항로가 추가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¹²⁾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2014년부터 시작된 한국 내 북극관련 연구의 통일성과 종합성을 목표로 한 2013~2015년은 북극컨소시엄(KoARC)에 구성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면서 연구성과물 건수가 더욱 크게 늘어났으나, 대한민국 내부의 국내 정치상황 악화와 사회분위기 침체 등으로 북극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2017년 현재까지 배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활동 역시 침체되어 상승세가 꺾여 양적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의 통계 자료는 10월 16일 현 시점에서 4/4분기 자료에 발표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다른 연도와 연구성과물 건수가 크게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일본의 연구 성과의 통계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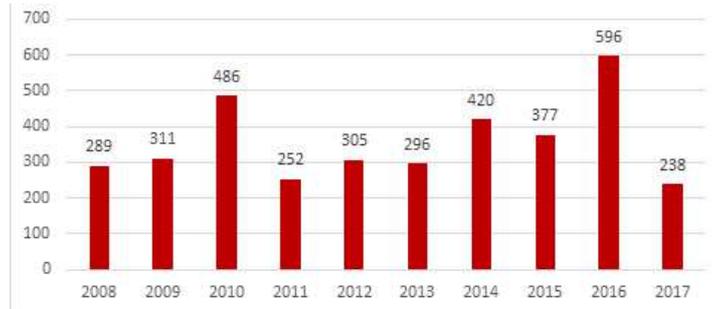
우선적으로, 검색엔진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학술검색’을 이용하여 검색어‘북극’으로 하고

11) Шадрин А.И., Ким Чжон Хун, Бэк Ён Чжун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КТ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География и геоэкология на службе науки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пуск 12, Красноярск, 2017. сс. 322-327.

12) 대한민국 외교부 발표자료 참조: <https://goo.gl/KAC22f> 2014 (검색일: 09.10 .2017.)

연도별로 나누어서 학술자료로 검색되는 성과물들을 취합해서 아래와 같은 <표 6>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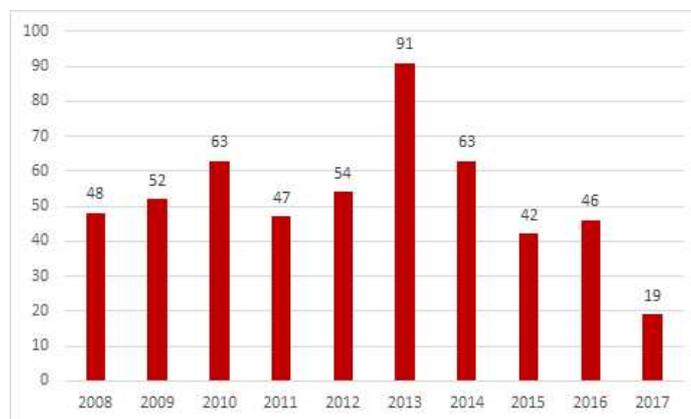
<표 6> 일본어 북극관련 논문 2008-2017 통계자료



2008-2017년의 일본의 북극연구는 대체적으로 연간 약 300건에서 400건 사이의 연구성과물 건수가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점으로 지속적 상승 분위기를 이어 나가던 추세가 2011년에 갑작스럽게 움츠러 들었던 부분은 일본 동북지방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17년의 통계 자료는 10월 16일 현 시점에서 4/4분기 자료에 발표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다른 연도와 연구성과물 건수가 크게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일본의 북극연구는 양적 측면에 있어 한국보다 빠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음으로,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일본어 논문검색사이트인 CiNii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북극’으로 동일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4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자료를 구축해 보았다. 검색결과 찾아낸 자료의 총합은 526건이다. 그러나 본문과 연관되는 학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자료는 309건으로, 이의 작업은 한국의 논문검색 서비스와 다르게 상세분류가 되지 않아서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7> 일본의 CiNii 검색 2008-2017년 연구성과물 데이터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았다. 연도별로 구축된

연구성과물은 인문학 12건 사회과학 116건 공학/자연과학 398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8> 카테고리별 데이터베이스 수치 정리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자연과학	합계
2008	3	3	42	48
2009	1	6	45	52
2010	3	10	50	63
2011	0	7	40	47
2012	0	4	50	54
2013	3	32	57	91
2014	1	13	49	63
2015	0	9	33	42
2016	1	17	28	46
2017	0	15	4	19
분야별 총합	12	116	398	526

연도별로는 2008년은 48건, 2009년은 52건, 2010년은 63건, 2011년은 47건, 2012년은 54건, 2013년은 92건, 2014년은 63건, 2015년은 42건, 2016년은 46건 2017년은 19건 등으로 총 526건이다.

<표 9> 카테고리별 연구성과물 분류



이 카테고리 분류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더욱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았다.

<표 10> 사회과학 카테고리별 세분화분석

	정치외교	경제	법	군사안보	지리	사회과학 일반	연도별 합계
2008	1	2	0	0	0	0	3
2009	3	2	0	1	0	0	6
2010	3	4	0	1	1	1	10
2011	3	0	4	0	0	0	7
2012	0	1	0	3	0	0	4
2013	14	7	3	4	0	3	31
2014	1	5	4	3	0	0	13
2015	2	4	2	1	0	0	9
2016	6	5	5	1	0	0	17
2017	0	5	1	2	6	1	15
분야별 합계	33	35	19	16	7	5	115

2008-2017년 기간 동안 일본에서 북극관련 가장 많이 쓰인 논문분야는 경제학으로 35건이 쓰였고, 다음으로는 정치외교 33건, 법 19건, 군사안보 16건, 지리 7건 사회과학 일반 5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북극연구는 ‘일본극지연구소’가 총괄하고 있으며 학술 논문의 상당수를 양산해 내고 있기에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연구소의 예산은 약 367억 원으로, 2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2017년 기준). 극지(남극, 북극)의 기지를 총괄하고 있는 동시에 극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5년제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2015년부터 일본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북극 연구과제 공모를 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15건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지원중인 주요프로젝트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일본 극지연구소 2016년 주요 프로젝트 일람

프로젝트번호	연구주제
KP301	극지역 주공권 총합측정에 기초한 태양 지구계 결합과정의 연구
KP302	지구온난화와 진행 하에서 극지기후 시스템의 사용
KP304	북극환경변동의 해명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KP305	남북양극의 아이스큐어 해석에 의한 기후 환경변동의 연구
KP306	극지에서의 고체지구의 진화와 응답
KP309	환경변화에 대한 극지역 생물의 생태적 응답 프로세스의 연구
KZ31	극지환경에서 공학적 과제의 추출과 그 해결에 대한 제안
KZ32	극지환경에서 건강관리 및 의료체제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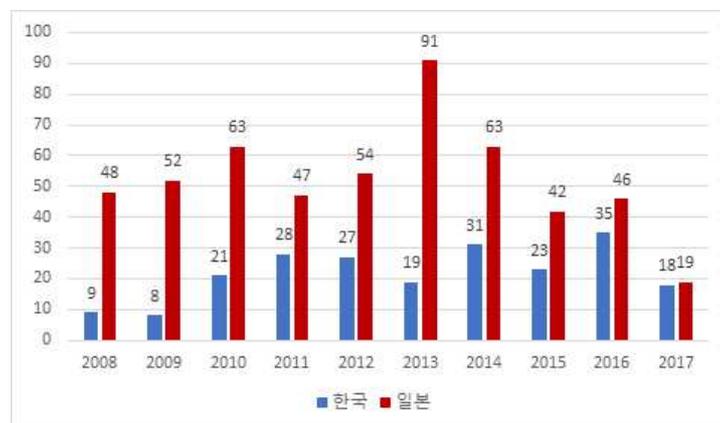
각주: 본 항목은 일본 국립 극지연구소에서(<http://www.nipr.ac.jp/>)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2016년 일본 내의 종합적인 연구성과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연구소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와 관련되어 아쉬운 부분은 연구소 자체가 이 공계열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3. 양국의 북극 연구결과물의 통계자료 비교분석

2008-2017년 기간의 북극 관련 한일 연구성과물 건수 비교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한일 북극 관련논문 건수 비교 2008-2017



연구성과물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해보면, 2008-2017년 기간 동안 한국에서 행해진 연구의 건수는 총 219건으로 같은 기간 일본에서 행해진 연구건수인 526건에 비해서 부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 인프라 구성이나 구조가 다른 만큼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연구의 활동 및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는 몇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일본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관리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적합하다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 동안 연구성과물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기초를 일본과 대등한 또는 더 적극적인 상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정책방향 혹은 사회/인문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성과물의 질을 올리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연구자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이공학 등으로 분류하여 카테고리 상의 분석을 시도해 보면, 한국에서는 사회과학이 97건으로 가장 많은 결과물을 양산해 내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공학/자연과학 분야가 398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의 연구 인프라의 구축의 상이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회과학 측면에서도 양적인 부분에서 한국에 비해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이미 공학/자연과학 분야에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보다 더 빈번한 쇄빙선을 통한 직접적인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상대적으로 풍부한 연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 결과물 수는 97건, 일본의 사회과학 연구 결과물 수는 115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위에 사회과학(32), 2위 법학(20), 3위 경제학(18)이며, 일본은 1위 경제학(35), 2위 정치외교(33), 3위 법(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치상으로 양국의 사회과학 분야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통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양국의 연구경향과 결과물의 수적인 분석을 해 보면, 한국은 일본과 북극관련 연구에 있어 공학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이공학 부분에 관련된 지원의 확대와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양적 분석에 한정되는 사항이며, 인문 및 사회과학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양국의 연구전략

1. 한국의 연구전략

한국의 대 북극정책의 대외적 관계의 시발점은 2008년 북극이사회(AC) 옵서버 가입 시도였으며, 2013년 5월에 정식옵서버로 선정되며 그 결실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라는 전략 제기되어 구체적인 북극 정책 수립과 실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표 13> 한국의 북극관련 주요 일지 2008-2017

- 2008년 북극이사회(AC) 가입
-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 2013년 박근혜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재창
- 2015년 해양수산부 주도로 북극 컨소시엄 발족
- 2017년 북극항로를 이용해서 LNG 수송성공
- 2017년 문재인 정부 송영길 특사 러시아 파견 및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

북극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은 연구쇄빙선 아라온호(2004년-2009년)의 건조로 실현될 수 있었다. 쇄빙선 아라온호의 주요임무로는 남극-북극지역의 연구수행 및 기지보급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쇄빙선이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에서의 동시 연구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2세대 쇄빙선의 건조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쇄빙선은 아라온호의 2배 규모의 사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쇄빙선을 통한 북극 내 연구활동의 능동적이고 주도적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북극관련 국가의 정책적 차원의 입장 표명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있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3가지 대주제를 표명했다:

- 하나의 대륙: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거대한 단일시장 형성
- 창조의 대륙: 창조경제 추진으로 유라시아 지역을 전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구축
- 평화의 대륙: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 경제 통상과 문화교류의 큰 장벽인 평화와 안보 위협 해결.

[그림 3]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도



각주: 동아일보 사설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1019/58316254/1>
 (검색일: 2017. 10. 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창은 북극 관련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제안에 발맞추어 해양수산부 주도 하에 ‘한국북극컨소시엄(KoARC)’

이 발족됐다. ‘한국북극컨소시엄’은 이전까지 개인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북극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창조적인 융복합 북극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그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북극이용을 실현하고 새로운 국익의 기회를 창출하며 북극 연구자 간의 협력증대와 우리나라의 북극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 산업기술 및 정책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북극컨소시엄’은 1988년 미국에서 창설된 ARCUS(Arctic Research Consortitum of the Untied States), 일본에서 2011년에 창설된 JCAR(Japan Consortium for Arctic Environmental Research)을 참고하여 한국형 북극 컨소시엄 운영을 목표로 2015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주관 하에 국내 24개 기관이 모여 발족하였다. 참여기관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14> 한국북극컨소시엄 참여 기관명

번호	소속 기관
1	극지연구소
2	극지기술연구회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국립생태원
5	국립수산과학원
6	광주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1	배재대 북극연구단
12	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13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4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15	연세대 지구환경연구소
16	(주)지오룩스
17	(주)지오스토리
18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19	한국극지연구진흥회
20	한국해양재단
21	강원발전연구원
22	부산발전연구원
23	인천발전연구원
24	네이버시스템(주)

출처: 북극지식센터 <http://www.arctic.or.kr/?c=11/13/65&idx=990>(검색일 2017년 10월 17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기관의 참여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2016년 10월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정부의 북극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한 국회 예산 심의의 지연으로 인해 다소 정체된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컨소시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 관련 국가 정책 수립과 실행의 토대가 될 연구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참가기관인 <배재대학교 북극연구단>은 컨소시엄 발전 이전인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배재대학교 한국 시베리아센터>를 통해 꾸준한 연구 성과물을 내오고 있다. 해당 연구기관의 학술지인 한국연구재단학술등재지(한국 시베리아연구)를 통해 2015년 현재까지 총 12편의 북극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0년에는 연구 성과들을 모아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를 출판하였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극 제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하며 1년에 4회의 전자저널 <북극연구>를 편찬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재까지 전자저널은 10회가 발행되었으며, 이 성과를 한 대 모아 2016년 북극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북극의 미소와 눈물>이라는 연구 성과물이 출판되기도 했다. 더욱이 앞으로 각 연구기관들의 연계와 국가기관의 도움은 북극 분야에 대한 연구에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러시아에 송영길 특사를 파견했으며, 이후 9월 미국 방문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례에 비해 파격적인 행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협력 등의 강화와, 시베리아 천연가스 철도망 연결 등 극동지역 개발 협력 등을 제안하면서 북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¹³⁾ 북극개발과 관련된 내용 중에는 한국의 야말 LNG 선 15척의 건조도 포함되어 있다.¹⁴⁾ 북극항로를 이용한 LNG 수송은 항해 일정을 축소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¹⁵⁾

하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북극관련 정책의 명확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북극개발과 활용이라는 문제는 시대 및 역사적 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해 본다면 희망적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2. 일본의 연구전략

<표 15> 일본의 북극관련 주요 일지 2008-2017

- 2010년 외무성 해양실장을 팀장으로하는 TFT 전담반 조직
- 2011년 해양과학 기술센터(JAMSTEC)를 구축
- 2012년 북동항로를 통한 LNG 수송선 시험운송 성공
- 2012년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북극의 거버넌스와 일본의 외교전략』 출간
-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후부터 일본외무성은 북극이사회에 주재하는 북극담당대사 임명¹⁶⁾
- 2015년 일본의 대 북극전략 로드맵인 일본 해양기본계획 발표

13) 한국일보 보도자료 <https://goo.gl/2tKSXg> (검색일: 2017. 5. 12.)

14) 월드뉴스 보도자료 <http://www.newsworld.co.kr/detail.htm?no=1375> (검색일: 2017. 9. 20.)(검색일: 2017. 9. 25.)

15) 백영준, “배는 다닐 수 있는가? “북극해항로”의 가능성”, 북극연구단, 『북극연구』 10호, 2017, p. 100.. ‘2017년 8월 17일 러시아의 LNG탱커 “크리스토퍼 데 마르주리(Christophe de Margerie)호 (7만 5천톤급)이 북극해 연안 항해의 최단기록을 갱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세계 북단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단 노르웨이의 함멜페스트(Hammerfest)로부터 한반도 동쪽 해안의 한국 보령까지 19일의 항해였다고 전했다.’ 같은 항로를 통과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2배 이상인 약 30일이 걸렸다. 어째서, 이렇게 항해 기간이 단축되었냐고 묻는다면, 이 선박은 2.1 미터의 빙하까지 대응 가능한 우수한 쇄빙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일반적으로 북극항로 이용에는 전용 쇄빙선이 앞의 빙하를 깨고 뒤에 화물선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항해 기간이 길었다.

일본은 2011년 해양과학 기술센터를 주축으로 일본 북극환경연구 컨소시엄(JCAR)을 조직하여 북극에 관한 연구를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6억 5천만 엔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외무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북극의 거버넌스와 일본의 외교 전략』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간의 연구성과물을 모아 일본정부에 북극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⁷⁾

2015년 10월 16일 일본의 정책회의인 종합해양정책본부에서 일본의 북극전략의 로드맵인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

“북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에서도 2013년 논의 결정된 해양기본계획에 의해서 북극해의 둘러싼 대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와 순위를 지정하였다. ① 전 지구적인 시점으로 북극지역을 관측 연구 ②북극에서의 글로벌한 국제협력 ③북극해항로의 가능성 검토를 중점을 두고 종합적 즉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정하였다. 해양기본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이후 국제협력주의를 기본 모토로 “적극적평화주의”입장으로 외교, 안전보장, 환경, 교통, 자원개발,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을 넘나드는 분야를 두고 산학관이 두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처를 해 나갈 것 또한 이것을 통해 일본이 북극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의 주요한 멤버로서 국제사회에 공언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본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 일본의 강점인 과학기술을 글로벌 시점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
- 취약한 복원력을 가진 북극의 환경이나 생태계를 충분히 배려할 것
- ‘법의 지배’의 확보와 평화로 질서 있는 형태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
- 선주민의 전통적인 경제활동기반의 지속성을 존중할 것
- 북극에서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
- 기후 환경변화의 영향이 경제적 사회적인 동의를 추구할 것
- 북극해항로나, 자원개발에 관한 경제적인 가능성을 계속 탐구할 것

위와 같이 일본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극환경과 원주민문제, 방위문제, 자원개발 및 북극 지위 관련 문제 및 북극 거버넌스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한일 간 대 북극관련 연구결과물의 통계와 전략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한일 양국 간의 북극전략 차이점과 공통관심사에 대한 정리로 본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16) 일본 외교부 보도자료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25/3/press6_000016.html

17) 野上 義二, “エグゼクティブ・サマリー(報告書要旨) 『北極のカバナンスと日本の外交戦略』(日本國際問題 研究所), 2012.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북극문제(개관), 제2장 북극권 에너지 자원과 일본의 역할, 제3장 상업성으로 본 북극해항로, 제4장 북극해와 일본의 방위, 제5장 북극의 환경문제, 제6장 북극의 거버넌스, 제7장 북극문제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제8장 일본외교에게 제언

18) 일본 수상관저 보도자료: <https://goo.gl/UxslpG> (검색일: 2017년 10월 17일).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의 대 북극연구 경향 및 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 및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북극연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극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및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연구분야의 다양성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언급하자면, 북극관련 연구,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선도적인 입장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과 협조를 통한 대 북극연구와 정책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웃 국가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북극권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경쟁도 있을 것이다.

<표 16> 양국의 북극전략 공통 관심사

- 향후 북극항로와 북극자원 개발 참여로 인한 직접적 수혜 입장 견지
- 북극해 지위에 대해서 인류 공동유산 지정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성 지향
- 북극 관련 국제 공조 활동을 통한 국제적인 지위 확보와 국가 위상의 고양
- 북극권 활성화로 인한 안보문제 야기와 문제해결 과정의 참여 등

현재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될 수 있는 물품은 계약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벌크 화물 정도이다. 이는 북극항로는 아직까지는 연중 항해가 불가능하며, 기후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구 온난화가 가속 되고 빙하가 더 오랫동안 녹아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극항로의 경유지, 물류거점 가능성 등의 역할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창출해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북극의 자원개발문제는 인류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환경과계는 물론 원주민의 생존권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문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의 보존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의 탐사, 선박 및 항만 개발 등 여러 가지 형태로의 양국의 참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극이사회(AC)를 필두로 북극권에 직접적인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북극해의 지위에 대한 문제이다. 남극대륙이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인정받아 특정 국가의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북극해 문제를 유사한 행보를 걷게 되는 것을 북극권 인접 국가들은 다소 경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 북극권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극권 인접국가 간 아닌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 개발과 활용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공동의 행보를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다.

북극해의 빙하가 전부 녹게 되고 항행이 자유롭게 된다면 각 국가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기존의 냉전 시대에는 북극해의 빙하는 장벽과 같이 서로를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비행기 혹은 잠수함 정도만이 제한적으로 통행 할 수 있던 곳이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북극권 국가들의 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여서 분쟁지역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개별 국가 또는 특정 국가에 의해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리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하의 선제적 준비 과정은 각국의 이익 실현 차원을 초월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어자료

- 김태진, “러시아 북극권 소수 민족 언어연구 - 코미어(коми язык)를 중심으로 -”,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6(1), pp. 271-294, 2012.05.
- 김태진, “러시아 시베리아지역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고찰-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7(2), pp. 161~188, 2013.11. 러시아
- 배규성, “북극권 쟁점과 북극해 거버넌스”,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0(3), pp. 457-478, 2010.12.
- 배규성, 성기중, “북극지역의 안보적 도전 - 군비경쟁의 정치적 함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14(2), pp. 307-334, 2011.12.
- 배규성, 예병환, “바렌츠해 조약의 국제법적 분석: 러시아 - 노르웨이간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중심으로”,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20), pp. 193-232, 2016.06.
- 백영준, “배는 다닐 수 있는가? “북극해항로”의 가능성”, 북극연구단, 『북극연구』 10호, 2017, p. 100.
- 윤영미,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해양안보 전략: 북극해 개발과 한-러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21(2), pp. 4-80, 2009.12.
- 윤영미, “북극해 해양분쟁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 - 러시아의 북극해 국가전략과 대응방안 -”,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4(2), pp. 1-42, 2010.11.
- 윤영미, 이동현, “글로벌 시대 한국의 북극정책과 국제협력: 제약점과 과제”,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7(2), pp. 189-226, 2013.11.
- 이영형, “러시아의 북극해 확보전략: 정책방향과 내재적 의미”,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33(4), pp. 103-129, 2010.02.
- 이영형,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17(3), pp. 67-99, 2017.09.
- 이영형, 김승준, “북극해의 갈등 구조와 해양 지정학적 의미”,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8(3), pp. 289-315, 2010.12.
- 이재혁,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자원과 한국 관광산업 개발 방안”,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9(2), pp. 103-128, 2015.11.
- 이재혁, “시베리아의 수산자원과 한국 수산업의 진출 방안”,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7(1), pp. 97-144, 2013.05.
- 이탁기, 김태욱, 임채환 외 1명, “북극해 계측자료에 기초한 아라온호의 국부 빙압력 계산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지』, 27(5), pp. 88-92, 2013.10.
- 이탁기, 김태욱, 임채환 외 1명, “북극해 운항 중 계측된 빙하중에 대한 분석 연구”, 대한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51(2), pp. 107-113, 2014.04.
- 이탁기, 이종현, 임채환 외 1명, “북극해에서 계측된 국부 빙하중에 대한 선속 및 빙두께 영향”,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지』, 27(5), pp. 82-87, 2013.10.
- 한종만 외,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서울: 신아사, 2010), pp.232-249.
- 한종만, “러시아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과 한·러 경제협력의 시사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연구』, 24(2), pp. 407-444, 2014.11.
-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의 자원/물류 전쟁: 현황과 이슈”,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

연구』, 18(1), pp. 1-33, 2014.05.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27(2), pp. 183-215, 2011.06.

한종만, “북극 공간의 개념 정의: 자연구분과 인문구분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2(1), pp. 41-74, 2015.06.

한종만,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40(2), pp. 57-90, 2016.08.

외국어자료

Volker Steinbach, *Erdöl und Erdgas der Arktis - Chancen und Herausforderungen*, 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 und Rohstoffe (BGR), Hannover 2010, p. 2.

Пересыпкин В.И., Яковлев А.Н.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 \ *Навигация и гидрография*, 1998, № 6, с. 11.

Шадрин А.И., Ким Чжон Хун, Бэк Ён Чжун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КТ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География и геоэкология на службе науки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пуск 12, Красноярск, 2017. с. 322-327.

榎本 浩之, “北極圏の温暖化: 科学の取り組み・フィールドワーク・人”, 『ヒマラヤ学誌』, 15, 193-199, 2014-03-28.

榎本 浩之, ALIMASI Nuerasimuguli, 柴田 啓貴, 田中 康弘, 館山 一孝, 高橋 修平, “北極海の海水変動の季節性と変動および環北極域の環境への影響”, 『Environmental science』25(6), 469-476, 2012-11-30

大塚 夏彦, 大西 富士夫, 泉山 耕, “北極海航路による海上輸送の変遷と特徴”, 『土木学会論文集B3 (海洋開発)』 73(2), pp. 25-30, 2017.

大塚 夏彦, 古市 正彦, 泉山 耕, 中野 佑哉, “北極海航路によるバルク貨物の海上輸送コストの分析”, 『土木学会論文集B3 (海洋開発)』, 70(2), pp. 151-156, 2014.

島田 浩二, “北極海における海水激減メカニズムについての考察” 『地學雑誌』 119(3), 451-465, 2010-06-25.

島田 浩二, 鴨志田 隆, “北極海における海水運動・海洋循環の強化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更なる激的な海水減少”, 『地學雑誌』 117(6), xix-xx, 2008-12-25.

妹尾 春樹, “シロクマからヒトへの警告—北極圏におけるビタミンA貯蔵細胞の研究から—: 北極圏におけるビタミンA貯蔵細胞の研究から—”, 『日本食生活学会誌』 18(4), pp. 309-316, 2008.

妹尾 春樹, “ホッキョクグマの生態・食性から見る環境適応 (特集 雪と氷の世界に生きる—極地方の生物 その特異な生態)— (北極圏の生物)”, 『遺伝』 62(1), 24-29, 2008-01.

本村 眞澄, “ロシア北極圏の石油・ガス開発の現状”, 『土木学会論文集B3 (海洋開発)』 73(2), pp. 31-35, 2017.

本村 眞澄, “北極海資源開発の現況と将来 (特集 北極海のシーパワー)”, 『世界の艦船』 (712), pp. 156-159, 2009-10.

本村 眞澄, “姿を現した新資源地帯の可能性 : 日本のエネルギー安全保障を強化 (特集 北極圏フロンティアの攻防)”, 『外交』 22, pp. 36-41, 2013-11.

本村 眞澄, “在来型油ガス田のフロンティア開発 : ターゲットは北極圏, 大水深, 重質原油 (特集 在来型の底力 : 技術革新と高油価で飛躍する在来型油ガス田開発)”, 『石油開発時報』 (180), pp. 17-21,

2014-02.

本村 眞澄, “第2章 北極圏のエネルギー資源と我が国の役割” 『北極のガバナンスと日本の外交戦略』(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2.

山口 一, 大塚 夏彦, “北極海航路実現に向けた総合的研究と課題”, 『土木学会論文集B3 (海洋開発)』 73(2), pp. 36-41, 2017.

野上 義二, “エグゼクティブ・サマリー (報告書要旨) 『北極のガバナンスと日本の外交戦略』(日本國際問題 研究所), 2012.

인터넷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발표자료 참조: <https://goo.gl/KAC22f> 2014(검색일: 09.10.2017.)

월드뉴스 보도자료 ‘Daewoo Shipbuilding Clinches Huge Order for 15 Ice-breaking LNG Carriers from Yamal LNG of Russia’

<http://www.newsworld.co.kr/detail.htm?no=1375> (검색일: 2017. 9. 20.)

북극지식센터 ‘북극 컨소시엄 관련정보’:

<http://www.arctic.or.kr/?c=11/13/65&idx=990>(검색일 2017년 10월 17일).

북극항로 <https://goo.gl/Lh8UFD> (검색일: 2017년 7월 4일)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북극지역 지도 <https://goo.gl/rASxUK> (검색일: 2017년 7월 4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아일보 사설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1019/58316254/1>(검색일: 2017. 10. 9.)

일본 국립 극지연구소(<http://www.nipr.ac.jp/>)

일본 외교부 보도자료 ‘북극 담당대사 임명’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25/3/press6_000016.html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 ‘일본어 논문검색사이트 cinii’: <http://ci.nii.ac.jp/>

일본 수상관저 보도자료 ‘일본의 북극전략의 로드맵’:

<https://goo.gl/UxsLpG> (검색일: 2017년 10월 17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색인(KCI):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한국일보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푸틴과 통화 “북핵 해결 협력 논의”

<https://goo.gl/2tKSXg> (검색일: 2017. 5. 12.)

슈발바르 군도를 둘러싼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관할권 갈등¹⁾

박종관²⁾

I. 서론

북극의 해양지리와 그에 대한 북극해 연안국들의 관할권은 1982년에 채택된 국제해양법 레짐(UNCLOS)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 이전에 다자간 조약(슈피츠베르겐 조약)에 의해 관할되어 오던 슈발바르는 국제해양법 레짐(UNCLOS)에 의해 새로운 문제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 간 관계는 북극에서 여전히 복잡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6세기에 발견된 이래 영토 그 자체가 관할권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슈발바르(Svalbard) 군도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슈발바르 군도는 총 육지 면적이 61,020km²이고 노르웨이 본토와 북극 사이의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섬들 중 가장 큰 슈피츠베르겐(Spitsbergen) 섬에서만 사람이 영구 거주한다. 슈발바르의 약 60%는 일 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10% 미만에만 식물 생장이 가능하다. 2011년 1월 1일 현재, 슈발바르의 총 인구는 2,394명이다.³⁾

슈발바르는 노르웨이의 주권 하에 있지만, 그 거버넌스는 국제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슈발바르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을 검토하고, 슈발바르가 오늘날 어떻게 관할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슈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사실 노르웨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노르웨이는 경제 활동, 국내 입법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주권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는 슈발바르의 관할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 상태로 유지 또는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몇몇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은 더 폭넓은 북극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 슈발바르의 법적 지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북극권(High North)을 “미래 노르웨이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 영역”으로 규정했다.⁴⁾ 기후변화로 야기된 극지 얼음 층의 용해는 노르웨이가 북극해 운송, 엔지니어링 및 기타 분야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다른 북극권 또는 비북극권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에 북극을 개방한다. 러시아 역시 북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은 북방항로와 북서항로를 이용하여 유럽이나 미국의 동부해안에 제조품 및 가공 상품을 운송하려고 하고 있다.⁵⁾ 슈발바르와 관련하여 또는

1)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6-B0131)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의 한국 시베리아 연구 2017년 21권 2호지에 실린 내용을 게재한 것임.

2) 경북대학교

3) Statistics Norway (2011b) ‘Population Statistics. Svalbard’, www.ssb.no/befsvsvalbard_en

4)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6) *The Norwegian Government’s High North Strategy*, www.regjeringen.no/upload/UD/Vedlegg/strategien.pdf

5) M. Byers, (2011a) ‘The dragon looks north’, *Al Jazeera*, 28 December, 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1/12/20111226145144638282.html;

M. Byers, (2011b) ‘Russia pulling ahead in the Arctic’, *The Star*, 29 December,

슈발바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기 동안 국제관계와 국제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세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슈발바르 군도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다. 군도의 고립성 또는 지리적인 ‘타자성’(otherness)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고 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슈발바르는 정확하게 그것이 ‘주변적(peripheral)’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가치를 부여한 주변부(periphery)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집(home)’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치를 부여한 주변부(periphery)의 대표적 사례이다.

II. 슈발바르 군도의 국제법적 지위

1. 슈피츠베르겐 조약(the Spitsbergen Treaty)의 기원

북극의 많은 섬들은 20세기 초에 모호한 관할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슈발바르, 그린란드, 얀 마이엔, 프란츠 요셉 제도, 랭겔 섬 등은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게도 소속된 적이 없는 섬’(terra nullius)으로 간주되었다. 그린란드를 제외하고는, 이 섬들 중 어떤 것도 유럽인의 후손들이 발견한 당시 토착민들에게 집이 된 적이 없었다.

슈발바르는 1596년 네덜란드 탐험가 빌렘 바렌츠(Willem Barents)에 의해 발견되었다. 1613년 영국 포경회사인 무스코비 컴퍼니(Muscovy Company)는 이 섬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했지만, 당시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왕국에 의해 제기된 주권 주장과 충돌했다. 네덜란드인은 *Mare Liberum*, 즉,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원칙에 반박했다. 1870년 스웨덴-노르웨이 각료회의는 슈발바르의 편입과 섬들에 식민지를 세울 것을 심의했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실제적인 우려와 반대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⁶⁾

1905년 스웨덴에서 독립한 직후, 노르웨이는 슈발바르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확정을 추구했다. ‘어떤 국가에게도 소속된 적이 없는 섬’(terra nullius)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이 군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는 이 섬들이 12세기 아이슬란드 역사책(Icelandic text)에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는 1596년 바렌츠(Barents)의 발견과 뒤이은 반영구적인 네덜란드 포경 기지들 때문에 이 섬들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포모르(Pomor) 지역의 사냥꾼들이 바렌츠보다 먼저 슈발바르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⁷⁾ 영국은 무스코비 컴퍼니의 로버트 포더비(Robert Fotherby)가 1614년 제임스 1세를 위해 슈피츠베르겐의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북극해 포경과 물개 사냥은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다. 또한 1906년부터 비록 슈발바르 주민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인들이었지만, 이 섬의 주요 고용주는 보스턴에 본부를 둔 아크틱 코알 컴퍼니(Arctic Coal Company)였다.⁸⁾

1910년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가 제안한 공동주권 해결방안은 미국과 독일에 의해 강력히 반대

www.thestar.com/opinion/editorialopinion/article/1108138-russia-pulling-ahead-in-the-arctic

6) U. Wråkberg, (2002) ‘The Politics of Naming: Contested Observations and the Shaping of Geographical Knowledge’, in M. Bravo and S. Sèorlin (eds.), *Narrating the Arctic: A Cultural History of Nordic Scientific Practices*, Canton MA, Watson, p. 183.

7) A. Umbreit, (2009) *Spitsbergen*, Bucks UK, Bradt Travel Guides. p. 25.

8) C. Emmerson, (2010) *The Future History of the Arctic*, New York, Public Affairs. pp. 90-91.

되었고, 1912년과 1914년에 이어진 논의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⁹⁾ 돌과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 나왔다. 연합국 최고위원회는 슈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부여했으나, 군도에서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조항을 두었고, 이것이 결국 1920년 슈피츠베르겐 군도에 관한 조약(*Treaty Concerning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당시의 해결책은 슈발바르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관심이 감소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의 결과였다. 노르웨이의 협조에 대한 보상을 원했던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의 희망; 그리고 슈발바르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을 두 국가(독일과 소련), 즉 전후 독일의 무장해제와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부의 지위에 대한 불인정.¹⁰⁾ 1924년과 1925년에 결국 조약에 서명한 소련과 독일을 포함하여 14개 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했다.¹¹⁾ 그러나 이 조약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강력한 시위 중 일부는 이 조약과 그 이후의 광업 법규가 노르웨이의 주권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했다고 느낀 노르웨이 언론과 의회에서 나왔다.¹²⁾ 이 조약은 마침내 1925년에 비준되었다.

조약 서명 후 몇 년 사이에 다른 논쟁의 대상이 된 북극 섬들에 대한 관할권, 즉 랑겔 섬(1924)과 프란츠 이오시프 제도(1929)는 소련방으로, 얀 마이옌은 노르웨이(1929)로, 스베드럽 제도는 캐나다(1930)로 공식화되었다. 덴마크의 슈피츠베르겐 조약 수용이 1919년 동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노르웨이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¹³⁾, 덴마크가 마침내 그린란드 전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주권을 획득한 것은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1933년 결정이었다.¹⁴⁾

2. 슈피츠베르겐 조약의 내용과 슈발바르의 공유/통치

슈피츠베르겐 조약은 슈발바르의 다자간/다국적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적이고 확고한 국제법적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약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 9) L. Numminen, (2011) 'A History and Functioning of the Spitsbergen Treaty' In D. Wallis and S. Arnold (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Helsinki, Arctic Papers, Vol. 1, pp. 7-20; J. Machowski, (1995). 'Scientific Activities on Spitsbergen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Archipelago', *Polish Polar Research*, Vol. 16, Nos. 1-2, pp. 13-35.
- 10)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a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p. 32-34.
- 11) 현재 조약서명국들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가 있다.
- 12)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a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p. 34-38.
- 13)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a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 37.
- 14) M. Webb, (1992) 'Arctic Saga: Vilhjalmur Stefansson's Attempt to Colonize Wrangel Island',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61, No. 2, pp. 215-239; R.E. Fife, (2008) 'Svalbard and the surrounding maritime areas: Background and legal issues',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6 November, www.regjeringen.no/en/dep/ud/selectedtopics/civil-rights/spesiell-folkerett/folkerettslige-sporsmal-i-tilknytning-ti.html?id=537481

·제1조 : 노르웨이는 “그리니치 동경 10도와 35도 사이의 모든 섬들과 북위 74도와 81도 사이의 모든 섬들에 대해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다.

·제2-3조 : 모든 서명국의 국민들은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절대 평등의 기반 위에”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 제한된 기간 동안, 조약의 서명 이전에 점유된 토지에 대한 주장이 심의되었다. 타당한 경우,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자에게 부여되었다.

·제7조 모든 서명국의 국민들은 “완전한 평등”의 관점에서 재산(광물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향유하며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 “부과된 세금, 부과금 및 공공요금은 배타적으로” 슈발바르 행정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9조 : 슈발바르는 “결코 전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노르웨이가 슈발바르에 대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주요 공식 수단은 노르웨이 법무부에 보고하는 슈발바르 주지사(Sysselmannen) 사무실을 통하는 것이다. 1970년대 슈발바르의 최대 정착지인 롱위에아르뷔엔(Longyearbyen)은 자유화의 점진적인 과정을 시작했고, 노르웨이 광산회사의 업무를 인수하고, “특히 군도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립하는 주지사직을 필요로 했다.¹⁵⁾ 1979년 노르웨이 왕실 칙령에 의하면:

[주지사]는 군도에서의 국가활동을 조정한다. 그는 이 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그는 슈발바르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이 맥락에서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한다.¹⁶⁾

그러므로 주지사는 슈발바르의 치안, 환경 보호, 공중 임무, 여행 및 관광 조정, 공공 정보, 교통 및 외국 정착촌과의 접촉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¹⁷⁾

슈피츠베르겐 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슈발바르에 부과된 모든 개인세 및 법인세는 군도 행정을 위한 개별 예산으로 들어간다. 어떤 돈도 노르웨이의 중앙정부로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8%) 및 법인세(10%)가 노르웨이 본토보다 상당히 낮다.¹⁸⁾ 높은 임금과 낮은 세금의 조합은 잠재적인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정부 기능은 노르웨이의 세수 및 연간 보조금을 통해 지원된다.¹⁹⁾ 2010년 슈발바르에 소재한 노르웨이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 보조금은 3억 8천 8백만 크로네(미화 6천 5백만 달러)에 달했다.²⁰⁾

15)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5.4.1 www.regjeringen.no/en/dep/jd/Documents-and-publications/Reports-to-the-Storting-White-Papers/Reports-to-the-Storting/19992000/report-no-9-to-the-storting-.html?id=456868

16)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5.4.1에서 인용.

17)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5.4.

18) A. Umbreit, (2009) *Spitsbergen*, Bucks UK, Bradt Travel Guides. p. 40.

19)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5.3.

20) Statistics Norway (2011d) 'Industrial Statistics for Svalbard 2010',

www.ssb.no/english/subjects/10/sts_en

Ⅲ. 공유에 기초한 슈발바르의 경제활동과 공동체 형성

1. 공유에 기초한 슈발바르의 경제활동

16세기 바렌츠가 발견 한 이래, 슈발바르에서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포경 캠프가 있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처음에는 러시아 사냥꾼 다음으로 노르웨이 사냥꾼들의 오두막(집)이 들어섰다. 20세기 초부터 경제활동은 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8세기 이래 슈발바르는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및 독일의 탐험대가 다녀간 과학 탐험의 대상지이기도 했다. 슈피츠베르겐 조약 체결 후, 슈발바르에서의 과학 연구는 제도화되었고, 1928년 나중에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된 기관이 창립됨으로써 가장 주목할 만하게 되었다.²¹⁾ 오늘날 뉘올레순(NyÅlesund, 인구가 약 35명인 세계 최북단 영구 거주 정착촌)²²⁾은 다양한 조약 서명국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연구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정착촌 자체는 공공기업 킹즈 베이 에이에스(Kings Bay AS)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1978년 이래 폴란드는 호른준땃(Hornsundet)에 있는 폴란드 폴라 스테이션에서 연중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8명이 상주하고 대표단을 맞이한다.²³⁾

슈발바르에서의 석탄 채굴은 19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슈발바르 광업회사들은 소유권을 자주 변경했다. 최초의 노르웨이 기업에서 러시아,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의 바이어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1911년 스웨덴은 피라미덴(Pyramiden)과 스베아그루바(Sveagruba)에 광산을 설치했지만, 1920년대에 스베아그루바 광산을 노르웨이에게, 피라미덴 광산을 러시아에 판매했다. 1916년 노르웨이 정부는 나중에 스베아그루바 광업을 인수할 Store Norske Spitsbergen Kulkompani(이하 Store Norske)를 설립했다. 마찬가지로 소련도 1930년대 초 네덜란드로부터 바렌츠부르크(Barentsburg) 광업을 인수했다.

슈피츠베르겐 조약과 더불어 1925년 광업 법령(Mining Code)과 1975년 국왕 포고령으로 광산업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광업법(제2조)은 모든 조약 서명국들이 평등하게 석탄, 광유류(鑛油類, mineral oils)의 천연 매장지를 탐색, 획득 및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모든 서명국들이 평등한 채광권(mining rights)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슈피츠베르겐 조약 제6조에 따라, 영토를 청구할 수 있는 제한된 기간이 존재하고, 외국에 의한 재산소유는 노르웨이 레짐에서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Lüdecke, 2011). 처음부터 노르웨이는 슈피츠베르겐 조약이 부과한 몇몇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할 때마다 외국으로부터 광업권을 구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1930년대 이래로 러시아도 똑같이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0년 동안 이들 두 국가만이 슈발바르에서 광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²⁴⁾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광업

21) C. Lüdecke, (2011) 'Parallel Precedents for the Antarctic Treaty', in P.A. Berkman, M.A. Lang, D.W.H. Walton, & O.R. Young (eds.) *Science Diplomacy: Antarctica, Science, and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Space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Scholarly Press, pp. 253-263.

22) 뉘올레순은 노르웨이 슈발바르 제도의 네 영구 거주지 중 하나이다. 현재 상주 인구는 약 30~35명으로 모두 이곳의 연구 기지나 이 기지에 물품을 보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여름에는 연구자나 기술자 등이 더 찾아와 120명까지 늘기도 한다. 현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뉘올레순에 연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23) T. Moczadlowski, (2001) *Polska Stacja Polarna: Hornsund*, <http://hornsund.igf.edu.pl>

24)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annen p Svalbard*, Trondheim, Tapir

은 슈발바르의 유일한 주요 상업 활동이었고, 롱위에아르뷔엔, 뉘올레순, 피라미덴, 스베아그루바와 바렌즈부르크의 영구 정착지를 유지했다.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서명국들이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환경규제에 따라 슈발바르 주변의 해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약 2,070명의 인구를 가진 롱위에아르뷔엔은 슈발바르 최대 정착지이다. 약 240명의 근로자가 롱위에아르뷔엔에서 스베아그루바까지 통근한다. 스베아그루바는 롱위에아르뷔엔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Store Norske*의 광산들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일주일 작업/일주일 휴업으로 운영된다. 두 번째로 큰 정착지인 바렌즈부르크는 러시아 국영 *Trust Arktikugol* 광산 회사에서 운영한다. 바렌즈부르크의 인구는 러시아인이 절반, 우크라이나인이 절반 정도이다.²⁵⁾ 지난 몇 년 동안 현저하게 성장한 롱위에아르뷔엔과 달리 바렌즈부르크의 인구는 1998년 939명에서 현재 425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²⁶⁾ 슈발바르의 마지막으로 폐쇄된 정착지는 1998년 폐쇄된 피라미덴의 러시아 공동체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Trust Arktikugol*은 컨테이너 주택과 버려진 피라미덴 호텔을 리노베이션하여 하룻밤을 묵고 가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²⁷⁾

*Store Norske*는 역사적으로 노르웨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스베아노르드(Svea Nord)와 아드벤탈렌(Adventdalen)에 있는 *Store Norske*의 광산이 고품질 석탄이 부족하여 룬케피엘(Lunckefjell)에 새로운 광산이 개발 중이다. *Store Norsk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Store Norske*와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슈발바르의 노르웨이인의 존재 그리고 롱위에아르뷔엔 커뮤니티의 장기적 안정에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Trust Arktikugol*도 러시아 정부의 보조금에 심하게 의존한다. 슈발바르에서의 광업 운영의 불확실한 수익성과 종종 확실한 손해는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광산 운영이 군도의 정착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 때문임을 시사한다. “러시아가 슈발바르에서 광업활동을 유지하는 한, 노르웨이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존한다.²⁸⁾

2. 다자간 공동체로서 롱위에아르뷔엔(Longyearbyen)

슈발바르의 관할권 지위는 독특한 공동체 수준의 정책적 해결에 영감을 주었다. 최근까지 슈발바르의 모든 정착촌은 기업 도시였다. 공동체를 운영한 기업들이 그들의 인구(거기 사는 사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구입하는 물건 등)에 대해 사실상의 통제권을 가졌다. 예를 들어, 롱위에아르뷔엔에서 노르웨이 통화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Store Norske*가 돈 대신 사용해 온 임금 바우처의 인쇄 중단을 요구한 1980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²⁹⁾

Akademisk Forlag. pp. 40-41; A. Umbreit, (2009) *Spitsbergen*, Bucks UK, Bradt Travel Guides. p. 36.

25) Governor of Svalbard (2008) 'Settlements',

www.sysselmannen.no/hovedEnkel.aspx?m=45299

26) Statistics Norway (2011b) 'Population Statistics. Svalbard', www.ssb.no/befsvvalbard_en

27) Terrapolaris (2010) 'Pyramiden - Settlement, Accommodation, Travel',

www.terrapolaris.com/index.php?id=338&L=5

28) J.H. Jorgensen, (2004) 'Onsker Norge a presse Russland bort fra Svalbard?', *Aftenposten*, 04 January,

www.aftenposten.no/meninger/kronikker/article701483.ece

롱위에아르뷔엔은 1970년대 중반에 느린 정상화 과정을 시작했다. 당시 롱위에아르뷔엔의 거주자 대부분은 *Store Norske*에 의해 몇 년 교대 근무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지방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주지사는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 에비엔(Evjen, 2001 : 36, translation our own)에 따르면 :

슈발바르의 노르웨이 정착촌이 순수하게 노르웨이의 주권과 외교 정책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한, 지방 자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만족했다; 공동체 발전에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였다. 둘 중 하나라도 발전시킬 공동체가 별로 없었다. 그것은 대개 직장이었다.

*Store Norske*는 모든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했다. 1989년에는 이러한 기능이 자회사인 *Svalbard Samfunnsdrift AS*로 이전되었는데, 이 회사는 1993년 안전한 공공기업이 되었다.³⁰⁾ *Store Norske*는 또한 다른 새로운 기업들에, 예를 들면 *Spitsbergen Travel AS*(관광사업), *Svalbard Næringsutvikling AS*(상업개발), *Svalbard Næringsbygg AS*(상업용 자산)에 자신의 기능을 이전했다. *Store Norske*는 이러한 기능을 광산 운영과 차별화하여 다각화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롱위에아르뷔엔 관광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³¹⁾ 이전의 정착촌에는 숙박, 식사 및 쇼핑 시설이 없었다.³²⁾ 2010년 롱위에아르뷔엔의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들은 관광객과 컨퍼런스/코스 방문객으로부터 60,142박을 처리했다.³³⁾ 1993년 슈발바르 대학 센터(UNIS, University Centre in Svalbard)가 설립되어, 북극 과학교육을 제공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롱위에아르뷔엔의 경제는 더 이상 *Store Norske*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고, 몇 년이 지나자 도시의 서비스 부문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수많은 새로운 상점, 호텔, 식당, 바가 문을 열었다. 롱위에아르뷔엔은 슈발바르의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경제적으로 다양한 정착지로 변모했다.

오늘날까지도 롱위에아르뷔엔 주민들의 대부분은 단기 체류객 또는 노동자들이며, 아주 소수의 소수민족만이 지역적 유대관계를 수십 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2008년 이 도시의 연간 인구회전율은 23%였다.(Olsen, 2009). 슈발바르의 두 노르웨이 정착지인 롱위에아르뷔엔과 뉘알레순의 인구는 또한 아주 젊다.(20-44세 연령대가 노르웨이 전체평균 34.1%와 비교하여 50%를 차지한다)³⁴⁾ 이런 단기체류와 젊음은 부분적으로 슈발바르에서 사회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이다: 경제적 지원도 장기 의료서비스도 거주자가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롱위에아르뷔엔 거주자는 슈발바르에서 그들의 삶을 살 계획을 세울 수 없다. 홀름이 말하듯이(Holm, 2001 : 128-129):

29) Norske Store, (2010) 'Important Dates in Store Norske's History',

www.snsk.no/important-datesin-store-norskens-history.145749.en.html

30)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7.3.1

31)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emanden på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p. 324-325.

32)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7.4.4

33) Statistics Norway (2011a) 'Accommodation on Svalbard, July 2011', www.ssb.no/english/subjects/10/11/overnattingsv_en

34) Statistics Norway (2011b) 'Population Statistics. Svalbard', www.ssb.no/befsvsvalbard_en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우리가 방금 도착했다는 것과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설문지에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묘사되었을지라도, 그 삶은 변화 중이라는 것이다. 언제 다시 남쪽으로 여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녁식사에 무엇이 나오는지 물어보는 아이의 질문처럼 일상적인 곳에서의 삶... 롱위에아르뷔엔은 영구적인 정착지가 아닌 것이다.

이런 단기체류는 지속적인 공동체 구조의 형성을 방해한다. 그러나 비록 이 문화가 정확하게 비영구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슈발바르 문화에 대한 비전을 포용한 주민들과 함께 지역 정체감 (sense of local identity)이 존재한다. 롱위에아르뷔엔의 현대적 설비가 제공하는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거주자조차도 슈발바르의 초기 광부나 탐험가의 전통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관광 수입으로 이익을 얻고, 오래된 광산 테마로 문화 관광지처럼 장식된 후셋 (Huset)과 크로아(Kroa) 같은 유흥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 및 현지 문화 활동 센터의 일부로 간주된다.³⁵⁾

2.1. 노르웨이 정부기구로서 롱위에아르뷔엔 공동체 평의회

2002년이 되어서야 롱위에아르뷔엔은 롱위에아르뷔엔 공동체 평의회(Longyearbyen Community Council, Longyearbyen lokalstyre)의 창설로 지역 민주주의의 도구를 확보했다.

냉전기 동안 노르웨이의 슈발바르 정책은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 민주주의는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발바르 지역 평의회(Local Svalbard Council, *Det stedlige svalbardråd*)는 1971년에 창설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슈발바르 평의회(Svalbard Council, *Svalbardrådet*)로 바뀌었다. 슈발바르 평의회는 순수하게 주지사에게 자문역할을 맡았다. 1970년대 중반 노르웨이 정부백서(Report No. 39 to the Storting, 1974-75)는 지역 민주주의 제도를 검토했으나 거부했다. 슈발바르 평의회(Svalbard Council)는 주지사에게 자문역할을 맡았다. 사실, 1980년대 중반 노르웨이 정부백서(Report No. 40 to the Storting, 1985-86)는 “본토 모델에 따른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정치적, 실천적, 경제적 장애물”을 발표했다.³⁷⁾

노르웨이 정부는 슈피츠베르겐 조약과 관련하여 주지사의 권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느꼈다.³⁸⁾ 게다가 조약의 요구에 따라 노르웨이는 지속적으로 주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주권에 대한 믿을 만하고 효과적인 행사는 슈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안정적 존재감에 달려있다. 생명력 있는 지역 공동체는 아마 이 노르웨이의 존재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³⁹⁾

35) A. Grydehoj, (2010) ‘Uninherited Heritage: Community Reaction to Heritage without Inheritors in Shetland, Aland, and Svalbard’,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6, Nos. 1-2, pp. 77-89.

36)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14.2.1

37)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14.2.1

38) Government of Norway (2001) *Ot.prp. Nr. 58 (2000-2001): Lov om endringer til svalbardlovenmm. (innf ring av lokaldemokrati i Longyearbyen)* §2.1,

www.regjeringen.no/nb/dep/jd/dok/regpubl/otprp/20002001/otprp-nr-58-2000-2001-/2.html?id=164762

39) Government of Norway (2001) *Ot.prp. Nr. 58 (2000-2001): Lov om endringer til svalbardlovenmm. (innf ring av lokaldemokrati i Longyearbyen)* §2.1,

그러나 1990년대까지 롱위에아르비엔의 변화 속도는 주지사의 절대적인 권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전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슈피츠베르겐 조약의 한계 내에서 지역 민주주의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시작했다. 슈발바르 평의회와 관련하여, 가이어 울프 슈타인(Geir Ulfstein)의 1990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주권 덕분에 원칙적으로 증가한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주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조약과 상충하지 않고는 완전히 자치적인 정착촌을 세울 수 없다. 노르웨이는 타국의 조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권한 행사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가정이다. 슈발바르 평의회(Svalbard Council)는 노르웨이 주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타국과 관계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만 있다.⁴⁰⁾

노르웨이 정부의 지방 민주주의 계획은 마침내 정부백서로 완성되었다.(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결과된 입법은 롱위에아르비엔 공동체 평의회(Longyearbyen Community Council)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했다.

... 롱위에아르비엔 인프라, 사회 및 지역 계획, 경제 계획, 사업 활동, 통계 작성, 아동, 청년 및 성인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개발 및 조정, 아동 보호, 사회 사업, 청소년 사업, 보육 서비스 및 정치 사무국에 대한 책임⁴¹⁾

주지사는 슈발바르 어느 지역에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했다. 롱위에아르비엔 주민들 사이에 더 큰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욕망이 있었지만, 롱위에아르비엔 공동체 평의회(Longyearbyen Community Council)의 창설은 지역적으로 보편적 승인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2005년에도 주민들의 절반이 지방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했고, 슈발바르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더 많은 관료제와 세금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제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적었다. 슈발바르의 소득세가 실제로 크게 상승했을 때, 그 결과 등장한 시위는 충분히 강력해서 노르웨이 정부가 그 문제를 철회하게 만들었다.⁴²⁾ 21세기 첫 10년 동안 일어난 거버넌스 변화의 역설적인 결과 중 하나는 롱위에아르비엔 주민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 것이었다. 사실, 주지사 사무실은 그동안 노르웨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정부의 한 부속기관 정도로만 보였다.⁴³⁾

규범에 반하게도 더 큰 지방 자치의 전망에 대해 소극적인 상대적으로 부유한 섬 공동체들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는 항상 존재한다.⁴⁴⁾ 다음 절에서는 최근의 인구통계학적 발전이 롱위에아르비엔의 이미 제한된 지역 민주주의의 민주적 성격을 어떻게 더 제한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40)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14.2.3

41) S.O. Ween, (2011) 'Longyearbyen lokalstyre',

www.lokalstyre.no/Modules/theme.aspx?ObjectType=Article&ElementID=630&Category.ID=707

42)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a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p. 372-375.

43)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a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p. 390-393.

44) A. Grydehoj, P. Hayward (2011) 'Autonomy Initiatives and Quintessential Englishness on the Isle of Wight', *Island Studies Journal*, Vol. 6, No. 2, pp. 179-202.

2.2. 다국적 공동체로서 롱위에아르비엔

과거 슈발바르의 러시아 정착촌과 노르웨이 정착촌 주민 간에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이런 상호작용은 관리되었고, 러시아와 노르웨이 정부는 정착촌의 이런 상호작용을 의심스럽게 보았다.⁴⁵⁾ 슈발바르는 내부적 국경이 없는 영토였지만, 서로 다른 민족적 영역 사이에는 사실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붕괴, 롱위에아르비엔의 자유화, 관광 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러시아-노르웨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회와 수요가 증가했다. 롱위에아르비엔에서 바렌즈부르그까지의 여름관광 보트 여행은 1986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정기적인 관광 보트 및 스노우 모빌 여행이 있어 슈발바르의 사실상 민족적 지역을 흐리게 하고 있다.

롱위에아르비엔의 경제적 자유화는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노르웨이의 통제를 제한했다. 2001년 말 노르웨이 정부는 마을에 최대 1,300명의 주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⁶⁾ 2011년 7월 1일 현재 롱위에아르비엔과 뉘알레순은 합쳐서 2,104명의 주민이 있다. 이들 중 1,741명이 노르웨이 국민이고, 363명이 다른 국가의 국민이었다.⁴⁷⁾

따라서 비 노르웨이 국민이 노르웨이 정착촌 주민의 17.3%를 차지한다. 슈피츠베르겐 조약으로 인해 노르웨이 이민법은 슈발바르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슈발바르에 거주하는 비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 영토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노르웨이 영주권(residence) 또는 시민권(citizenship)을 취득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표1 참조)

<표 1> 2011년 7월 1일 현재 슈발바르 노르웨이 정착촌 국적별 인구

슈발바르 외부의 거주지	남성	여성	합	비율
노르웨이	1025	716	1741	82.7%
비 노르웨이인 전체	177	186	363	17.3%
태국	38	65	103	
스웨덴	44	31	75	
러시아	14	22	36	
독일	15	6	21	
크로아티아	7	7	14	
덴마크	5	6	11	
필리핀	2	9	11	
기타	52	40	92	

Source: Statistics Norway(2011b).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수의 태국인들이 노르웨이 정착촌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것이다. 쟈슨은 비록 소수의 태국 여성들이 1970년대 초부터 결혼 이민자로 슈발바르에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⁴⁸⁾ 이들 후기

45) A. Umbreit, (2009) *Spitsbergen*, Bucks UK, Bradt Travel Guides. p. 42; B. Tobias, (2006) 'Cold War Haunts Arctic Outpost', BBCRussian.com,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6204427.stm>
 46)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2.2.4
 47) Statistics Norway (2011b) 'Population Statistics. Svalbard', www.ssb.no/befsvvalbard_en
 48) A.M. Jensen, (2009) 'From Thailand to Svalbard: Migration on the margins', *Asia Portal - In Focus*, <http://infocus.asiaportal.info/2009/05/25/mayfrom-thailand-svalbard-migration-marginsan-magridd-jensen>

이민자들은 태국의 가난한 경제적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으며, 초기의 개척 이주자들에 의해 ‘모집’되었다. 태국은 슈피츠베르겐 조약 서명국이 아니지만, 슈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이민법이 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태국 이민자가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유럽의 유일한 지역이다. 그 결과, 유럽 다른 곳에서의 태국 이민과 달리, 오늘날 슈발바르의 태국 이민자들은 결혼 이민자가 아닌 주로 노동 이주자이며, 결혼을 했거나 또는 미혼의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가족그룹 전체가 혼합된 이민자 집단이다.

또한 놀랍게도, 롱위에아르뷔엔은 노르웨이, 태국, 스웨덴의 국민 이외에 어떤 규모 있는 특정 국가의 국적자 인구를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 작은 수의 뚜렷한 민족적 공동체의 집(고향)이 되기보다, 롱위에아르뷔엔의 비 노르웨이 인구는 주로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노르웨이 정착촌의 전체인구 중 10.5%는 현재 탑3 국가그룹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롱위에아르뷔엔은 약 40개국의 국민이 살고 있다.⁴⁹⁾

롱위에아르뷔엔의 다국적주의(multinationalism)와 지역 민주주의(local democracy)의 구현은 슈발바르의 발전을 관리하고 슈피츠베르겐 조약을 준수하려는 노르웨이의 노력에 도전했다. 롱위에아르뷔엔 공동체 평의회(Longyearbyen Community Council)는 노르웨이 국가의 일부로 롱위에아르뷔엔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노르웨이 본토에서 투표권을 가진 롱위에아르뷔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롱위에아르뷔엔은 대표적인 다국적 커뮤니티(multinational community)일 수도 있지만 다국적 민주주의(multinational democracy)는 아니다. 예를 들어 롱위에아르뷔엔의 높은 인구 이동성을 고려할 때, 태국인 인구는 당연히 슈발바르의 가장 안정된 공동체 중 하나를 대표할 수 있다. 단기 거주자가 압도적인 도시에서 태국 이민자들은 상당수 장기 거주자들이다. 그러나 롱위에아르뷔엔의 태국 국민들은 - 러시아, 독일 및 기타 모든 비 북유럽(노르딕) 국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 롱위에아르뷔엔 공동체 평의회 또는 실제로 슈발바르의 다른 형태의 정부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IV.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갈등

1. 바렌츠해 조약과 노르웨이-러시아 해양경계획정

바렌츠해는 북극해에서의 노르웨이와 러시아간의 분쟁의 대상이었다. 바렌츠해의 해양경계 분쟁⁵⁰⁾은 적어도 노르웨이와 소련간의 영해의 경계에 대한 바랑게르피요르드 협정(1957)에서 시작된다.⁵¹⁾ 1958년 대륙붕에 관한 UN협약⁵²⁾의 채택에 따라, 1963년 노르웨이는 자신의 대륙붕을 주장했다.⁵³⁾ 1967년 소련 또한 자신의 대륙붕을 주장했다.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

49) Governor of Svalbard (2008) 'Settlements', www.sysselmannen.no/hovedEnkel.aspx?m=45299

50) 더 자세한 내용은 예병환,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해 조약”, 『독도연구』 제14호 (2013.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참조.

51) Agreement Concerning the Sea Frontier Between Norway and the USSR in the Varangerfjord, signed in Oslo on 15 February 1957, in force 24 April 1957, 312 U.N.T.S. 322.

52)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signed in Geneva on 29 April 1958, in force on 10 June 1964, 499 U.N.T.S. 311.

53) Norway, Royal Decree of 31 May 1963 No. 1 Relating to th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Sea-bed

약에 따르면, 바렌츠해의 해저 대부분은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와 소련 간에 양자의 경계가 필요했다. 1974년 모스크바에서 공식적 협상이 시작되었고, 1977년 바렌츠해에서 노르웨이와 소련 모두 200해리 EEZ를 선포하자, 양국 간 협상은 더욱 확장되었다. 양국은 대륙붕의 경계에 더해 EEZ 문제도 다루어야 했다. 어업이 가장 긴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양국은 분쟁해역의 어업을 규제하는 잠정협정에 동의했다. 소위 회색지역 협정(Grey Zone Agreement)이라 불리는 이 조약은 1978년 1월 조인되었다.⁵⁴⁾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양자 간 협상의 목적이 그들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역에 있는 EEZ와 대륙붕에 대한 단일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임에 합의했다. 노르웨이의 입장은 양국간 경계는 본토 해안선과 슈발바르(노르웨이), 노바야 제믈라(러시아), 프란츠 이오시프(러시아) 섬들 사이의 중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과 그 계승자인 러시아는 해양경계는 슈발바르 조약(Svalbard Treaty) 제1조에서 규정된 해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슈발바르에서 동쪽으로 조정된 소위 말하는 바랑게르 피요르트로부터 북극점을 향하는 섹터라인(sector line)을 주장했다.⁵⁵⁾ 러시아의 섹터라인이 시작된 1926년 포고령에 의하면, 지정된 동서 간 두 중간선 내의 모든 육지 영토는 소련에 속하고, 다만 해양경계획정은 노르웨이와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의 섹터라인 주장을 반대했다. 러시아는 또한 러시아의 더 많은 인구, 지질학적인 조건, 경제적 이익, 특수한 환경적 위험, 안보적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 몇몇 비지리적인 '특별 고려사항'을 주장했다. 소련/러시아는 슈발바르의 특수한 지위가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아치펠라고를 결과했고, 따라서 해양영역(maritime zones)을 형성하는 슈발바르의 능력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⁵⁶⁾

마침내 2010년 4월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노르웨이 수상 슈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바렌츠해의 해양경계 및 협력에 대한 협정을 발표했다.⁵⁷⁾ 해양경계조약은 2010년 9월 15일 무르만스크에서 조인되어, 양국 간의 40여년의 긴 협상을 끝냈다.⁵⁸⁾ 2010년 4월의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경계선은 “분쟁해역을 대략 같은 크기로 나누는 선”이 될 것임을 권고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바렌츠해의 분쟁지역은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동쪽

and Subsoil Outside the Norwegian Coast, available at 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NOR_1963_Decree.pdf (검색일: 2013.04.20).

54) Avtale mellom Norge og Sovjetunionen om en midlertidig praktisk ordning for fisket i et tilstøtende område i Barentshavet med tilhørende protokoll og erklæring (translated to “Agreement Between Norway and the Soviet Union on a Temporary and Practical Arrangement for the Fishery in an Adjacent Area of the Barents Sea”) Oslo 11 January 1978, in force 27 April 1978, Overenskomster med fremmede stater (1978), 436.

55) Treaty Concerning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signed in Paris on 9 February 1920, in force 14 August 1925, 2 L.N.T.S. 7.

56) T. Pedersen and T. Henriksen, “Svalbard’s Maritime Zones: The End of Legal Uncertainty?”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4 (2009): 144, n. 11.

57) “Joint Stat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www.regjeringen.no/en/dep/ud/Whats-new/news/2010/statementdelimitation.html?id=601983 (검색일: 2012.07.15.) 부속서1도 참조.

58) 양국 간 40여년의 긴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예병환,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해 조약”, 『독도연구』 제 14호 (2013.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참조. 바렌츠해의 해양경계 및 협력에 대한 협정의 영문판은 www.regjeringen.no/en/dep/ud/campaign/delimitation/treaty.html?id=614006 참조. (검색일: 2013.04.12)

중간선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서쪽 섹터 선 사이의 대략 175,000km²였다.⁵⁹⁾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지역은 세 지역이었다.⁶⁰⁾ 첫 번째 지역은 바랑게르피요르드의 입구에서 시작하여, 노르웨이와 러시아 본토로부터 200해리까지 뻗어있는 지역이다. 대륙붕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필요했다. 두 번째 지역은 200해리 너머에 있는 바렌츠해 중간수역으로, 서로 마주보는 노르웨이 본토와 슈발바르드 제도 및 러시아(노바야 제믈랴)간의 대륙붕 경계가 필요했다. 세 번째 지역은 북부 바렌츠해 지역으로, 대륙붕의 경계와 더불어 서로 마주보는 노르웨이의 슈발바르드 제도와 러시아의 프란츠 이오시프 및 노바야 제믈랴의 외부에 있는 러시아의 EEZ와 슈발바르드 어업보호수역간의 경계가 필요했다. 2010년 9월 조약의 제1조는 경계선을 획정하는 8개의 좌표를 규정하고 있다.

2. 슈발바르드 군도에서의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갈등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발바르드에서의 공동체 생활의 틀은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슈발바르드 군도에서 그들의 권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추진된다. 국제관계는 항상 슈발바르드 정책의 핵심이 되어 왔다.

슈피츠베르겐 조약은 처음부터 해석상의 차이에 노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비무장화에 관한 제9조는 실제로 평화시에 가장 강력했다. 이 점에서 슈발바르드는 1856년 조약에 의해 비무장화되었으나 핀란드와 소련 간의 제1차 세계대전과 1939-1944년 전쟁에서 방어적 군사 활동의 대상이었던 알란드의 발트 군도와 비교될 수 있다.⁶¹⁾ 슈발바르드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산발적인 전투의 장이었다. 이것은 독일군의 점령에 앞서 모든 정착지에서 광산, 건물, 석유 및 석탄 저장고 및 기계류를 파괴한, 1941년 연합군에 의한 슈발바르드 주민(2,175명의 러시아인과 900명의 노르웨이인)의 대피 이후의 일이다.⁶²⁾ 1944년 소련은 슈발바르드를 노르웨이와 소련의 합동군사통제 하에 두고자 했으나 실패했다.⁶³⁾ 노르웨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일찌감치 참여하고, 1950년 슈발바르드(Svalbard)와 얀 마이옌(Jan Mayen)을 커버하는 NATO 합동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소비에트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와 반응이었다.⁶⁴⁾

슈발바르드의 영토경계에 관한 분쟁도 발생했다. 슈피츠베르겐 조약은 영해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상 지대와 같은 법적 개념보다 시대적으로 앞섰다.⁶⁵⁾ 노르웨이는 슈피츠베르겐 조

59) Robin Churchill and Geir Ulfstein, *Marine Management in Disputed Areas: The Case of the Barents Sea* (London: Routledge, 1992), pp. 63-65.

60) Ibid., p. 69.

61) S. Eriksson, (2006) 'Åland - A demilitarised and neutralised territory', in S. Eriksson, L.I. Johansson, & B. Sundback (eds.) *Islands of Peace: Åland's Autonomy, Demilitarization, and Neutralization*, Mariehamn, Åland Islands Peace Institute, pp. 9-35.

62) W. Dege, (2004/1954) *War North of 80°: The Last German Arctic Weather Station of World War II*, W. Barr (trans. and ed.), Calgary AB and Boulder CO, University of Calgary Press, University of Colorado Press, with the Arctic Institute of North America.

63) J. Machowski, (1995). 'Scientific Activities on Spitsbergen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Archipelago', *Polish Polar Research*, Vol. 16, Nos. 1-2, pp. 13-35.

64) C. Lüdecke, (2011) 'Parallel Precedents for the Antarctic Treaty', in P.A. Berkman, M.A. Lang, D.W.H. Walton, & O.R. Young (eds.) *Science Diplomacy: Antarctica, Science, and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Space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Scholarly Press, pp. 253-263.

65) N. Scotcher, (2011) 'The Sovereignty Dilemma', D. Wallis and S. Arnold (eds.) *The Spitsbergen*

약이 육지와 영해를 12해리(약 22km)의 거리까지만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조약이 어업 지역(fisheries zone)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⁶⁶⁾ 1977년 노르웨이가 200해리(약 370km)의 경제수역을 설정했을 때 소비에트연방 정부는 이 조치가 슈피츠베르겐 조약 서명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항의했다. 2010년 외교정책적 고려에 의해, 러시아는 바렌츠해에서 노르웨이와 해양경계를 협상했다.⁶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해안 경비대가 2011년 9월 28일 러시아 트롤어선 사파이어2 호를 나포함으로써 어업권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⁶⁸⁾

그러나 노르웨이와 다른 조약 서명국들이 군도에서 수행하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지정학적인 위상(positioning)은 제쳐두고, 비무장화 및 어장 지역의 위험과 같은 극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면, 롱위에아르비엔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이든, 노르웨이 정부는 롱위에아르비엔을 주로 주권의 도구로 간주한다. 슈피츠베르겐 조약 제2조는 차별금지 원칙, 모든 조약 서명국 국민의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롱위에아르비엔 공동체 평의회(Longyearbyen Community Council)가 이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위배된다고 주장되지 않는 이유는 - 조약의 제2조, 제3조 및 제7조가 특정 경제활동에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⁶⁹⁾:

다른 종류의 활동이 관련되는 경우, 이 조약은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는 조약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고, 노르웨이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지역에서의 조치가 슈발바르 조약의 방해 없이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바렌츠부르크를 광산 도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든 비경제적 활동은 노르웨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⁷⁰⁾

노르웨이는 바렌츠부르크에 대한 주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를 열망하고 있다.⁷¹⁾ 움부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⁷²⁾:

탈소비에트 시기에 노르웨이는 러시아의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러시아 정착촌 내에서 점점 더 많은 규정을 도입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약점을 잘 활용했다.

노르웨이어 도로 표지판 및 노르웨이의 화재 기준과 같은 규정은 무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Helsinki, Arctic Papers, Vol. 1, pp. 21-33.

66) D.H. Anderson, (2007)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Politics and Law -Energy and Environment in the Far North", held at the Norwegian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 24 January.

67) M. Arild, D. Fjartoft & I. Overland (2011) 'Space and Timing: Why was the Barents Sea Delimitation Dispute Resolved in 2010?', *Polar Geography*, Vol. 34, No. 3, pp. 145-162. 러시아-노르웨이 간 바렌츠해 조약의 해양경계획정 방법에 대해서는 배규성·예병환, "바렌츠해 조약의 국제법적 분석: 러시아-노르웨이간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20호. 2016. 영남대 독도연구소. 참조.

68) T. Nilsen, (2011) 'Russians must follow Norwegian law', *BarentsObserver.com*, 14 October, www.barentsobserver.com/-russians-must-follow-norwegian-law.4972044.html

69)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4.1.2

70)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4.1.2

71)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3.1

72) A. Umbreit, (2009) *Spitsbergen*, Bucks UK, Bradt Travel Guides. pp. 42-43.

지만, 그러한 국내법의 시행은 “타국의 기업 및 직원이 특정 노르웨이 기준에 적응하기가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슈피츠베르겐 조약의 차별금지 규칙과 충돌할 수 있다.”(ibid.) 사실, 러시아가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단호함을 되찾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통제에 단순히 복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것은 콜레스북타(Colesbukta)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설할 권리를 얻는 2000년대 초 러시아의 성공적인 투쟁에 의해 잘 설명된다. 이 새 광산은 바렌즈부르그의 거의 다 소비된 광산을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주지사는 노르웨이 국내법, 특히 2001년 슈발바르 환경보호법(Svalbar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이 개발을 반대했다. 일부 러시아 관측통은 이 법안을 “러시아를 군도에서 강제 이탈시키려는 위장된 정치적 도구”라고 평가했다.⁷³⁾ 이 갈등은 또한 노르웨이 정부의 무능력의 증거이자 일관된 슈발바르 정책의 부재로 해석되었다.⁷⁴⁾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노르웨이의 슈발바르 정책은 사실 1990년대 초반부터 아주 집중되고 투명해졌다. 바렌즈부르그를 파괴하려는 음모의 증거는 없었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의심의 여지없이 바렌즈부르그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슈발바르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공약은 18세기 러시아 사냥꾼 공예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두고 벌어진 주지사와 *Trust Arktikugol* 사이의 최근 분쟁과 같이 작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잘 나타났다.⁷⁵⁾ 이 문화유물들은 바렌즈부르그의 포모르 박물관에 열악하게 보관되어 있다. 슈피츠베르겐 조약은 박물관 활동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사는 룽위에아르비엔에서의 보존을 위해 이 유물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슈발바르 환경 보호법을 다시 전개했다. 즉, 러시아가 운영하는 포모르 박물관의 운영은 노르웨이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바렌즈부르그에서 노르웨이의 주권을 행사할 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항의 이후 주지사의 꼬리를 내리는 후속조치에 의해 분명해졌다.⁷⁶⁾

또 다른 최근의 분쟁은 *Trust Arktikugol*이 룽위에아르비엔에서 바렌즈부르그까지 관광 헬리콥터를 운영한 것이 관련되었다. 채굴 수입 감소에 직면한 *Trust Arktikugol*은 현재 여름철 외에 스노모빌을 타야만 바렌즈부르그에 도착할 수 있는 관광객들로부터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주지사는 바렌즈부르그의 광산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행편만 슈피츠베르겐 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Trust Arktikugol*은 관광은 슈피츠베르겐 조약에 규정된 상업활동을 대표하며, 노르웨이의 행동은 관광객들이 슈발바르의 유일한 상업공항이 위치한 룽위에아르비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렌즈부르그엔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법원의 청문회 이후, *Trust*

73) K. Atland & T. Pedersen (2009) ‘Russia’s Svalbard Policies: Securitization Still in Fashion?’, Paper presented at 50th Annual Convention,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New York, 15 February, pp. 10-12.

http://citation.allacademic.com//meta/p_mla_apa_research_citation/3/1/3/2/0/pages313206/p313206-1.php

74) J.H. Jorgensen, (2004) ‘Onsker Norge a presse Russland bort fra Svalbard?’, *Aftenposten*, 04 January, www.aftenposten.no/meninger/kronikker/article701483.ece

75) K.N. Aarskog, (2008a) ‘Vil overta museumsgjenstander’, *Svalbardposten*, 30 October, <http://svalbardposten.no/node/1534>

76) K.N. Aarskog, (2008b) ‘Avverget politisk konflikt’, *Svalbardposten*, 7 November, <http://svalbardposten.no/node/1522>

*Arktikugol*은 불법적인 비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 받았고, 미래의 관광 헬기 운행을 금지 당했다.⁷⁷⁾

이 사건의 뿌리는 깊었다. 이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러시아는 헬리콥터 운영 허가의 측면에서 노르웨이인들이 우대를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러시아는 특정 활동을 위한 허가를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다.⁷⁸⁾ 슈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그것이 도전받지 않고, 노르웨이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정도까지만 절대적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현상을 유지하는 수단 중 하나는 슈피츠베르겐 조약 개정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확고하게 거부하는 것이다.(Osthagen, 2011).

슈피츠베르겐 조약은 해석에 너무 개방되어 있으므로, 슈발바르의 관할권은 선례(precedent)와 인식(perception)에 크게 의존한다. 러시아가 다른 조약 서명국들과 비교하여 슈발바르에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실무에서만 그렇지 법률에서는 그렇지 않다. 바렌츠부르그 지역사회를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끈질긴 노력은 세계대전, 냉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그리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슈발바르 영토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해왔다. 만약 지정학의 거대한 조류와 비교하여 박물관 전시, 관광 비행 및 수익이 없는 광산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유일하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슈발바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다. 세계의 다른 어떤 기준으로든 타국의 주권적 영토 내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국영 상업 전초기지의 존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바렌츠부르그는 롱위에아르뷔엔이 노르웨이에게 치명적인 것과 같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이다.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존재한다는 자체 때문에 중요하다.

V. 결론

슈피츠베르겐 조약이 '슈발바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체계를 만들었지만,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냉전이 끝난 이래, 동서의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대신, 슈발바르는 점차 세계경제와 관련된 전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슈발바르에서 과거와 똑같은 오래된 갈등을 벌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슈발바르에 대한 주권 유지가 그 자체로 끝났다는 사실을 숨기려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슈발바르 영토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위해 돈을 쓰고 노르웨이 법원에 호소할 의지를 보였다. 이 두 나라에 관한 한, 슈발바르에서의 국가적 권리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가 제공할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슈발바르에 대한 헤게모니가 잠재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다른 국가에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점은 2000년에 다음과 같이 말한 *Store Norske*의 전 CEO인 Robert Hermansen

77) B. Amundsen, (2009) 'Dom stanser turist planer i Barentsburg', *Svalbardposten*, 20 November, www.svalbardposten.no/nyheter/dom-stanser-turistplaner-i-barentsburg

78)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a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p. 255-256.

에 의해 입증되었다.⁷⁹⁾

슈발바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여기에 커뮤니티를 가져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떠난다면, 러시아인들은 즉시 그것을 주장할 것이다. 나는 환상이 없다. (Brown, 2000, n.p.)

따라서 바렌츠부르그와 롱위에아르뷔엔은 이들 광산 공동체가 채굴할 석탄이 남아있든 없든 관계없이 장래에도 오래 존재할 것이다.

실제로 슈피츠베르겐 조약 서명국들 중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려는 노르웨이의 노력을 제한할 수 있다. 냉전 시대의 안보 수사학의 메아리에도 불구하고⁸⁰⁾, 이 군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측면에서 노르웨이의 주권에 대한 러시아의 저항에 의지하는 다른 많은 조약 서명국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역할이다. 러시아는 슈발바르에 관한 노르웨이의 대륙붕 주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다른 조약 서명국들도 노르웨이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⁸¹⁾ 이들 조약 서명국들은 자신들의 외교적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이 이런 투쟁을 러시아에게 기꺼이 떠넘긴다.

롱위에아르뷔엔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고 과학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항하여 주권을 주장하려는 노르웨이의 시도는 러시아의 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댓가로 다른 모든 조약 서명국들의 손을 강화했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더 이상 롱위 에아르뷔엔에 누가 살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지역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고해지면, 이런 의사결정이 주지사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전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견해를 반영하는 보다 민주적인 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 롱위에아르뷔엔의 자유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롱위 에아르뷔엔의 외부 편당을 차단하여 노르웨이 주권의 가장 강력한 도구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자유화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국제관계의 장으로 돌아가서, 노르웨이의 슈발바르에서의 과학 연구 및 다국적 개발 촉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노르웨이 정부가 자신의 대륙붕 주장을 지지하고 자신을 북극정책의 중심에 위치시키기 위해 슈피츠베르겐 조약의 특권을 일관적으로 활용한 결과, 노르웨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북극 확장에서 핵심적 행위자가 되었다. 그러나 북극지역에 새로운 행위자들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노르웨이는 그룹으로서 북극 연안국들의 영향력을 희석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의 해운, 조선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슈발바르를 북극지역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무대로서 이용하도록 밀어붙이는 아시아 경제 강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됨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쨌든, 노르웨이가 자신을 슈피츠베르겐 조약의 조건들에

79) P. Brown, (2000) 'Coal makes Oslo king of the isles', *The Guardian*, 30 December, www.guardian.co.uk/environment/2000/dec/30/internationalnews 에서 인용.

80) K. Atland & T. Pedersen (2009) 'Russia's Svalbard Policies: Securitization Still in Fashion?', Paper presented at 50th Annual Convention,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New York, 15 February, http://citation.allacademic.com//meta/p_mla_apa_research_citation/3/1/3/2/0/pages313206/p313206-1.php

81) L. Numminen, (2011) 'A History and Functioning of the Spitsbergen Treaty' In D. Wallis and S. Arnold (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Helsinki, Arctic Papers, Vol. 1, pp. 7-20.

대한 유일한 중재자라고 주장하는 한,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노르웨이의 해석을 이용할 때 불만을 호소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부분적으로는 자신이 만든 결과이다. 이는 노르웨이에 큰 기회와 함께 중대한 위협을 안겨주는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슈발바르는 진정한 글로벌 지역 공동체(global local community)의 고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국제관계 및 무역 야망의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90년 전 만들어진 슈피츠베르겐 조약은 색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유산을 가지게 되었다.

슈발바르는 오랫동안 국제법 및 안보 연구의 관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앞으로 이 군도 지역은 또한 거주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세계화 속의 발전을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배규성·예병환, “바렌츠해 조약의 국제법적 분석: 러시아-노르웨이간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0호(2016.6.) 영남대 독도연구소.
- 예병환,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해 조약”, 『독도연구』 제14호(2013.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Aarskog, K.N. (2008a) ‘Vil overta museumsgjenstander’, *Svalbardposten*, 30 October, <http://svalbardposten.no/node/1534>
- Aarskog, K.N. (2008b) ‘Avverget politisk konflikt’, *Svalbardposten*, 7 November, <http://svalbardposten.no/node/1522>
- Amundsen, B. (2009) ‘Dom stanser turist planer i Barentsburg’, *Svalbardposten*, 20 November, www.svalbardposten.no/nyheter/dom-stanser-turistplaner-i-barentsburg
- Anderson, D.H. (2007)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Politics and Law -Energy and Environment in the Far North”, held at the Norwegian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 24 January.
- Arild, M., D. Fjartoft & I. Overland (2011) ‘Space and Timing: Why was the Barents Sea Delimitation Dispute Resolved in 2010?’, *Polar Geography*, Vol. 34, No. 3, pp. 145-162.
- Arlov, T.B.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empene på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 Atland, K. & T. Pedersen (2009) ‘Russia’s Svalbard Policies: Securitization Still in Fashion?’, Paper presented at 50th Annual Convention,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New York, 15 February, http://citation.allacademic.com/meta/p_mla_apa_research_citation/3/1/3/2/0/pages313206/p313206-1.php
- Bailes, A. (2011) ‘Spitsbergen in a Sea of Change’, in D. Wallis and S. Arnold (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Helsinki, Arctic Papers, Vol. 1, pp. 34-37.
- Brown, P. (2000) ‘Coal makes Oslo king of the isles’, *The Guardian*, 30 December, www.guardian.co.uk/environment/2000/dec/30/internationalnews
- Byers, M. (2011a) ‘The dragon looks north’, *Al Jazeera*, 28 December, 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1/12/20111226145144638282.html
- Byers, M. (2011b) ‘Russia pulling ahead in the Arctic’, *The Star*, 29 December, www.thestar.com/opinion/editorialopinion/article/1108138-russia-pulling-ahead-in-the-arctic
- Dege, W. (2004/1954) *War North of 80: The Last German Arctic Weather Station of World War II*, W. Barr (trans. and ed.), Calgary AB and Boulder CO, University of Calgary Press, University of Colorado Press, with the Arctic Institute of North America.
- Emmerson, C. (2010) *The Future History of the Arctic*, New York, Public Affairs.
- Eriksson, S. (2006) ‘Åland -A demilitarised and neutralised territory’, in S. Eriksson, L.I. Johansson, & B. Sundback (eds.) *Islands of Peace: Åland’s Autonomy, Demilitarization, and Neutralization*, Mariehamn, Åland Islands Peace Institute, pp. 9-35.
- Exner-Pirot, H. (2011) ‘What route for Arctic shipping?’, *Arctic: Views from Up North*, 25 March, <http://eyeontheartic.rcinet.ca/en/blog/136-heather-exner-pirot/793-what-route-for-arcticshipping>
- Fife, R.E. (2008) ‘Svalbard and the surrounding maritime areas: Background and legal issues’,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6 November,

- www.regjeringen.no/en/dep/ud/selectedtopics/civil--rights/spesiell-folkerett/folkerettslige-sporsmal-i-tilknytning-ti.html?id=537481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www.regjeringen.no/en/dep/jd/Documents-and-publications/Reports-to-the-Storting-White-Papers/Reports-to-the-Storting/19992000/report-no-9-to-the-storting-.html?id=456868
 Government of Norway (2001) *Ot.prp. Nr. 58 (2000-2001): Lov om endringer til svalbardlovenmm. (innf ring av lokaldemokrati i Longyearbyen)*,
www.regjeringen.no/nb/dep/jd/dok/regpubl/otprp/20002001/otprp-nr-58-2000-2001-/2.html?id=164762
 Governor of Svalbard (2008) 'Settlements',
www.sysselmannen.no/hovedEnkel.aspx?m=45299
 Grydehoj, A. (2010) 'Uninherited Heritage: Community Reaction to Heritage without Inheritors in Shetland, Aland, and Svalbard',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6, Nos. 1-2, pp. 77-89.
 Grydehoj, A. & P. Hayward (2011) 'Autonomy Initiatives and Quintessential Englishness on the Isle of Wight', *Island Studies Journal*, Vol. 6, No. 2, pp. 179-202.
 Jakobsen, L. (2010)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Jensen, A.M. (2009) 'From Thailand to Svalbard: Migration on the margins', *Asia Portal - In Focus*,
<http://infocus.asiaportal.info/2009/05/25/mayfrom-thailand-svalbard-migration-marginsan-magratt-jensen>
 Jorgensen, J.H. (2004) 'Onsker Norge a presse Russland bort fra Svalbard?', *Aftenposten*, 04 January,
www.aftenposten.no/meninger/kronikker/article701483.ece
 Lüdecke, C. (2011) 'Parallel Precedents for the Antarctic Treaty', in P.A. Berkman, M.A. Lang, D.W.H. Walton, & O.R. Young (eds.) *Science Diplomacy: Antarctica, Science, and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Space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Scholarly Press, pp. 253-263.
 Machowski, J. (1995). 'Scientific Activities on Spitsbergen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Archipelago', *Polish Polar Research*, Vol. 16, Nos. 1-2, pp. 13-35.
 Moczadlowski, T. (2001) *Polska Stacja Polarna: Hornsund*,
<http://hornsund.igf.edu.pl>
 Nilsen, T. (2011) 'Russians must follow Norwegian law', *BarentsObserver.com*, 14 October,
www.barentsobserver.com/-russians-must-follow-norwegian-law.4972044.html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6) *The Norwegian Government's High North Strategy*,
www.regjeringen.no/upload/UD/Vedlegg/strategien.pdf
 Norwegian Polar Institute (2011) 'Svalbard',
www.npolar.no/en/the-arctic/svalbard
 Numminen, L. (2011) 'A History and Functioning of the Spitsbergen Treaty' In D. Wallis and S. Arnold (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Helsinki, Arctic

Papers, Vol. 1, pp. 7-20.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1933) Fascicule No. 53: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Leiden, The Netherlands, A.J. Sijthoff.

Scotcher, N. (2011) 'The Sovereignty Dilemma', D. Wallis and S. Arnold (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Helsinki, Arctic Papers, Vol. 1, pp. 21-33.

Statistics Norway (2011a) 'Accommodation on Svalbard, July 2011',
www.ssb.no/english/subjects/10/11/overnattingsv_en

Statistics Norway (2011b) 'Population Statistics. Svalbard', www.ssb.no/befsvvalbard_en

Statistics Norway (2011c) 'Svalbard's History', www.ssb.no/this_is_Svalbard

Statistics Norway (2011d) 'Industrial Statistics for Svalbard 2010',
www.ssb.no/english/subjects/10/sts_en

Store Norske (201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
www.snsk.no/annual-report-andaccounts.148181.en.html

Store Norske (2010) 'Important Dates in Store Norske's History',
www.snsk.no/important-datesin-store-norskeshistory.145749.en.html

Støre, J.G. (2010) 'Arktis norsk politikk og internasjonalt samarbeid', Speech given at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Beijing, 30 August,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regjeringen.no/nb/dep/ud/aktuelt/taler_artikler/utenriksministeren/2010/ciis_beijing.html?id=613162

The Svalbard Treaty 9 February 1920, Available at University of Oslo, Faculty of Law,
www.jus.uio.no/english/services/library/treaties/01/1-11/svalbard

Terrapolaris (2010) 'Pyramiden - Settlement, Accommodation, Travel',
www.terrapolaris.com/index.php?id=338&L=5

Tobias, B. (2006) 'Cold War Haunts Arctic Outpost', BBCRussian.com,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6204427.stm>

Umbreit, A. (2009) *Spitsbergen*, Bucks UK, Bradt Travel Guides.

Webb, M. (1992) 'Arctic Saga: Vilhjalmur Stefansson's Attempt to Colonize Wrangel Island',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61, No. 2, pp. 215-239.

Ween, S.O. (2011) 'Longyearbyen lokalstyre',
www.lokalstyre.no/Modules/theme.aspx?ObjectType=Article&ElementID=630&Category.ID=707

Wråkberg, U. (2002) 'The Politics of Naming: Contested Observations and the Shaping of Geographical Knowledge', in M. Bravo and S. Sèorlin (eds.), *Narrating the Arctic: A Cultural History of Nordic Scientific Practices*, Canton MA, Watson, pp. 155-198.

Østhagen, A. (2011) 'Debating the EU's Role in the Arctic: A Report from Brussels', The Arctic Institute, Centre for Circumpolar Security Studies,
www.thearcticinstitute.org/2011/10/2472-european-arctic-ambiguity.html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지역 소수민족 정책 (소수민족의 언어보유 실태를 중심으로)¹⁾

계용택

I. 서론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적인 학자들은 토착소수민족을 사회적인 현상 및 학술적인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까지 토착 소수민족을 온정주의적 및 근대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세계적인 사회발전에서 볼 때 이들 민족들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매우 과소평가 하였다. 러시아 및 국제사회는 정치적 및 경제적, 문화 확산에서 이들 토착 소수민족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였다.



이들 민족들은 생활 및 노동 환경개선 진전 및 문명의 혜택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필요했다. 세계적인 산업문명문화, 학술-기술 진보에 따른 생태학적 예후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은 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가져오는 세계화 과정이 증대된다. 그러나 이것 토착 소수민족 생활양식 및 거주지 자연환경에 대한 대규모 파괴를 불러 일으켜 토착 소수민족의 독특한 자생적 문화는 완전한 소멸의 위험아래 놓여있게 한다.

20-21세기 경계에서 세계에서의 민주화 프로세스의 확장 환경에서, 문화 자결 및 자신의 역사적 운명을 선택하려는 권리평등인식의 사회적 의미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근본적으로 학문

1) 본 원고는 2017년 11월 11일 한국노어노문학회/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의 추계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로 최종결과물이 아니오니 인용을 금합니다.

적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북방지역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몇몇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1) 이 지역에서의 토착 소수민족의 높은 집중(밀도)을 들 수 있다.

2) 북극해의 거대한 지하자원 개발 및 급속한 산업적 이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토착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 역사-문화 및 민족학적 탐색을 통한 문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러시아 연방은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된 후 공식적으로 소련을 계승한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는 사회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의 토착소수민족은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주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인들과의 문화접촉과 통합은 토착소수민족들에게 집단화, 유목생활 반대, 전통문화와 생업의 파괴와 함께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 및 정치체도로 강제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문화적 충격과 억압을 가져왔다.

러시아연방에서 다민족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어제만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일이 동시에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비에트정부는 다민족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매체로 러시아인의 역사와 언어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수민족의 언어, 종교, 민속, 문화 등이 변모, 축소 또는 소멸의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질적인 문화나 문명이 접하거나 교차하는 곳에서는 문화의 갈등과 충돌 뿐 아니라, 문화의 보완이나 상호작용 등이 발생하였다.

본 글은 영토와 자원개발, 생태와 기후문제로 인해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지역 소수민족의 언어 실태와 보존여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의 인구의 증감 및 언어적 동화 및 절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인구조사에 나타난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 인구변화, 자신의 민족어 보유비율, 자신의 민족어 및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간주하는 비율, 자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 등의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II.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의 역사와 언어

1920년대 중반 러시아 북부지역 및 시베리아, 극동 민족들은, 그 당시 정권의 의견에 따르면, 친족관계의 붕괴수준에 있고 문화후진성의 빠른 극복이 요구되고 있었다. 소련은 토착 소수민족의 문화통합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 1924년에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에서 북방 민족 협력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여기서 사회-경제적 발전 가속화 및 소련 문화센터와 토착 민족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과제를 담당했다. 소련에서 이미 1931년에 북부지역 민족들을 위한 단일 알파벳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1932년에 북방민족들의 언어 및 문자 발전을 위한 전러시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서 북방민족들을 위한 새로운 알파벳 위원회가 형성 되었다. 1930년대에는 북방 민족들의 언어로

쓰여진 최초의 초보용 독본이 출간 되었다²⁾



1925년부터 레닌그라드 국립 대학교에 북방 학부가 개설되었고 1930년부터는 독립적인 북방민족 연구소가 출범하였다. 토착 북방민족을 위한 국가 및 문화건설 영역에서 중급 및 고급 요원 교육이 시작되었다.

북방 민족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요원 양성을 위해 1929년 및 1930년에 게르첸 기념 레닌그라드 국립사범대학교 (현재의 게르첸 기념 러시아 국립 교육대학교)에서 북방민족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수년에 걸쳐 최북단 민족학과 및 북방민족들의 지부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북방민족 학과는 북방민족 연구소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북방민족들의 언어는 공립학교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토착 소수민족의 언어들은 발전하기 시작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신문 등을 통하여 민족어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들 민족들의 언어가 교육영역에서 뿌리를 내림에 따라 2가지의 예후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 1) 토착민족의 언어 부활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함.
- 2) 정보공간 및 문화적 건문의 확장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또한 이것은 민족 간 문화통합 프로세스를 가속하게 되었고 고전적 유형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식획득의 프로세스는 실질적인 생활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III. 러시아 연방의 민족정책

2) Шапаров А. Е., “Этно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Арктике: основные подходы и принципы”,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2015. № 21. с. 61

러시아연방 시민법 13조에 따르면 “구소련 시민권자로서 시민법이 발효하는 시점(1991. 11. 28)에 러시아연방 영토에 영구 거주하는 모든 자는 러시아의 시민으로 인정된다. 단, 금후 1년 안에 러시아연방 시민권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구소련시민으로서 러시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민권과 관련된 소수민족 보호의 토대는 갖추어진 셈이다.

1996년 5월 22일 러시아연방 의회는 「민족문화 자치단체에 대한 연방법」을 채택하였다. 만일 국제조약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담고 있을 경우 국제조약이 적용된다.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는 러시아연방 시민의 사회적 결사체로서(제1조), 민족영토 자결권과는 무관하다(제4조).

동법률 제3장(제8조~제12조)은 민족 언어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사용에 대한 보호 및 정부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민족 언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러시아연방시민은 언어의 보존, 발전 및 사용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제8조).

제12조에 따르면 “민족문화 자치단체의 제안에 따라 정부 교육기관은 민족 고유언어와 러시아어를 통해 민족 역사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제4장(제13조~제15조)은 소수민족 문화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국제적 권리 및 국제조약의 규범에 따라 토착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에 대한 세부법안은 1999년이 되어서야 마련되었다. 1999년 4월 16일 러시아연방 의회는 「러시아연방의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안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상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조상 대대로 거주하면서 전통적인 농업·공업·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총인구 5만 이하의 소수 토착민족>이다.

제5조와 6조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토착 소수 민족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발전, 이들 언어의 발전, 보존 및 부활, 그리고 토착 생활터전 및 전통적 생활양식, 그리고 토지 및 기타 자연 자원의 경영과 사용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권리가 토착 소수민족 관련 정부 조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밖에 이들 민족은 토착 영토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권리, 연방 및 지역정부로부터 물질적·재정적 도움을 받을 권리, 미성년자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권리, 무상 의료 및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69조와 관련법에 의해 러시아연방 내에 거주하는 토착소수민족들의 기본권 및 생존권은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위시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IV.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의 인구학적 변화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의 분석단위를 인구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1만명 미만, 1만명 이상의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2002년 기준 인구 1천명 이하의 민족그룹에는 알레우티, 케레키, 느가나산니, 네기달찌, 우

일타, 오로치, 타지, 토팔라리, 첼칸찌, 출림찌, 엔찌 민족등이 있다. 이들 민족들의 2002-2010년 인구변화를 보면 느가나산니, 첼칸찌 민족을 제외하곤 인구수가 감소되었다.

인구 감소의 폭은 적게는 4.2퍼센트에서 많게는 50퍼센트 감소하였으며 민족에 따라 다양한 감속 폭을 나타낸다. 특히 2010년 기준 인구 5백명 이하 민족에는 알레우티, 알류토르찌, 케레키, 우일타, 타지, 출림찌, 엔찌 민족 등이 있는데 이들 민족은 1989-2010년 사이에 약간의 인구의 증감은 있으나 언제라도 민족소멸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2년 기준 인구 1만명 이상의 민족그룹에는 만시, 나나이찌, 넨찌, 한티, 축치, 쇼르찌, 에벤끼, 에베니 민족 등이 있다. 2002-2010년 인구변화를 보면 만시 7.3퍼센트 증가, 나나이찌 1.3퍼센트 감소, 넨찌 8.1퍼센트 증가, 한티 7.9퍼센트 증가, 축치 0.9퍼센트 증가, 쇼르찌 7.8퍼센트 감소, 에벤끼 8.1퍼센트 증가, 에베니 14.5퍼센트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 1만명 이상의 민족들은 쇼르찌 민족을 제외하고 1퍼센트에서 14.5퍼센트의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의 인구변화 특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극소수 민족은 전체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든지 인구감소로 인한 민족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천명-1만명의 중급규모의 인구수를 가진 민족들은 민족마다 다양한 인구특성을 보여 주는데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민족수가 많은 편이다.

1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구를 가진 민족은 일부를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 인구변화 ³⁾							
민족명/연도(인구)	인구수(명)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1989년	2002년	2010년	1989-2002년	2002-2010년	1989-2002년	2002-2010년
알레우티	644	540	482	-16,1	-10,7	-1,3	-1,4
알류토르찌	...	(12)	0	□
벵시	12142	8240	5936	-32,1	-28,0	-2,8	-4,0
돌간니	6571	7261	7885	10,5	8,6	0,7	1,0
이텔리멘니	2429	3180	3193	30,9	0,4	2,0	0,1
캄차달리	...	2293	1927	...	-16,0	...	-2,2
케레키	□	8	4	...	-50,0	...	-8,3
케티	1084	1494	1219	37,8	-18,4	2,4	-2,5
카락키	8942	8743	7953	-2,2	-9,0	-0,2	-1,2
쿠만딘찌	...	3114	2892	...	-7,1	...	-0,9
만시	8266	11432	12269	38,3	7,3	2,4	0,9
나나이찌	11883	12160	12003	2,3	-1,3	0,2	-0,2
느가나산니	1262	834	862	-33,9	3,4	-3,0	0,4
네기달찌	587	567	513	-3,4	-9,5	-0,3	-1,2
넨찌	34190	41302	44640	20,8	8,1	1,4	1,0
니브히	4631	5162	4652	11,5	-9,9	0,8	-1,3
우일타	179	346	295	93,3	-14,7	4,9	-2,0
오로치	883	686	596	-22,3	-13,1	-1,8	-1,7
사미	1835	1991	1771	8,5	-11,0	0,6	-1,5
셀쿠피	3564	4249	3649	19,2	-14,1	1,3	-1,9

소이오티	...	2769	3608	...	30,3	...	3,4
텔렌기티	...	2399	3712	...	54,7	...	-0,1
타지	...	276	274	...	-0,7	...	5,6
텔레우티	...	2650	2643	...	-0,3	...	0,0
토팔라리	722	837	762	15,9	-9,0	1,1	-1,2
투발라비	...	1565	1965	...	25,6	...	2,9
투빈찌-토드권찌	...	4442	1858	...	-58,2	...	-10,3
우데게이찌	1902	1657	1496	-12,9	-9,7	-1,0	-1,3
울리치	3173	2913	2765	-8,2	-5,1	-0,6	-0,6
한티	22283	28678	30943	28,7	7,9	1,9	1,0
첼칸찌	...	855	1181	...	38,1	...	4,1
추반찌	1384	1087	1002	-21,5	-7,8	-1,7	-1,0
축치	15107	15767	15908	4,4	0,9	0,3	0,1
출림찌	...	656	355	...	-45,9	...	-7,4
쇼르찌	15745	13975	12888	-11,2	-7,8	-0,9	-1,0
에벤키	29901	35527	38396	18,8	8,1	1,3	1,0
에베니	17055	19071	21830	11,8	14,5	0,8	1,7
엔찌	198	237	227	19,7	-4,2	1,3	-0,5
에스키모	1704	1750	1738	2,7	-0,7	0,2	-0,1
유카기리	1112	1509	1603	35,7	6,2	2,2	0,8
□전체	209378	252222	257895

V.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의 언어보유 실태

한 지역에서 두 언어가 서로 부딪치게 되면 두 언어 사이에서 우위 경쟁이 발생되게 된다. 두 언어의 경쟁과정에서 하나의 언어는 남거나 사라질 수 있고, 아니면 두 언어가 서로 공존할 수도 있다.

1)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어떤 공동체 사회의 언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면 이를 '언어의 보존'이라고 함. 2) 그 공동체의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언어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3) 언어의 전환이후 이전에 사용되던 언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면 이를 '언어의 절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언어의 절멸 현상은 역사성의 관점에서 생성, 변화 및 절멸의 과정을 되풀이 한다. 언어 절멸의 원인으로 해당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전쟁, 질병 및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해당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멸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밖에 다른 언어 절멸의 원인은 인구 소멸과는 상관없이 언어가 사라지는 경우로 언어의 동화현상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즉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의 언어, 문화과정을 흡수 및 피지배집단이 지배집단에 문화적 종속 및 동화되는 과정에서 피지배 집단의 언어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피지배 집단은 지배집

3) Центр содействия коренным малочисленным народам Севера / Учебный центр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Севера (ЦК МНМС / РИТЦ (<http://www.csipn.ru/glavnaya/actual/1204-poslednie-dannye-o-chislennosti-narodov-severa#.WeWW2BZrzUA>)

단의 학교, 정부 당국, 법정에서 지배집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모국어는 무시당하게 된다.⁴⁾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은 러시아화 과정에서 러시아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모국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언어	라틴문자	키릴문자	특성
만시어(우랄어)	1932년 제정 단일북방문자기반	1936/37년 전환	80년대 초 장모음 보조기호 도입 (가장 성공적인 표기체 개혁)
한티어(우랄어)	한티어(우랄어) 1932/33 년 제정 단일북방문자기반	1936/37년 전환	카즈임 방언에 기반을 둠
사암어(우랄어)	1932/33년 제정 단일북방문자기반	1982년 전환	현재 두 표기체 변이형 존재
네네쯔어(우랄어)	1932/33년 제정 단일북방문자에 기반	1936/37년 전환	북방 민족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셀쿠프어(우랄어)	1932/33년 전환 단일북방문자기반	1937년 전환	50년대 표기체 기능 정지, 80년 대에 타조프 방언을 기반으로 새 롭게 창제
에벤키어(통구스-만 주어)	1930년 문자시안 공표, 1932/33년 제정 단일북방문자기반	1936/37년 전환	수적으로 2위, 확고한 표준어
에벤어(통구스-만주 어)	1932년 전환 단일북방문자기반	1936/37년 전환	1980년대 에벤어사용자들이 거주 지역별로 표기체 개혁 시도
나나이어(통구스-만 주어)	1932/33년 전환(1928년 단 일북방문자의 전형이 됨, 러시아와 라틴 문자의 글 자를 이용한 문자)	1936년	
울츠어(통구스-만주 어)		1980년대 중반 창제	
우데게이어(통구스- 만주어)	1932년 창제 단일북방문자 기반	1980년대 중반 창제	두 개의 표기체 시안
추코트어(고아시아 어)	1932/33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37년	20년대 러시아와 라틴문자를 혼 용한 문자창제 전설을 가짐
코랴크어(고아시아 어)	1932/33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37년	40년대 말 몇몇 글자를 보충
이텔멘어(고아시아 어)	1932/33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소의 불일치
에스키모어(고아시아 어)	1932/33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37년	장모음 글자 부족
알류트어(고아시아 어)	1932/33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80년대	90년대 초 알류트어 학습사전 출간
니브호어(고아시아 어)	1932/33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50년대	1931/32년 니브호어 아무르 방언 표기체를 최초 창제
유카기르어(고아시아 어)		1987년	19세기 말-20세기 초 독자적인 상형 표기체 토스(Toc)를 창제
케트어(고아시아어)	1934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80년대 말	초등학교에서 교육

4) Swaan, De Abram. "Endangered language, sociolinguistic, and linguistic sentimentalism," European Review, Vol. 12, No. 4, (2004), p.569.

케트어(고아시아어)	1934년 창제 단일북방문자기반	1980년대 말	초등학교에서 교육
돌간어(투르크어)		1970년대 말	야쿠트어 문자와 유사
토팔라르(투르크어)		1989년	1990년 언어 교육 시작
쇼르어(투르크어)	1931년	1938년	1929년까지 선교사가 창제한 키릴 문자 사용

소련시기 ‘북방 제 민족 신 문자 위원회’(Комитет нового алфавит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가 창설되고 북방민족을 위한 단일 문자가 제정되었다. 이 문자를 기반으로 13개 언어의 표기체가 만들어졌고 동방 민족을 위해 40개의 표기체가 창제되었다. 이에 따라 1923~1939년에 (표기체를 가진 소련의 72개 언어 중) 50개 언어가 라틴으로 전환했고 이미 정교회 선교사들이 만들어 준 키릴문자에 기반을 둔 문자가 있었던 야쿠트어와 코미어도 라틴으로 전환했다⁶⁾.

결국, 1930년대 말 소련 대부분의 언어가 라틴으로 전환되었는데, 이텔만어(Ительменский), 케트어(Кетский), 코랴크어(Корякский), 만시어(Мансийский), 나나이어(Нанайский), 네네쯔어(Ненецкий), 사암어(Саамский), 셀쿠프어(Селькупский), 우데게이어(Удэгейский), 우딘어(Удинский), , 한티어(Хантыйский), 추코트어(Чукотский), 에벤키어(Эвенкийский), 에벤어(Эвенский), 에스키모어(Эскимосский).등의 러시아 북방 민족들의 언어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1935년 ‘북방 제민족의 키릴 전환 법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ереводе на кириллицу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езидиума ЦИК СССР от 1 июня 1935 года)에 의해 러시아 북방 제 민족 언어 표기체의 키릴 전환이 시작되어 1937년에는 러시아 북방 제 민족의 문자가 키릴로 전환되었다.

러시아 북방 소수민족언어 문자가 라틴문자에서 키릴문자로의 전환되면서 민족언어의 고유성을 상실하게 되고 러시아어로의 언어수단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언어환경의 구조적 종속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민족어 절멸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러시아 연방은 다민족 국가로서 언어에 관한 정책의 기본 구상을 헌법은 물론 법률로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1) 제26조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또한 “모든 개인은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의사소통,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2) 68조 1항에서는 “러시아 연방 전 영토 내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다”, 2항에서는 “공화국들은 자신들의 국어를 만들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 당국의 제 기관들, 지방 자치 기관들, 정부 공공시설들에서 공화국 언어들은 러

5) 정경택.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슬라브연구』. 28권 4호. 2012. p. 43
 6)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슬라브연구』. 28권 4호. 2012.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슬라브연구』. 28권 4호. 2012. p. 41
 7) https://ko.wikisource.org/wiki/%EB%9F%AC%EC%8B%9C%EC%95%84_%EC%97%B0%EB%B0%A9_%ED%97%8C%EB%B2%95 위키문헌 대한민국 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아 연방 국어와 함께 사용된다.

3) 3항에서는 “러시아 연방은 연방의 모든 국민들에게 모국어를 유지하고 그것을 연구하며 발전시킬 조건을 만들 권한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러시아 헌법 69조는 <러시아 연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 및 규범과 러시아 연방의 국제 협약에 따라서 토착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들은 러시아 정부의 민족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정부는 민족들의 제 언어들을 비롯하여 이중 언어 및 다중 언어 상황을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1989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 토착소수 민족에서 절반가량만이 자신의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2010년 러시아연방 인구조사에 따르면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 토착소수민족에서 자신의 민족어를 말할 수 있는 비율을 22.7퍼센트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어를 자신의 민족과 동일시하는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52.8퍼센트에서 35.2퍼센트로 줄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북방 토착소수민족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러시아어로 간주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 하였는데 (1989년 22.7퍼센트에서 20110년 52.8퍼센트로), 이는 러시아어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토착 소수민족들의 언어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민족이 거주하는 거대민족 명목공화국의 언어에 의한 동화로 토착소수민족의 민족어에 대한 지식상실은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민족정체성은 러시아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사회적인 부적응을 불러오고, 내부갈등을 초래한다. 즉 토착소수민족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 등 모든 세대에 걸쳐 존재의 의미상실, 삶에서의 불행한 느낌, 음주벽, 자살, 동기가 없는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중 민족어 보유비율, 감소비율 (1989년, 2010년, 단위 퍼센트) ⁸⁾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 및 언어	1989년 민족어 보유비율	2010년 민족어 보유비율	감소비율
누나산니(누나산어)	85.2	10.8	87.3
돌간(돌간어)	83.3	11.8	85.8
넨찌(네네찌어)	78.7	44.0	44.0
축치(추코트어)	73.8	28.7	61.1
한티(한티어)	62.6	28.6	54.3
코랉키(코랉어)	57.8	18.4	68.1
쇼르찌(쇼르어)	56.7	20.4	64.0
에스키모(에스키모어)	54.9	26.2	52.2
케티(케티어)	53.9	16.3	69.7
엔찌(에네찌어)	52.6	15.9	69.7
벵시(벵시어)	50.8	39.8	21.6
셀쿠피(셀쿠피어)	50.3	25.9	48.5
나나이찌(나나이어)	49.3	6.6	86.6
사미(사미어)	49.2	16.9	65.6
오로키(우일리타)(오로크어)	46.8	3.4	92.7

에벤니(에벤어)	46.1	25.8	44.0
토팔라리(토팔)(토팔라르어)	44.9	11.4	74.6
만시(만시어)	40.0	6.8	83.0
유카기리(유가기르어)	36.5	19.4	46.8
올리치(올리치어)	35.1	5.1	85.4
우테게이찌(우테게이어)	33.1	5.5	83.3
네기달리찌(네기달어)	33.0	3.7	88.8
에벤키(에벤키어)	33.0	11.4	65.4
알레우티(알레우티어)	30.8	3.9	87.3
니브히(니브히어)	26.0	3.9	85.0
추반찌(추반어)	25.2	0.0	100
이텔멘(이텔어)	24.0	1.8	92.5
오로치(오로치어)	21.5	0.5	97.6
전체	49.8	22.7	54.4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10년간 지속된다면 북방 토착소수민족 언어의 절반은 사라질 수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 북방,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의 언어보존 및 기능유지 상태는 재난상태라 말할 수 있다.

현재 북방 토착소수민족 언어 중 6개는 사실상 사멸화된 상태이다, 여기에는 알류토르, 캄찰, 소이오티, 타즈스, 텔렌기즈, 추반 언어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랴티아 공화국에서 거의 모든 소이오티 종족은 부랴트어를 사용한다. 최근의 인구조사와 사회연구에 따르면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들의 모국어에 대한 지식은 아이들이나 젊은층은 물론 장년층까지 자신들의 선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의 가족 간에도 민족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교육시스템이 토착소수민족 언어 지식에 대한 유일한 재생산 도구로 실질적인 언어지원 수단이다. 2012-2013년 학습연도에 러시아 교육학술부 사회연구 센터에 의해 진행된 러시아 교육 시스템에서의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언어활용 모니터링은 2가지 근본적인 좋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 러시아연방 교육기관들의 일반적인 교육에서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모국어 교육의 중단사례를 들 수 있다 (1980년 러시아연방 저학년에서 네네즈 및 에벤족 교육에 모국어를 사용하였다.)

2) 둘째로 교과목으로 모국어를 공부하는, 또한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반교육시설의 숫자가 줄고,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가족에서 학생숫자 감소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2001-2002 학년도에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언어 교과목을 284개 학교에서 20,406 명의 어린이에게 가르쳤고, 2012-2013 학년도에는 단지 215개 학교에서 14,115 명의 어린이들에 가르쳤다. 동시에 최근 10년간 교과목으로 모국어를 배우는 북방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학생 비율은 48.5퍼센트에서 41.5퍼센트까지 줄어들었다.

8)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중 자신의 민족어 보유비율(1989년, 2010년, 단위 퍼센트) (전소련 1989년 인구조사, 전러시아 2010년 인구조사) Составлено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1989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СССР. М., 1991) 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2010 года (Том 4.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владение языками, гражданство).

더욱이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언어들에 대한 교과목은 과외 시간으로 평균적으로 1주일에 1시간 배우는 선택과목 또는 씨클활동 과목으로 변경되어 갔다. 2001-2002 학년도에 선택과목으로 북방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1,376명이었으며 2012-201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863명 이었다. 현재 러시아연방 학교들에서 북방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소수민족 언어 40개중 23개 언어만이 교육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에서 자신의 민족어 보유비율은 1989년에서 2010년으로 오면서 전체 평균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959년에 민족어 보유비율이 40퍼센트 이하 민족가운데 울리치(울리치어), 우데게이찌(우데게이어), 네기달리찌(네기달어), 알레우티(알레우티어), 니브히(니브히어), 추반찌(추반어), 이텔멘(이텔어), 오로치(오로치어) 민족은 2010년 조사에서 0퍼센트에서 5.5퍼센트의 민족어 보유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 1959년에 민족어 보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민족인 느가나산니(느가나산어), 돌간(돌간어), 넨찌(넨찌어), 축치(축치어), 한티(한티어), 코락키(코락어), 쇼르찌(쇼르어), 에스키모(에스키모어), 케티(케티어), 엔찌(엔찌어), 뱁시(뱁시어), 셀쿠피(셀쿠피어) 민족들에서 넨찌(넨찌어), 뱁시(뱁시어) 민족을 제외하고 모두 민족어 보유비율이 30퍼센트 이하로 줄어들었다.

2) 1989년에서 2010년까지 민족어 보유비율이 현저히 감소한(80퍼센트 이상) 민족으로는 느가나산니(느가나산어), 돌간(돌간어), 나나이찌(나나이어), 오로키(우일리타)(오로키어), 만시(만시어), 울리치(울리치어), 우데게이찌(우데게이어), 네기달리찌(네기달어), 알레우티(알레우티어), 니브히(니브히어), 추반찌(추반어), 이텔멘(이텔어), 오로치(오로치어) 민족 등이 있으며 이들 민족은 언어 절멸의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들에서 자신의 민족어 및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간주하는 비율(1989년, 2010년, 단위 퍼센트) ⁹⁾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 및 언어	1989년 인구조사		2010년 인구조사	
	자신의 민족어	러시아어	자신의 민족어	러시아어
알레우티(알레우티어)	26.6	69.4	3.3	96.7
뱁시(뱁시어)	51.3	48.5	27.6	72.0
돌간(돌간어)	81.7	15.9	60.9	15.5
이텔멘(이텔어)	19.6	79.2	2.9	96.8
케티(케티어)	48.3	49.6	18.9	79.9
코락키(코락어)	52.4	46.4	25.1	71.5
만시(만시어)	37.1	62.0	9.7	85.0
나나이찌(나나이어)	44.1	55.3	18.7	80.8
느가나산니(느가산어)	83.2	15.5	65.3	27.6
네기달리찌(네기달어)	28.3	67.7	17.2	82.3
넨찌(넨찌어)	77.1	18.1	73.1	24.1
니브히(니브히어)	23.3	76.0	7.8	91.0
오로키(우일리타)(오로키어)	44.7	54.2	5.4	92.5
오로치(오로치어)	18.8	79.5	0.3	97.1
사미(사미어)	42.2	56.5	16.7	82.7

셀쿠피(셀쿠프어)	47.6	50.6	37.1	60.5
토팔라리(토파)(토팔라르어)	43.0	55.3	4.2	94.9
우데게이찌(우데게이어)	26.3	65.7	11.6	87.6
울리치	30.8	66.2	7.8	91.6
한티(한티어)	60.5	38.8	36.3	62.5
추반찌(추반어)	21.4	68.8	0.0	92.9
축치(추코트어)	70.3	28.3	47.0	51.8
쇼르찌(쇼르어)	57.5	41.6	34.6	64.1
에벤키(에벤키어)	30.4	28.5	15.0	37.2
에벤니(에벤어)	43.9	27.5	24.7	30.1
엔찌(에네찌어)	45.5	38.3	44.9	48.9
에스키모(에스키모어)	51.6	45.8	39.2	59.8
유카기리(유가기르어)	32.8	45.6	23.2	51.2
전체	52.8	22.7	35.2	51.4

특히 민족어 보유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인 알레우티(알레우티어), 이텔멘(이텔어), 만시(만시어), 나나이찌(나나이어), 네기달리찌(네기달어), 니브히(니브히어), 오로키(우일리타)(오로크어), 오로치(오로치어), 우데게이찌(우데게이어), 울리치(울리치어), 추반찌(추반어) 민족은 자신의 민족어가 이미 절멸되었거나 절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 들은 1989-2010년 언어보유 조사에서 자신의 민족어를 상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민족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간주하는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중 넨찌(네네찌어) 및 엔찌(에네찌어) 민족만이 각각 77.1퍼센트에서 73.1퍼센트로, 45.5퍼센트에서 44.9퍼센트로, 자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비율이 매우 적게 줄어들어 자신의 민족어를 유지해왔다.

2010년 자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간주하는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의 민족으로 돌간(돌간어), 넨찌(네네찌어), 느가나산니(느가나산어), 축치(추코트어), 엔찌(에네찌어) 등이 있다.

자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간주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인 민족들로는 알레우티(알레우티어), 이텔멘(이텔어), 만시(만시어), 니브히(니브히어), 오로키(우일리타)(오로크어), 오로치(오로치어), 토팔라리(토파)(토팔라르어), 울리치, 추반찌(추반어) 민족 등이 있다. 이들 민족들은 자신의 민족어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 중 학교에서 1991/1992 ~ 2012/2013 학년도 자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2000 ~ 2003년도까지 민족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돌간어, 이텔멘어, 케트어, 카락어, 만시어, 셀쿠프어, 에스키모어는 60퍼센트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느가나산어, 네기달어, 오로크어, 싸미어, 소이오츠어, 토팔라르어, 우데게이어, 울리치어, 에네찌어는 배우는 학생숫자거 아예 없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

9) 전소련 1989년 인구조사, 전러시아 2010년 인구조사, оставлено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1989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СССР. М., 1991) 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2010 года)

하다. 그밖에 케트어, 니브호어, 싸미어, 우데게이어, 울리치어, 에벤어는 1999/2000학년도 이후 배우는 학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2/2013년도에 학교에서 민족어를 배우는 학생숫자가 100명 미만인 이텔멘어, 케트어, 느가나산어, 니브호어, 오로크(우일타)어, 싸미어, 에네쯔어, 에스키모어, 유카기르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네기달어, 싸미어, 텔레우츠어, 토팔라르어, 우데게이어는 배우는 학생이 한명도 없어 언어절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언어/년도	1991/1992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10/2011	2012/2013	*1)	**2)
뱌시어	69	281	278	273	351	165	196	408.6	-44.1
돌간어	447	897	1019	920	855	708	205	127.9	-79.8
이텔멘어	41	95	131	88	87	34	32	219.5	-75.5
케트어	133	108	82	102	52	15	39		-70.6
카랴어	693	781	712	1070	862	328	248	54.4	-76.8
만시어	303	931	741	1057	776	368	423	248.8	-59.9
나나이어	824	1111	873	943	913	810	732	14.4	-22.3
느가나산어	0	149	137	147	158	0	27	--	--
네기달어	0	29	0	0	16	0	0	--	--
네네쯔어	3855	3819	5202	5484	5316	5088	4825	42.2	-12.0
니브호어	267	238	180	152	200	89	35	--	--
오로크(우일타)어	0	0	0	0	0	13	14	--	--
싸미어	42	25	19	14	18	0	0	--	--
셸쿠프어	134	217	171	213	172	33	77	58.9	-63.8
소이오츠어	0	0	0	0	0	138	167	--	--
텔레우츠어	0	0	0	0	0	48	0	--	--
토팔라르어	55	126	63	40	111	68	0	--	--
투빈어	-	233	210	297	199	306	324	--	--
우데게이어	0	20	16	12	9	7	0	--	--
울리치어	0	174	0	22	15	8	5	--	--
한티어	1926	2332	2379	2526	2702	1697	1616	40.2	-40.1
추코트어	2181	2678	2658	2346	2341	1721	1698	22.7	-36.5
쇼르어	-	359	355	221	323	277	125	--	--
에벤키어	1377	2682	2424	2803	2222	2240	1953	103.5	-30.3
에벤어	1882	1661	974	1328	1795	1158	1180	--	--
에네쯔어	0	0	0	0	0	0	22	--	--
에스키모어	117	166	248	230	275	111	88	135.0	-68
유카기르어	67	119	114	118	121	88	84	80.5	-30.5

10) Составлено по: Образование и культур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92 год. М., 1992, стр. 85-85;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2002 год / Госкомстат. Главный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бработки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М., 2003, стр. 53 (данные за 1991/1992 учебный год);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оссии. М., 2003-2012,

전체	14594	19231	19135	20406	19880	15518	14115	--	--
----	-------	-------	-------	-------	-------	-------	-------	----	----

-회색칸의 숫자는 민족어를 배우는 학생숫자가 가장 많음을 표시

*1) 1991/1992학년도와 가장 많이 배울때 학생숫자와의 증가비율

**2) 가장 많이 배울때 학생숫자와 2012/2013학년도 학생숫자간의 감소비율

VI.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정책들

러시아 북방지역 원주민은 북극지역 7개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28개 지역에 집중되어 살고 있다. 여기에는 네네쯔 자치관구, 추코트 자치관구, 야말로-네네쯔 자치관구, 무르만스크 주가 있다. 그리고 코미공화국, 사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아르한겔스크 주의 일부지역에도 살고 있다. 러시아 북방지역 민족들에는 만시, 축치, 출림찌, 에벤키, 에베니, 엔찌, 에스키모, 유카기리, 케레키, 케티, 코랴키, 느가나사니, 넌찌, 사미, 셸쿠피, 한티, 추반찌 등이 있다.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들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¹⁾

1) 러시아 연방 국가 프로그램들은 국가프로그램 및 정부 주체간 예산이전에 의한 보조금 지급으로 북방 토착소수민족 및 러시아 민족 간의 통합 강화를 지원한다.

2) 러시아 연방주체들의 정부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영리단체들의 사회활동 지원 및 북방 토착 소수민족의 공동체 지원, 북방 토착 소수민족들의 사회-경제적 및 인종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실현하고 있다.

3) 북극지역 원주민 소수민족에 대한 연방예산 제공에 의한 토착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현한다. 즉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 및 토착소수민족들의 마울에 물자-기술적 기반을 조성한다. 그밖에 문화부분 개발, 토착소수민족의 교육접근성 등을 제공한다.

<연방 민족업무 협회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명령 (2015년 3월 31일 № 168)에 따라 설립된 러시아 민족문제 연방협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국가 민족정책의 입안의 실현, 러시아연방 다민족 국민들의 통합강화를 위한 대책을 실현한다. 또한 러시아 민족들의 민족간 일치, 민족문화의 발전, 토착소수민족 민족 및 소수민족집단의 권리 보호, 민족문화 자치권 및 카자흐민족 사회, 시민사회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 민족 간 관계영역에서 국가 및 연방 목적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현에 힘쓴다.

그리고 국가 민족정책의 실현에 대한 감독, 민족 간 및 종교간 관계영역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실시한다. 그밖에 인종, 민족, 종교, 언어적 속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의 방지하고 인종, 민족, 종교, 증오, 적의 등을 수반하는 선동적인 시도를 예방한다.

북극발전 문제를 풀기위해 북극발전 문제에 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а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ведениям регион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образованием (данные за 1997/1998-2012/2013 учебные годы)

11) <http://arctic-conference.com/wp-content/uploads/2016/07/Mezjenko.pdf>,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уклада жизн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я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йской фрктике, А.А. Меженько 18 июня 2016 год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과제로는 <국가안보 제공> <사회-경제적 발전> <교육 및 과학의 발전> <교통인프라 발전> <에너지 발전> <산업 및 기술 발전> <북극지대에 살고 있는 토착 소수민족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실현> <생태학전 안전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보장> <국제협력> 등이 있다.

러시아 연방은 북극대 발전문제 담당 국가위원회와 러시아 민족문제 연방협회를 설립했다. 북극지역의 독특한 민족과 그들의 전통제도를 보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들의 역사적인 거주양식을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러시아 민족문제 연방협회는 <토착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자원이용 영토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법은 토착 소수민족의 영토설립 및 기능에 대한 문제를, 현지수준 차원뿐만 아니라 연방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 자원이용 영토는 구역이 정해질 것이며, 여기서는 아마도 산업 활동이 제한 될 것이다. 이것은 토착민족들의 전통적인 삶의 형태와 산업 활동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토착소수민족의 문화재, 전통적인 삶의 형태, 원시 거주지 등의 보존으로 사회경제 잠재력 강화에 기초하여 토착 소수민족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마련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까지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연방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 러시아 연방법률 2000년 7월 20일 № 104-Φ3 <러시아 연방 북방, 시베리아 극동 토착 소수민족 공동체 조직관련 일반 원칙들에 관하여>.

2) 러시아 연방법률 2009년 7월 24일 № 209-Φ3 <사냥 및 사냥자원 보존 및 러시아연방에서의 독립적인 입법에 의한 변경에 관하여>

3) 러시아 연방법률 2001년 5월 7일 № 49-Φ3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극동지역 토착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자원이용 영토에 관한>.

4) 러시아 연방법 1999년 4월 30일 № 82-Φ3 <러시아 연방 토착소수민족들에 대한 권리 보장에 관한>.

5) 러시아 연방법 2004년 12월 20일 № 166-Φ3 (개정 2015년 6월 29일) <물고기잡이 및 수산 생물학자원 보존에 관한>.

러시아 지역개발부는 지난 2013년 10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안」¹²⁾ 작성을 완료했다. 해당프로그램은 자원 효율성과 자연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러시아 북극지대의 잠재력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한다는 목표가 있다.

- 1) 북극지대에서 고부가가치 채굴사업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
- 2) 둘째, 러시아의 북극지대에서 글로벌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인프라 시스템과 생활, 환경안보 및 모니터링의 복합안보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 3) 북극지대에서 현지 생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며,
- 4) 북극지대 발전을 위한 법적·조직적·과학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시스템을 개선한

12) Проек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внесен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안」(2013.11.19).

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은 2014-2020년이고, 총 예산은 약 1조 7,930억 루블(약 600억 달러)이며, 그중 연방예산에서 6,233억 루블(약 200억 달러)을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연방정부 기관에서 이를 회람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VII. 결론

세계적인 산업문명문화, 학술-기술 진보와 사회 및 경제적 문화적 통합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토착소수민족들의 생활양식 및 거주지 자연환경에 대한 대규모 파괴를 불러 일으켜 토착소수민족들의 독특한 자생적 문화가 소멸의 위험아래 놓여있게 되었다.

주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인들과의 문화접촉과 통합은 토착소수민족들에게 집단화, 유목 생활 반대, 전통문화와 생업의 파괴를 불러오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 및 정치체도로 강제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문화적 충격과 억압을 가져왔다.

러시아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토착소수민족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발전, 이들 언어의 발전, 보존 및 부활, 그리고 토착 생활터전 및 전통적 생활양식, 그리고 토지 및 기타 자연 자원의 경영과 사용의 보호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 지역 소수민족의 언어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절멸하는 언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현상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 북방-시베리아-극동 토착소수민족 인구변화, 자신의 민족어 보유비율, 자신의 민족어 및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간주하는 비율, 자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 등의 통계를 분석하면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언어절멸의 이유

1) 우선 토착소수민족어의 구조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러시아 북방 소수민족언어의 문자가 라틴문자에서 키릴문자로의 전환은 지배 언어환경 속으로 구조적인 종속을 야기해 민족언어의 독자적인 발전과 고유성을 상실하게 하고, 러시아어로의 언어수단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그밖에 강력한 힘을 가진 러시아 문화의 확대와 산업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반대로 소수민족어의 효율성은 추락하게 된다. 특히 소수민족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 및 직장의 불충분하고 학교에서의 민족어 수업 부재는 언어절멸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토착소수민족 언어마다 러시아어로의 동화경향과 절멸 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1만명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민족들은 어느 정도 민족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극소수인 민족들의 언어는 거의 절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장덕수, “러시아의 언어 분포에 관한 공간적 이해”, 『슬라브연구』 제26권 1호 2010.
- 김귀배, “유네스코의 문화와 언어다양성 보존 노력”,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제17권 제4호, 2007.
- 김민수, 『러시아연방 소수민족 극동편』, 참글, 2012.
- 김용화, “러시아 알타이 지역의 소수민족어 문제 -과거와 현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3집, 2007.
- 남혜현.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어 확산 정책”. 『슬라브연구』. 제27권 2호. 2011.
- 서승현, “러시아 북극권의 절멸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어 -코미어와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권 3호, 2015.
- 엘레나 푸쉬카료바, 이대우 옮김, 『툰드라 네네츠인들의 민요와 민속, 씨네스트』, 2013.
- 유승만.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재”. 『러시아연구』. 18권2호. 2008.
- 이상규,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제17권 제4호, 2007.
- 정경택.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슬라브연구』. 28권 4호. 2012.
- 제성훈·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전략지역심층연구』, 13-08 대외정책경제연구원 2013.
- 최문정, “어원어와 어휘키어에 나타나는 러시아어 차용어”, (경희대학교) 『알타이학보』 제20호
- 한종만, 김정훈, 김태진, 『러시아 우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이해』, 배재대학교 출판부, 2008.
-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ko.wikisource.org/wiki/%EB%9F%AC%EC%8B%9C%EC%95%84_%EC%97%B0%EB%B0%A9_%ED%97%8C%EB%B2%95
- Арефьев А.Л., *Язык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и маркетинга, 2014.
- Сокколова Ф. Х.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АРКТИКИ: КОНЦЕПТ,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КУЛЬТУРЫ”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2013. № 12.
- Шапаров А. Е., “Этно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Арктике: основные подходы и принципы”,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2015. № 21.
- <http://arctic-conference.com/wp-content/uploads/2016/07/Mezjenko.pdf>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уклада жизн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я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 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йской фрктике, А.А. Меженько 18 июня 2016 год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알류산열도의 지역적 특성

한종만

I. 알류산 열도의 주요 항구

1. 더치 하버(Dutch Harbor)항

▶위치:1) 북위 53도 53분 49, 서경 166도 31분 30, 항구 위치: 어넬스카(Unalaska), 항구 당국: 정보 없음, 항구 규모: 소, 항구 형태: Harbor, UN/LOCODE: USUAA

▶개요와 역사

더치 하버 항은 알래스카 알류트 제도 어넬스카(Unalaska)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르도바(Cordova)항으로부터 서 남서쪽 835해저마일, 주노 항의 남서쪽 1,125해저마일 떨어져 있다. 이 항은 미군의 '더치 하버 해군 운용기지와 미어 요새(Dutch Harbor Naval Operating Base and Fort Mears)'와 '국립 역사표지물(National Historic Landmark)'이 있다. 더치 하버 항의 개 잠이 함대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죽음과 같은 포획 다큐 시리즈로 특종의 역할을 담당했다. 2005년 더치 하버 항과 어넬스카(Unalaska) 인구수는 4,350명 정도이다.

수산물 포획 규모 면에서 더치 하버 항은 미국에서 가장 큰 어장이며, 이 지역경제는 전적으로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대학과 공동으로 연료의 대안 파일로트 프로젝트에서 지역 수산가공업은 연간 350만 톤의 어유(fish oil)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어유를 다른 지역으로 선적하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비원주민이 진입하기 이전까지 어넬스카(Unalaska) 섬은 알류트[혹은 언안간(Unangan)]족이 수천 년 동안 정착해왔다. 1759년에 알류트 족은 24개 정착지에서 복합 사회를 형성했었다. 언안간(Unangan)족은 이 섬을 '오운알라카(Ounalahka)'로 명명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지역원주민단체들은 그들의 협력을 위해 이 이름을 수용하고 있다.

1759년 러시아인 스테판 글로토프(Stepan Glotov)와 그의 선원들은 모피거래의 확장을 위해 미래의 더치 하버로 명명될 지역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인들은 더치 하버 항으로 명명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 선박이 러시아인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상륙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763년부터 1766년까지 이 지역 원주민들은 러시아 침입자와 싸웠으며, 그들은 200여명의 상인과 4척의 러시아 선박을 파괴했다.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하여 많은 원주민을 대량 학살했다. 1768년 어넬스카(Unalaska)와 더치 하버 항은 물개 가죽의 거래를 위한 러시아의 무역항으로 변모했다. 최종적으로 러시아/아메리카회사(Russian-American Company)가 이 무역 독

1) "Port of Dutch Harbor,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점권을 행사했다.

1778년에 제임 쿡(James Cook) 선장은 더치 하버 항 근처까지 도달했으며, 사고 방지 피난을 위해 쿡 선장은 항해사 게라심 이즈마일로프(Gerasim Izmailov)를 항구에서 조우했다. 10년 후인 1788년에 스페인 선박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몇 개의 러시아 정착지를 방문했다. 더치 하버 항은 스페인의 최서단 정류지로 생각하면서 어넬스카(Unalaska) 섬을 요구했다. 스페인은 이 섬을 'Puerto de Dona Marie Luisa Teresa'으로 명명했다.

1825년 예수 승천(Holy Ascension)의 러시아 정교회가 더치 하버 항에 건설됐다. 성직자 이반 베니아미노프(Ivan Veniaminov)는 첫 번째로 알류트 문자 체계를 개발했으며, 성경을 알류트 원주민의 도움으로 알류트 어로 번역했다. 1836년부터 1840년까지 불행하게도 알류트 인구는 수두, 홍역, 백일해의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10분의 1로 감소했다. 1840년에 더치 하버 항 지역에 거주하는 알류트 족은 400명 미만이었다.

미국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하면서 어넬스카(Unalaska)와 더치 하버 항은 미국 영토로 편입됐다. 1880년에 감리교회는 병원과 고아원 학교를 개설했다.

20세기 초에 알래스카 골드러시로 인해 많은 선박들이 더치 하버 항으로 진입했다. 북아메리카 상업회사(North American Commercial Company)는 이곳에 석탄 공급 항구를 개설했다. 20세기 초에 이 섬과 더치 하버 항에 전염병이 다시금 발생했다. 1919년에 세계적으로 확산한 스페인 독감 전염병이 이 섬에 상륙하면서 인구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1940년에 미국은 '더치 하버 해군 운용기지(와 미어 요새(Dutch Harbor Naval Operating Base and Fort Mears))'를 건설하면서 더치 하버 항의 요새화를 시작했다. 1942년에 알류트 열도를 일본군이 공격했다. 일본군이 최서단에 위치한 알류트 아투(Attu)섬을 점령한 당시 원주민의 대부분을 체포하면서 그들을 남동 알래스카 억류캠프로 수송했다. 많은 원주민이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20세기 중반 더치 하버 항과 어넬스카(Unalaska)섬은 킹크랩 어업센터로 발전했다. 1978년 더치 하버 항은 미국에서 가장 큰 어업항구로 발전했다. 그러나 1982년 킹 크랩 어족 수는 줄어들면서 이 산업부문은 후퇴했다. 1980년대 중반 경 수산함대는 깊은 침전물 포획을 추구하면서 저인망 어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5년부터 더치 하버 항의 어부들은 디스커버리 채널의 죽음과 같은 포획 다류 프로그램으로 특징화되고 있다.²⁾

▶항구 상거래

항구/부두 분과는 더치 하버 항의 5개 시 소유의 항구시설물의 관리, 운용, 유지, 책임을 갖고 있다. 이 분과는 해상 수색과 조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6명의 전일제 부두 직원, 2명의 오피스 직원, 대표와 부두 매스터를 고용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은 계획, 발전, 해상 관련 자치체 재산 관리를 통해 어넬스카(Unalaska) 커뮤니티의 복지와 성장 촉진을 추구하고 있다. 이 항은 자체지원 조건 하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해상관련 상업, 어업, 안전, 레크레이션, 관광,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계류 정박지와 해상서비스를

2) "Port of Dutch Harbor,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제공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 내 시 소유로 운용되는 해상시설은 미국 해안경비부두(Coast Guard Dock), 어넬스카(Unalaska) 해상센터, 스픛 독(Spitt Dock), 경화물 부두(Light Cargo Dock), 로버트 스토스 국제소규모 보트부두(Robert Storrs International Small Boat Harbor)를 포함하고 있다.

어넬스카 해상센터(UMC: Unalaska Marine Center)와 해안경비부두(Coast Guard Dock)는 길이 12.2미터의 625미터 길이를 가진 부두를 운용하고 있다. UMC는 여객, 화물(컨테이너 포함), 물류창고, 기타 항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호리즌 라인스(Horizon Lines)은 크레인과 UMC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태평양연료(North Pacific Fuel)사는 연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 내 스픛 독(The Spitt Dock)은 731미터의 부두와 단기 및 장기 계류 정박을 위한 몇 개의 정박 계류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계류지는 길이 61미터 상당의 선박 수용과 전력, 식수, 쓰레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의 로버트 스토스 국제 소규모 보트 부두(Robert Storrs International Small Boat Harbor)는 장기 및 일시 정박 계류를 위한 71개의 슬립(slip)을 갖춘 375미터 플로트들을 갖추고 있다.

2000년에 더치 하버 경화물 부두(Light Cargo Dock)는 2개의 부두를 건설했으며, 각각 길이는 15.2미터이다. 경화물 부두(Light Cargo Dock)는 총 103미터 상당의 계류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³⁾

▶ 크루즈와 관광

어넬스카(Unalaska) 시는 약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알래스카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이다. 더치 하버 항은 미국 서부해안과 태평양 국가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 북태평양 해운 루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의 주민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으며, 한때 러시아의 일부였던 미국 도시 중에서 독특한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은 바다부터 산꼭대기의 화산, 여름철에 야생화가 풍부한 그린 벨리, 겨울철에 많은 눈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항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직접 미국의 항구로 개발된 몇 개 항구 중의 하나이다. 더치 하버 항의 방문객은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산책로를 배회할 수 있으며 낚시, 들새 관찰, 베리 채집, 스키, 카약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은 아직까지 미발견된 자연경관은 비행, 페리, 크루즈 선을 통해 모험을 위한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알류트 열도의 기타 섬처럼 더치 하버 항과 어넬스카(Unalaska) 섬은 적절하며 연중 일정한 온도와 많은 강우량을 가진 아북극 해양성 기후대를 갖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은 항상 안개가 존재하며, 여름철 기온은 남동 알래스카보다 더 싸늘한 편이다. 그러나 겨울에서 여름처럼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의 연간 평균기온은 섭씨 3.4도이며,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1도부터 영상 11도로 다양하다. 비오는 날은 연중 250일이며, 미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3) "Port of Dutch Harbor,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알류트 제2차 세계대전 국립역사지역(Aleutian World War II National Historic Area)’은 더치 하버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연중 오픈하고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5월부터 10월 사이이다. 이 지역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공격을 대비하여 더치 하버 항의 방어를 위해 건설한 4개의 요새 중 1개는 남아 있다. 이 지역은 미군이 혹독한 기후 조건 하에서 싸웠으며, 일본군은 1,60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원주민을 억류했다. 1812년 전쟁(프랑스와 미국 간 무역의 간섭을 위해 영국과 미국 간의 전쟁) 이후 알류트 인들은 미국 영토의 침략을 목격했으며, 격렬한 전투를 했다.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 부르고 있다. 1942년에 일본은 어넬스카(Unalaska)와 애머크낙(Amaknak) 섬에 폭격했으며, 미국은 이 지역 방어를 위해 수천 여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일본은 1943년 아투(Attu) 전투까지 아투 섬과 키스카(Kiska) 섬을 점령했다. 미국은 이 전투로 이 섬들을 탈환했다. 일본은 알류트 원주민을 3년 동안 열악한 환경 하에서 포로로 감금했다. 공원 및 방문객 센터는 운알라카(Ounalahka) 원주민단체 소유이며 운용되고 있으며,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더치 하버 해군 운용기지와 미어 요새(Dutch Harbor Naval Operating Base and Fort Mears)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알류트 방어를 위한 유일한 미국의 유일한 군사시설이며, 요새화는 1940년에 건설됐다. 1942년에 일본은 무자비하게 이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43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 군사기지는 해군 비행장의 방어로 설립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1943년에 비행장, 잠수함 기지, 선박 수선 시설, 식량공급 시설물 등을 갖추고 있다. 5,600명의 해군과 1만 여명의 육군이 근무했다. 1942년 일본군의 폭격으로 5개의 빌딩이 파괴됐으며, 방송국이 훼손됐다. 또한 25명의 미국인 사망, 25명 부상당했다. 또 다른 일본군의 폭격으로 인해 추가로 건물 파괴, 43명 사망했다. 더치 하버 항 해군 운영기지는 벨리후 산(Mount Ballyhoo)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지 시설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해군 활주로는 현재 상업 공항으로, 운영건물은 항공터미널로 변모했다.⁴⁾

2. 아닥 항구(Port of Adak)

▶ 위치:⁵⁾ 북위 51도 51분 44, 서경 176도 38도 11, 항구 당국: 알류트 기업단체, 항구 규모: 매우 소, 항구 형태: Harbor, UN/LOCODE: USADK

아닥 섬 내 소규모 항으로 알류트기업단체(Aleut Enterprise Corporation)가 관리하고 있다.

3. 킹 코브(Port of King Cove)

▶ 위치:⁶⁾ 북위 55도 3분 31, 서경 162도 19분 20, 항구당국: 킹 코브 시, 항구규모: 소, 항구형태:

4) “Port of Dutch Harbor,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5) “Port of Adak,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Adak_741.php

6) “Port of King Cove,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KVC

▶ 개요와 역사

알래스카 만 동쪽 알류트 동부자치구(Aleutians East Borough)에 소재한 킹 코브(King Cove)항은 앵커리지 남서쪽 1,000킬로미터(625마일)떨어져 있다. 이 항은 더치 하버(Dutch Harbor)항 북동쪽 180마일 떨어져 있어, 알래스카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항구이며, 알래스카 놉(Nome)항으로부터 남남서쪽으로 1,0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알류트어로 아그다아구흐(Agdaagux)로 불리는 킹 코브 항의 인구는 800여명이다. 이 항은 피터 팬 시푸즈(Peter Pan Seafoods)사의 가장 큰 수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항의 지역 경제는 킹크랩, 폴럭, 대구와 알래스카 만과 베링 해 어류를 포획하는 상업 어업, 수산물 가공에 기반하고 있다. 이 지역주민들은 생계형 어업과 사냥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래 킹 코브 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의 첫 번째 정착민은 로버트 킹(Robert King)이었다. 그는 1880년대 동굴에서 거주했다.

1911년 현대적 킹 코브 항은 태평양 미국수산회사(Pacific American Fisheries)의 연어 통조림공장의 건설과 함께 생성됐으며, 첫 번째 정주민은 언안간(Unangans) 원주민, 스칸디나비아인, 기타 유럽인, 아시아인들이었다. 원주민은 폴스 파스(False Pass), 사낙(Sanak), 벨코프스키(Belkofski)마을에서 이 항으로 이주했다.

킹 코브 항 통조림공장은 1911년부터 1976년 화재로 인해 파괴될 때까지 운영됐다. 이 시설물은 재건축됐으며 후에 태평양 미국수산회사(Pacific American Fisheries)가 인수했다. 이 공장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연어 통조림공장이며, 청어, 넙치와 메기 등 물 바닥에 사는 어류, 게, 기타 어류를 연간 가공하고 있다.

1947년 킹 코브 항은 통합됐으며, 연방법으로 재조직된 킹 코브의 아그다아구흐(Agdaagux)족의 흠이며, 이 항의 21분의 1 주민들은 전부 혹은 일부 알래스카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콜드 베이(Cold Bay) 해안가에 몇 개의 전통적 사냥과 텃 농기 캠프가 있다. 20세기 초부터 주민의 생계활동 차원에서 정착민이 이용하고 있다. 킹 코브 항은 북쪽 7킬로미터(4.5마일) 마을로 통하는 몇 개의 자갈길을 가지고 있다.⁷⁾

▶ 항구 상거래

킹 코브 항은 상업적 어업, 화물선, 여객선, 레이크레이션 보트를 위한 해상 및 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킹 코브 시는 항만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 부두분과가 관리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 페리는 5월부터 10월까지 격월제로 이 항에 기항하며, 피터 팬 시푸즈회사(Peter Pan Seafoods)의 3개의 부두를 이용하고 있다.

킹 코브 소규모 보트 부두 항은 18미터(60피트) 길이의 50척을 처리할 수 있다. 킹 코브 항 내 가장 큰 보트 부두는 46미터(150피트) 길이의 46척을 수용할 수 있다. 소규모 및 대형 보트 선착장은 해안전력망을 갖추고 있다. 킹 코브 항 심해 선착장은 알래스카 주 페리, 화물선,

7) "Port of King Cove,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크루즈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다.

킹 코브 하버 마스터는 VHF 채널 6, 16을 번갈아가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항만당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픈하고 있다(목요일은 오후 5시까지).

킹 코브 시는 킹 코브 항 심해 도시 독(Deep Water City Dock)을 소유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독은 컨테이너선과 전통적 일반화물, 연료, 여객선과 자동차운반을 처리하고 있다. 시 전기과에서 운영하는 2,400배럴 용량을 지난 5개의 철강 저장 탱크에서 5인치 파이프라인으로 부두와 연계되어 있다. 하버 마스터의 사무소는 시 독(City Dock) 뒷 편에 위치해 있다. 이 독은 수심 9미터(30피트), 100미터(330피트) 길이의 선박 계류지를 갖고 있다.

킹 코브 로버트 뉴먼 보트 하버(Cove's Robert E. Newman Small Boat Harbor)항은 킹 코브 시 소유이며 관리하며 시티 독(City Dock) 북서쪽 킹 코브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소규모 보트 하버항의 수심은 5.5미터(18피트)이다. 또한 킹 코브 소규모 보트 하버 T 독은 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 이 독은 어업선의 시설장비 제공업무, 상업적 및 레이크레이션 선박의 정박 계류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심 4.5미터(15피트)와 110미터(360피트)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킹 코브 소규모 보트 하버 벌크헤드 워프(Bulkhead Wharf)항도 시 소유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선의 장비와 공급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수심 4.5미터(피트) 55미터(180피트)길이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피터 팬 시푸즈(Peter Pan Seafoods)사는 킹 코브 항 내 몇 개의 선착장(dock)을 소유와 관리하고 있다. 킹 코브 크랩 선착장(Crab Dock)과 킹 코브 펌프 선착장(Pump Dock)은 수산물 하역과 어선의 장비 공급을 처리하고 있다. 킹 코브 연료 선착장(Fuel Dock)은 어선, 연료 및 냉동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킹 코브 항 내 석유제품을 하역한다. 킹 코브 워프(King Cove Wharf)부두는 어선, 수산품의 지원과 컨테이너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있다.⁸⁾

▶ 크루즈와 관광

킹 코브 항은 선박 혹은 항공편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폭 30미터(100피트), 길이 1,066미터(3,500피트) 자갈이 깔린 비행기 활주로는 알래스카 주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항은 2개의 화산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풍 급의 옆바람에 의존된다. 킹 코브 방문객은 2개 황야지에서 야외 레이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즐길 수 있다.

킹 코브 항은 디어 패시지(Deer Passage)와 디어 섬(Deer Island) 남쪽을 바라보는 남부 알래스카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양성기후로서 연중 기온은 영하 4도(화씨 25도)에서 영상 13도(화씨 55도) 정도이다. 겨울철 최저기온은 영하 23도(화씨 9도), 여름철 최고기온은 24도이다. 이곳의 적설량은 연간 52인치, 강우량은 33인치이다. 여름철에 안개로 접근이 제한되며, 겨울철은 강풍으로 여행객은 좋지 않은 시즌이다.

8) "Port of King Cove,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킹 코브 항 북서쪽 27킬로미터(17마일) 떨어진 지역에 32만 1,000에이커 ‘이젠크 국립 야생 보호지(Izembek National Wildlife Refuge)’가 있다. 이 보호지는 미국 수산/야생관리당국(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관리하고 있으며, 25만 마리의 철새들이 매년 가을 방문하고 있다. 그중 흑기러기, 캐나다거위, 오리, 바닷가에 서는 조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 해상식물(거머리말)대 중 하나로서 이 식물들이 이젠크 라군(Izembek Lagoon)석호에서 서식하고 있어 철새의 식량과 피난처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바다수달은 연중 이 석호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툰드라 백조도 이 보호지에서 연중 살아가고 있다. 해안가에서 여러 형태의 밍크고래, 회색고래, 범고래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보호지는 방대한 규모의 연어들이 태어나고 죽는 곳으로 많은 갈색 곰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카리부(삼림순록) 무리들이 배회하고 있다.

위엄 있는 아기힐렌 피너클(Aghileen Pinnacles)산봉우리는 이젠크 국립야생보호지(Izembek National Wildlife Refuge)와 이젠크 황야지(Izembek Wilderness)를 분리시키고 있다. 빙하산과 활화산들은 베링 해로 유출되는 강들과 호수 위에 있다. 보호지와 황야지는 둘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Leave No Trace)’는 방문객의 필수적 요구조건을 지닌 보호지역이다. 이 요구조건은 방문 중 여행객들이 스스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문객들은 내구력 있는 지표면에서만 여행하고 캠핑해야 하고, 떠날 때 자연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쓰레기 처리, 캠프파이어 잔해물의 극소화, 야생과 기타 방문객들에 존중해야만 한다.

킹 코브 항으로부터 항공기준으로 200킬로미터(121마일) 떨어진 지역에 알래스카반도 최남동쪽 섬인 시메노프 황야지(Simeonof Wilderness)가 있다. 2만 5,000에이커 면적을 지닌 시메노프 섬(Simeonof Island)은 1958년 바다수달의 보호지로 지정됐으며, 1976년 미국 황야지로 지정됐다. 이 섬은 3개의 섬으로 구성된 슈마진 제도(Shumagin Group) 중 하나로 1980년 알래스카 해상 국립야생보호지(Alaska Maritime National Wildlife Refuge)로 지정됐다. 최 17여종의 고래들이 해안가로부터 목격되고 있다. 놀랍게도 바다수달 혹은 해안 조류들이 이 섬에서 서식하고 있지만 3개의 섬 하천에서 연어들이 살아가고 있다.

1890년부터 1930년까지 이 섬에 거주하는 목장주들이 소와 여우를 사육했지만 폐업했다. 1960년에 이 섬으로 소들이 반입되면서 소 떼들이 대규모로 증가했다. 1985년에 마지막 소들이 떠나면서 이 보호지 관리자들은 조류들의 생활터로 변모했다. 이 섬은 강풍, 안개, 비, 저운의 특징을 지닌 시메노프 섬은 내륙지역에서 이곳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으로 야생 환경으로 축복받은 이 지역의 관리자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Leave No Trace)’는 슬로건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⁹⁾

4. 세인트 조지 항(Port of St George)

▶ 위치:¹⁰⁾ 북위 56도 34분 19, 서경 169도 40분 13, 항구당국: 세인트 조지 항구당국, 항

9) "Port of King Cove,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10) "Port of St George,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St_George_3624.php

구규모: 매우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STG

5. 세인트 폴 항(Port of St Paul)

▶ 위치:11) 북위 57도 7분 28, 서경 170도 16분 47, 항구당국: 세인트 파울 항만당국, 항구 규모: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STP

▶ 개요와 역사

세인트 폴(St. Paul)항은 알래스카 서부해안 프리빌로프(Pribilof)제도의 하나로 오지 섬에 위치해 있다. 이 항에서 가장 근접한 항구는 더치 하버 항으로 238해리(항공기준으로 424킬로미터 혹은 263마일) 떨어져 있다. 이 항의 북서쪽 473해일(항공기준으로 824킬로미터 혹은 512마일) 떨어진 곳에 러시아의 프로비데니야(Provideniya)항이 있다. 세인트 폴 섬은 104평방킬로미터(30평방마일)로 화산 폭발로 형성됐다.

200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세인트폴 항의 인구수는 53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 86%는 알래스카 원주민이다. 이 항은 중앙 베링 해의 수산함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가공 공장과 해안 가공업자들의 고향이다. 순록무리들이 섬을 공유하고 있으며, 물개 집단번식지이며, 200여종이 넘는 조류 서식지이다. 이 지역경제는 생계형 어업, 사냥, 생활채집에 의존하고 있다.

훨씬 이전에 알류트 원주민이 사냥하기 위해 세인트폴 섬으로 들어왔다. 이 지역에서 상주 정착지의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1786년 전통적 알류트 어카운트에서 세인트 조지 섬에 도착한 첫 번째 러시아 모피 무역인이 기술됐다. 1788년 러시아-미국회사는 알류트 제도와 시베리아부터 세인트 폴과 세인트 피터(Peter) 섬들로 물개모피를 수집하기 위해 예측된 알류트 인을 이동시켰다. 현재 비자발적 정착인의 자손들은 여전히 섬에서 살고 있다.

1867년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은 세인트폴 항 거주민의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870년 정부는 20년 물개어업권을 식료, 의료, 주택을 위해 알류트 인들과 모피거래를 했던 알래스카 상업회사(Alaska Commercial Company)에게 양여했다. 불행하게도 몇 년의 물개 사냥으로 물개 숫자는 매우 감소했으며, 세인트폴 항 커뮤니티는 빈곤의 부담이 가중됐다.

1910년 섬에서 민간 임대는 물개 법(Fur Seal Act)으로 종료됐으며, 커뮤니티와 물개는 미국 수산청 당국으로 이전됐다. 프리빌로프 알류트인의 심각한 빈곤은 지속됐다. 작업환경은 끔찍했으며, 사회적 및 인종차별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알류트 열도의 침략 위협으로 알류트 인들은 베링 해 거주민들은 피난하면서 훈터 베이(Funter Bay)내 애드미럴티 섬(Admiralty Island)으로 이주했다. 세인트폴 섬 알류트 인은 포기된 통조림공장과 광산캠프에서 거주했었다. 그들은 1944년까지 캠프에 남아있었다. 1979년 알류트 인들은 그들이 1870년부터 1946년까지 받은 불공정한 대우의

11) "Port of St Paul,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St_Paul_3626.php

보상차원에서 850만 달러가 지급됐다.

1983년 미국 의회는 상업적 물개 포획의 정부 통제를 끝내는 ‘물개 법’을 수정했으며, 연방 정부도 이 섬을 떠났으며, 지방기관이 커뮤니티 서비스와 물개 관리의 책임을 가지게 됐다. 연방 정부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인트폴 항에 1,200만 달러를 제공했다.

1985년부터 세인트폴 항에서 물개의 상업적 포획은 금지됐다. 생계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물개 잡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다른 커뮤니티의 제염 연어 혹은 구운 연어와 교환하는 물개와 큰넙치의 공유는 세인트폴 문화의 중심이다.

세인트폴 폴 섬과 세인트조지 섬의 빌로프 제도 알류트 커뮤니티는 연방법이 인정한 종족이며, 세인트폴 항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세인트폴 항의 대부분의 거주인은 알류트 인이며, 지금도 러시아정교회의 역할은 커뮤니티 생활에서 중요하다. 거주민은 큰넙치, 순록, 해상 무척추동물 중뿐만 아니라 딸기류와 식물재배로 살아간다.¹²⁾

▶ 항구 상거래

고립된 섬에 있는 세인트폴 항은 항공 및 해상교통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알래스카 주는 2,000미터(6,500피트) 아스팔트 활주로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화물과 공급품은 선박으로 세인트폴 항에 운반된다. 213미터(700피트) 방파제의 부두 공간과 바지선 하역 공간을 지닌 세인트폴 항은 경제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2009년에 소형보트 하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세인트폴 항은 중앙 베링 해 수산함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항의 거주자 30명이 사업적 큰넙치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 1981년 트라이던트 시푸즈(Trident Seafoods)사는 게 가공공장을 세인트폴 항 내 건설했다. 최근에 냉장저장시설을 추가 건설됐다. ‘아이스클/유니시(Icicle and Unisea) 수산가공업자’는 하버 인근에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며, 9개의 역외 가공업자들이 이곳에 기지를 갖고 있다.

수로안내가 몇 개 면제된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게 필수적이다. 알래스카 마린 파일롯(Alaska Marine Pilots)사는 베링 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인트폴 항 내 정상적 정박지는 리프 포인트(Reef Point)와 자파드니 포인트(Zapadni Point) 사이에 있는 빌리지 코브(Village Cove) 서쪽에 있다. 정박지는 리프 포인트 북동지역에서도 가능하다.

4월과 5월에 빙하 에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세인트폴 항은 극적으로 바람 영향을 받는다. 섬 근처 정박 중 선박들은 강풍을 주의해야만 한다. 선박들은 충돌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빙하를 조명해야 한다.

세인트폴 항 내 하버는 발트 해 수산함대의 피난처로서 2006년 입구 수로의 수심은 5.5미터(18피트)였다. 세인트폴 항은 갑판 높이 3.4미터(11피트)와 수심 2.9미터(9.5피트)부터 7미터(23피트)의 3개의 주요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북동 하버가 빠르게 알아지면서 선박들은 해안에 가깝게 유지하라고 권고된다. 세인트폴 항 입구 근처에서 강한 물결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선박들은 6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번식기 동안 물개 서식지에 도착할 수 없다.¹³⁾

12) "Port of St Paul,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St_Paul_3626.php

13) "Port of St Paul, Port Commerce,"

▶ 크루즈와 관광

세인트폴 항은 어두운 지붕의 밝은 색의 통나무집의 소규모 커뮤니티이며, 교회, 소형 병원, 호텔, 기계공장이 있다. 날씨의 허용 시 더치 하버 항 혹은 콜드 베이(Cold Bay)경유 앵커리지 우편 및 여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인트폴 항은 연중 기온의 큰 변화가 없는 서늘한 북극 해양성기후를 지니고 있다. 평균기온은 영하 7도(화씨 19도)부터 영상 10도(화씨 51도)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짙은 안개가 보통이다. 이 항의 연간 강우량은 25인치, 적설량은 56인치이다.

이 섬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을 관람하기 위해 세인트폴 항을 찾는 여행객의 수는 연간 700명이다. 이 섬에서 248종 이상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조류들은 봄철에 시베리아로부터 찾아온다.

북방 물개서식지는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매년 5월에는 남성 물개들이 이 서식지로 찾아오면서 여성 물개의 도착을 준비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이 서식지는 민간에게 폐쇄된다. 10월 이후에는 물개들을 관람할 수 있는 2개의 블라인드 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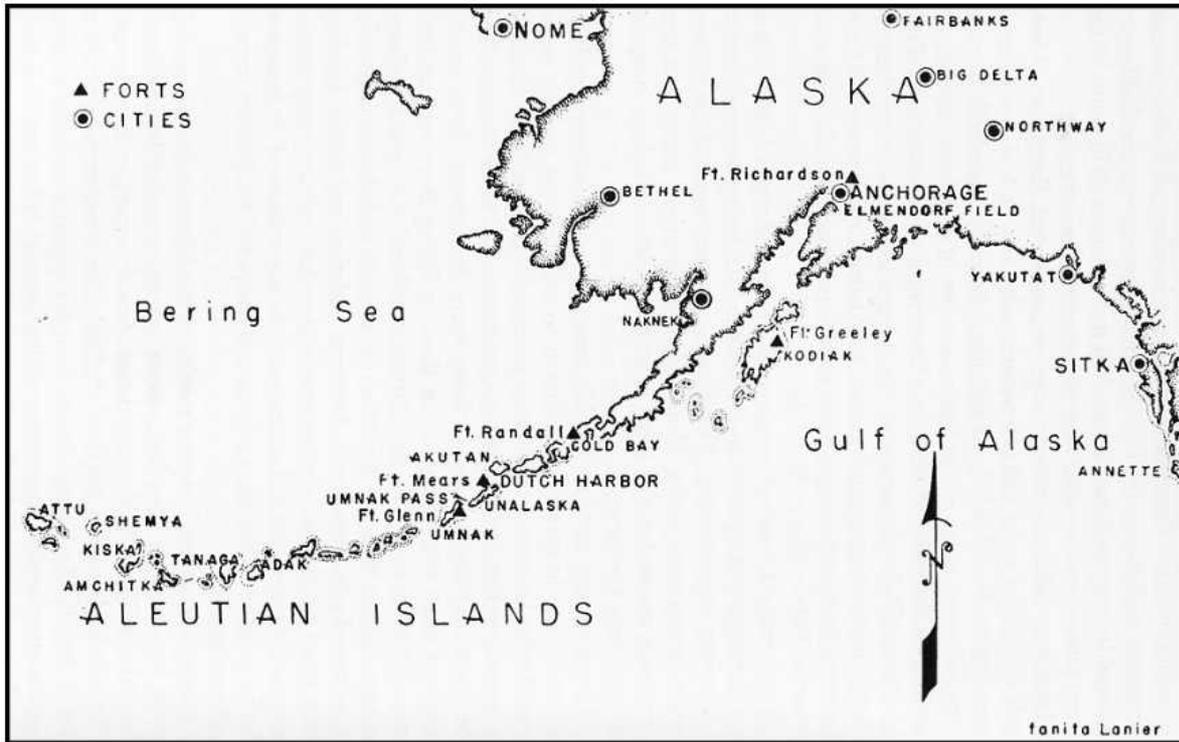
오테(Otter)섬 남서쪽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항구물개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빈번히 세인트폴 섬 해안가에 나타난다. 때때로 스타(stellar) 물개들이 세인트폴 항 해안가에 출현하지만 정상적으로 월러스 섬(Walrus Island) 북동쪽 16킬로미터(10마일) 떨어진 곳에 운집하고 있다. 방문객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범고래, 회색고래, 바다코끼리도 볼 수 있다. 1911년 이 섬으로 도입한 대형 순록들도 이 섬에서 자라고 있다.

북극 여우종인 푸른 여우는 세인트폴 섬의 고유종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여우들은 세인트폴 항 쓰레기통, 수산 부두, 수산가공공장의 야생 먹이를 포획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가끔 새끼 바다표범들이 어부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저장시설에 숨어 있다. 푸른 여우는 물개서식지 가장자리에서 둥지를 틀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

봄철에 세인트폴 항과 그 주변지역은 툰드라의 밝은 색깔을 뿌리는 아름다운 야생화의 전시장으로 변모한다. 100여종 이상의 야생화는 여름까지 이 지역을 환영하고 있다.

해상교통으로 세인트폴 항을 찾는 방문객들은 크루즈 선을 이용할 수

<그림 1> 알류산 열도 지도



자료: 알류산 열도 <https://namu.wiki/w/%EC%95%8C%EB%A5%98%EC%83%A8%20%EC%97%B4%EB%8F%84>

알류산 열도의 어원학적 의미는 축치어 ‘알리아트(aliat)’(섬을 의미)에서 기원했으며 태평양의 북쪽과 베링 해를 분리하는 아치형으로 이어지는 150여개 이상의 화산섬들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열도의 면적은 17,666 km²(6,821평방마일)이며, 알래스카 반도의 서측 끝 쪽인 애틀(Attu)섬까지 1,800킬로미터(1,100마일) 펼쳐져 있다. 미국의 서측 끝부분인 서경 180도까지 펼쳐져 있다. 알류산 열도의 대부분은 미국 알래스카의 부분으로 ‘알래스카 덩불(Alaskan Bush)’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열도는 소규모이지만 지질학적으로 관련된 러시아에 소속된 코만도로 체도를 포함하고 있다. 57개의 화산을 포함하는 이 열도는 환태평양 화산 고리의 북부 지역이며, 일반적으로 ‘태평양 불의 고리’로 언급되고 있다. ‘알래스카 마린 하이웨이(Alaska Marine Highway)’는 알류산열도, Unimak, Umnak, Amukta, Segum pass를 통과하고 있다.

알류산열도는 4,000만 마리의 바다조류, 희귀종인 아시아 철새, 바다사자, 물개를 포함한 풍부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 1976년 UNESCO는 알류산 열도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II. 알류산 열도의 지리

알류산 열도는 1867년 이전까지 캐더린 제도(Catherine Archipelago)로 알려졌으며,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미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폭스(Fox)제도, 4개의 산악 섬(Four

Mountains) 제도, 랫(Rat), 니어(Near)제도와 가장 규모가 작은 코만도르 제도이다. 이 열도는 북위 51-55도이며, 동경 173도부터 서경 161도에 위치해 있다.

알래스카 본토와 인접한 알류산 열도의 축은 남서쪽으로 펼쳐져 있지만 129도 자오선 방향부터 북서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섬들의 생성과정에 기인한 화산 균열 선상의 곡선에 부응하고 있다. 이 곡선의 체인은 쿠릴 열도의 태평양, 일본 열도, 필리핀에서 반복되고 있다. 아치형의 모든 섬들은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 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알류산 열도의 일반적 고도는 동부 섬들에서 가장 높으며, 최고 6,230피트이며, 서부 알류산 열도의 섬은 낮은 고도를 지니고 있다. 이 열도의 섬 체인은 알류산 산악의 서부로 지속되면서 본토로 이어진다.

알류산 열도의 대부분은 화산 원형의 명백한 증거를 보이고 있다. 이 열도 체인의 북측에서 많은 화산 원뿔이 존재하며, 일부는 화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알류산 열도의 많은 섬들은 전체가 화산암은 아니지만 수정암 혹은 퇴적암, 호박석과 갈탄층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열도의 해안가는 암석과 해안침식의 영향을 받아 접근은 대단히 위험하다. 육지는 해안으로부터 가파르며,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날래스카(Unalaska)섬에 위치한 1,800미터(5,906피트)의 마쿠쉬(Makushin)화산은 어날래스카(Unalaska)타운에서 볼 수는 없지만 날씨가 청명할 경우 원뿔형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날래스카(Unalaska)주민은 눈이 덮힌 원뿔형 화산을 관망하기 위해 피라미드 피크(Pyramid Peak) 혹은 뉴홀 산(Mt. Newhall)과 같은 작은 구릉만 등반할 수 있다. 보고스로프(Bogoslof)와 파이어 섬(Fire Islands)은 각각 1796년과 1883년에 화산활동으로 생성됐으며, Unalaska Bay 서쪽 48킬로미터(30마일) 떨어져 있다. 1906년 어날래스카(Unalaska)섬 근처 보고스로프(Bogoslof)와 그레윙크(Grewingk) 섬 사이에 새로운 화산 뿔체가 융기했다. 파이어 섬은 화산연기가 중지된 반면에 보고스로프 섬은 명백하게 연기를 뿜고 있었다. 이 화산 뿔체는 1907년 9월 1일 폭발적인 분출로 거의 사라졌다.

III. 알류산 열도의 기후

이 열도는 해양성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적절하며 뚜렷하며 한결같은 온도와 많은 강우량을 동반하고 있다. 이곳의 기후는 종종 사이클론의 폭풍과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평은 기에도 종종 밀집된 안개가 엄습하고 있다. 이 열도의 여름기온은 남동 알래스카(시카)보다 더 서늘하지만 겨울기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 기온은 베링 해의 영향을 받아 적절한 반면에 겨울 기온은 연중 가장 추운 기간 동안 바다빙하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대륙성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Unalaska섬의 연중 평균기온은 3.4도(화씨 38도)이며,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1도(화씨 30도), 8월 평균기온은 11.1도(화씨 52도)이다. 가장 높은 기온과 가장 낮은 기온은 각각 영상 26도(화씨 78도)와 영하 15도(화씨 5도)로 집계되고 있다.

연간강우량은 32-65인치(810-1,650밀리미터)이며, Unalaska섬은 연중 250일 비가 내리고 있어 미국 내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 중 하나이다. 시카(Sitka)도 미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곳의 연중 비오는 일수는 207.9일에 불과한 편이다. 이와 같은 기후 형태는 아이슬란드,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 남남아메리카의 군도), 인접한 알래스카 반도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IV. 알류산 열도의 동식물

이 열도의 작물기간은 6월초부터 9월 중순이지만 농업은 몇 개 야채재배로 제한되어 있다. 발육을 가로막는 버드나무를 제외하고는 이 열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유 나무 종은 결여되어 있다. 러시아 식민시대의 유물로서 일부 섬, 예를 들면 아닥(Adak)과 아마크낙(Amaknak)섬에는 몇 개의 침엽수들이 자라고 있다. 이 나무들, 그중 일부는 2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크기는 10피트 정도이지만 대부분은 5피트 정도로 작은 편이다. 이 나무들은 원래 여름철 영상 14도에 도달하는 시카(Sitka)로부터 들어왔다. 그러나 알류산열도의 여름기온은 이 나무의 이식을 위한 좋은 발육을 할 만큼 양호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 열도는 남미 남쪽에 위치한 제도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 자연 삼림지역과 비교할 때 유사한 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여름철 기온은 영상 9도로 서늘한 편이다. 나무가 없는 알류산열도는 사초속의 각종식물과 초원, 많은 야생화를 포함한 풍부하며 밀집된 초본류로 덮혀있다.

이 열도는 바다수달, 물개, 펄핀, 풀머갈매기, 바다오리, 수백만 마리의 바다조류의 서식지이다.

알류산열도는 미국 수산/야생동물청 산하 ‘알래스카 해양국립야생보존지역(Alaska Maritime National Wildlife Refuge)’으로 그 면적은 4,200평방마일로 서쪽 아투(Attu)섬부터 동쪽 유니막(Unimak)섬까지 펼쳐져 있다. 이 보존지역은 이 열도의 광범위한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뿐만 아니라 사냥과 어업으로 생존하는 알류트인의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있다.

V. 알류산열도의 역사

선사시대: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의 연결하는 교량으로 이어지는 알류산열도의 위치 때문에 많은 인류학자들은 아메리카의 첫 번째 원주민들이 이 루트를 이용했다고 믿고 있다. 아메리카에서 인간 활동의 증거는 아메리카 남쪽 뉴멕시코와 페루에서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 알래스카에서 인간 활동은 간빙기 동안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류산열도는 일만 5천 년 전 베링육로를 이동한 사람들이 최초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류트 인들은 이 열도에서 해양 환경과 어업, 사냥, 바구니 세공품의 숙련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생존했다. 사냥꾼들은 무기와 선박을 제조했으며, 그물들은 정교하게 해안 호밀의 절단된 줄기들로 잘 엮어지게 만들었다.

러시아 식민시대: 1741년 러시아 탐험가, 무역인, 식민지 사람들, 모피거래인, 전도사들이 알류산열도로 도착했다. 동시에 러시아정부는 북태평양 발견의 항해를 위해 덴마크 계 비투스 베

링과 알렉세이 치리코프(Alexei Chirikov)를 주축으로 세인트 피터(Saint Peter)호와 세인트 폴(Saint Paul)호를 파견했다.

2대의 선박은 태풍으로 분리됐으며, 치리코프는 알류산열도의 동부 섬들을 발견한 반면에 베링은 세인트 엘리아스 산(Mount Saint Elias)을 포함한 알류산열도의 서부 섬들을 발견했다.

베링의 선박은 난파됐으며, 코만도르프스키 제도(Komandorski Islands 영어로는 코만도 제도)에서 생명을 잃었다. 후에 그의 이름을 따라 베링 섬으로 명명됐다. 베링 선박에서 생존자들은 난파선을 통해 건조된 보트로 캄차트카 반도에 도착했으며, 이 제도에 모피 동물들이 풍부하다고 보고했다.

시베리아 모피사냥꾼들은 코만도 제도로 몰려들면서 알류산열도를 가로질러 북아메리카 본토지역으로 이동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는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교두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알류산열도는 1867년 미국에 러시아 알래스카지역을 양도하기 이전까지 러시아령에 속해 진다.

러시아인들은 기술과 잔인함을 통해 알류트 인들을 식민화, 특히 바다수달을 사냥하면서 무자비하게 영토를 확장했다. 러시아인들은 알류산열도, 알래스카 만, ‘알래스카의 좁고 긴 돌출부(Alaska Panhandle)’, 알래스카 남쪽, 캘리포니아에서 수달모피를 포획했다. 많은 알류트 인들은 계절적 조건하에서 프리빌로프 제도(Pribilof Islands)로 이동했으며, 수차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모피 물개를 포획해야만 했다.

1760년 러시아 상인 안드레안 톨스티흐(Andrean Tolstykh)는 아닥(Adak)섬 근처에서 상세한 센서스를 작성했으며, 알류트 인들을 러시아 국적을 부여했다.

1790년 노예 상황의 제거를 위한 일련의 시도와 잔인한 대우를 줄이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아메리카 셸리호프(Shelikhov)회사는 바다수달 모피의 수집을 위해 알류트 사냥꾼 노동력에 의존했다. 러시아인들이 알류트 섬에 도착한 후 알류트 여성들은 긴 장대에 건조 생선과 딸기류의 채집을 통해 이 회사의 식료품을 준비해야만 했다. 이 회사는 알류트 인의 노동 댓가로 새 가죽으로 만든 과카를 알류트 주민에게 공급했다.

1778년 3번째이며 마지막 항행을 시도한 제임스 쿡 선장은 알류산열도의 동쪽 지역을 조사했으며, 더욱 중요한 섬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결정했으며, 과거 항행에서 많은 실수를 보완했다.

기독교 영향: 알류산열도에 도착한 첫 번째 기독교 선교단 중 하나는 헤르만(Herman)으로 불리는 수도사였다. 1794년 9월 24일 알래스카의 ‘발라암 미션(Valaam Mission)’으로 언급되는 헤르만은 9명의 기타 러시아정교 성직자와 수도사들과 함께 도착했다.

2년 동안 이 선교단의 유일한 생존자는 헤르만이였다. 그는 ‘신 발라암(New Valaam)’이라고 명명한 스프루스 섬(Spruce Island)에 정착했다. 이 섬은 코디아크(Kodiak)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종 러시아 무역회사에 반대하는 알류트 인의 권리를 방어했었다. 헤르만은 이 섬에서 일생을 마감했으며, 이곳에 고아원, 학교를 건설했으며, 선교 사업을 지속했다. 그는 지금 ‘알래스카 세인트 헤르만’ 정교회로 알려져 있다.

1823년 ‘알류트의 현자(Enlightener of the Aleuts)’로 알려진 러시아정교회의 이반 베니아미노프(Ivan Veniaminof)는 어날래스카(Unalaska)에 도착했다. 그는 거의 30년 동안 전도 사

업에 열의를 가지면서 알류산열도뿐만 아니라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부터 쿠스커웬(Kuskokwim)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토에 기독교 전파 사업을 전개했다.

베니아미노프(Veniaminof)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류트 어와 틀링깃(Tlingit)어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교리문답과 찬송가와 신약성서의 일정부분을 번역했다. 그는 알류트 그룹 내 종족의 전통, 신념, 미신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시작했다. 1840년 이르쿠츠크 교구로부터 분리 이후 그는 캄차트카, 쿠릴, 알류산열도의 비숍으로 임명됐다. 그는 러시아 관습에 따라 인노첸타우스(Innocentius) 이름으로 시카(Sitka)로 이동했다. 그는 지금 알래스카 세인트 이너센트(Saint Innocent) 러시아정교회로 알려져 있다.

어날래스카(Unalaska)섬이 주요 정착지이며, 가장 오래된 정착지는 어날래스카라고 불리는 '일리울리우크(Iliuliuk)'로 1760-1775년에 관세 하우스, 전도사 하우스, 고아원, 러시아정교회 등이 건설됐다.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러시아는 어려운 재정과 루스카야 아메리카를 보상 없이 경쟁국인 대영제국에게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짜르 알렉산더 2세는 러시아 미국공사 에두아르트 스톡클(Eduard de Stoeckl)에게 미국 국무성장관 윌리엄 슈어드(William Seward)와의 협상을 지시했다.

1867년 3월 30일 철야작업을 통해 새벽 4시에 조약이 서명되면서 이 협상은 종결됐다. 구입가격은 720만 달러로 대략 1에이커 당 1.9센트였다.

이 구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슈어드의 어리석은 짓, 슈어드의 아이스박스 조소했다. 당시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대통령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 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북극곰 정원이라고 비판했다.

오래전부터 영토팽창을 원했던 미국 국무성 장관 윌리엄 H. 슈어드와 대외관계 상원위원회 의장 찰스 섬너(Charles Sumner)는 이 구입을 지지해왔다. 그들은 국가전략의 이해관계에서 이 조약을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남북전쟁 기간에도 러시아는 의미 있는 동맹국인 반면에 영국은 공개된 적대국으로서 러시아를 돕는 것이며, 영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4월 9일 섬너(Sumner)는 이 조약을 지지하는 중요한 연설을 했다. 연설문 속에는 알래스카의 역사, 기후, 자연 구성, 인구, 자원(삼림, 광산, 모피, 수산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유명한 항행탐험가[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요셉 빌링스(Joseph Billings), 유리 리시안스키(Yuri Lisiansky), 표도르 페트로비치 리트케(Fyodor Petrovich Litke), 오토 폰 코주베(Otto von Kotzebue), 포트록((Portlock), 제임스 쿡(James Cook), 미어리스(Meares), 페르디난트 브랑겔(Ferdinand von Wrangel)] 증언을 인용했다.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이후 알류산열도의 발전은 가속화됐다. 장로교 미션 학교와 여성 기숙사학교, 프리빌로프(Pribilof)제도의 물개 어업을 순찰하는 대규모의 미국 함대의 본부를 포함한 새 건물들이 건설됐다. 1885년 첫 번째 공공학교가 어날래스카(Unalaska)에 개설됐으며, 45명의 대학생이 등록했다.

1924년 미국 국회는 알래스카 원주민을 포함한 알류트 인들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했다.

1932년 미국 ‘인디언업무청(Bureau of Indian Affairs)’은 어날래스카(Unalaska)에 병원을 건설했다. 1932년 이 청은 브랑겔 연구소(Wrangell Institute)와 기숙사 직업학교를 개설했다. 1947년 브랑겔 연구소는 초등학교로 변모됐으며, 1975년에 폐쇄됐다.

제2차 세계대전: 1940년 미국은 알류산열도의 몇 개 안되는 좋은 항구 중 하나인 더치 하버에 해군기지를 설립했다. 1942년 6월 3일 일본이 이 지역을 폭격하면서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폭격은 ‘북방의 진주만 습격’으로 불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이 알류산열도의 소규모 지역을 정복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환초(Midway Atoll)’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판 데로 돌리기 위해 아투(Attu)섬과 키스카(Kiska)섬을 침략했다. 미 해군은 일본 해군 라디오코드를 이용해서 일본의 작전을 간파했으며, 알류산열도의 방어를 위한 대규모 시도를 펼치지 않았다.

42명의 미국인이 일본 홋카이도 포로수용소에 감금됐으며, 그중 16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알류산열도의 대부분의 주민들을 알래스카 팬핸들(Panhandle: 좁고 긴 돌출부)에 위치한 수용소에 감금시켰다. 미군은 일본군이 점령했던 아투(Attu)섬을 탈환했으며, 일본이 패망하면서 모든 알류산열도는 미국으로 편입됐다. 이 섬들은 전쟁 업무의 부분으로 수백 대의 항공기들이 캘리포니아로부터 러시아로 향하는 중간 기착지였다.

2002년 6월 3일 월요일에 ‘더치 하버 영령기념일(Dutch Harbor Remembrance Day)’이 거행됐다. 알래스카 주지사는 1942년 이틀 동안 공중폭격으로 78명 미군의 사망에 경의 차원에서 알래스카 주 조기 계양을 명령했다. 2002년 제2차 세계대전 알류산열도 ‘캠페인국립역사지역(Campaign National Historic Area)’ 방문센터가 개설됐다.

최근 발전 사항: 2차 세계대전 이후 1956년에 미국, 캐나다, 일본, 소련이 서명했던 물개보호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 미국 해안경비대함대들이 물개어업 방지를 위한 순찰을 위해 Unalaska섬에 상주했다.

원주민단체의 통제 하에서 지방 토지와 재정자원을 허용한 ‘알래스카 원주민청구해결법안(ANCSA: 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Act)’이 1971년에 발효됐다. 1977년에 ‘오운알라쉬카 단체(Ounalashka Corporation)’는 부동산 리스와 발전회사를 형성하여 Unalaska의 토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당금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첫 번째 마을단체(village corporation)였으며,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

알류산열도 경제: 산악지역이 적은 섬에서는 한 때 실용적으로 믿었던 양과 순록을 사육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어날스카(Unalaska)섬에서 라마가 재배됐다. 푸른 여우의 사육 증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이 열도의 경제는 주로 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은 규모이지만 미국 군대의 주둔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알류산열도의 인구: 이 열도의 원주민은 스스로 운안간(Unangan)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원주민은 알류트 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알류트 인들은 3개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언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 방언들은 에스키모-알류트 어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어족은 기타 어족과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알류트 혹은 운안간(Unangan)[이스턴(Eastern) 혹은 아투안(Attuan)]과 운안가스(Unangas)[아트칸(Atkan) 혹은 웨스턴(Western)] 언어는 러시아 모피상과 스칸디나비아 어부들이 알류산열도에 진입하기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한 때 알류트 인들은 보통 알류트 어, 러시아어, 영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영어는 알류트 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200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알류산열도의 인구수는 8,162명이며, 그중 4,283명이 Unalaska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알류산열도는 소규모 탄두 공격의 방어를 위해 고안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주요한 지역이다.

자료: "Aleutian Islands," New World Encyclopedia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Aleutian_Islands

VI. 알류산열도의 섬 목록

알류산열도는 약 162개 섬으로 그 면적은 1만 7,670 평방킬로미터이다. 알류산 열도는 반원형으로 펼쳐져 있으며 여러 개의 섬 그룹으로 구분된다: ① 폭스(Fox)제도, ② 4개 산맥(Four Mountains)제도, ③ 앤드리애노프(Andreanof)제도, ④ 랫(Rat)제도, ⑤ 니어(Near)제도, ⑥ 코만도르프스키예 제도로 구분된다.¹⁴⁾

1. **폭스제도(Fox Islands)**는 에이크택(Aiktak), 아쿤(Akun), 아쿠탄(Akutan)¹⁵⁾, 에이맥(Amak), 애머크낙(Amaknak)¹⁶⁾, 애머크타(Amukta), 애너눌리악(Ananiuliak), 애버태낙(Avatanak), 베이비(Baby), 버드(Bird), 보거슬로프(Bogoslof), 브리아들로애프(Breadloaf), 벅(Buck)¹⁷⁾, 케이턴(Caton), 채걸릭(Chagulak), 디어(Deer), 더빈(Derbin), 더슈콧(Dushkot), 에그(Egg), 에머럴드(Emerald), 엑스페디션(Expedition), 파이어(Fire), 게어고일(Gargoyle), 곁(Gull), 호그(Hog), 캘리게이건(Kaligagan), 카이걸(Kigul), 크레니친(Krenitzin), 쿠디아코프(Kudiakof), 오겐건(Ogangan), 오그첼(Ogchul), 팬케이크(Pancake), 피터(Peter), 포아(Poa), 푸스토이(Pustoi), 루톡(Rootok), 라운드(Round), 새말가(Samalga), 새낙(Sanak), 세덴카

14) "알류산 열도의 섬 목록,"

https://ko.wikipedia.org/wiki/%EC%95%8C%EB%A5%98%EC%83%A8_%EC%97%B4%EB%8F%84%EC%9D%98_%EC%84%AC_%EB%AA%A9%EB%A1%9D

15) 이 섬은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에 있는 화산섬으로, 성층 화산인 아쿠탄 봉(Akutan Peak)이 솟아있다. 아쿠탄 봉은 정상에 소규모의 칼데라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용암 돛이 있다. 현재도 활동 중이며, 1992년에는 용암이 분출하기도 했다. 제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미쓰비시 전투기가 실수로 불시착한 일로 유명한데, 이 전투기를 아쿠탄 제로라고 한다.

16) 이 섬은 알래스카 주 남서부에 위치한 어널래스카 섬의 북쪽 어널래스카 만에 있는 섬이다.

17) 이 섬은 712,000 m²의 작은 무인도이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세인트 크로이 섬의 북동쪽 2.4 km에 있는 섬이며, 1961년에 미국 기념물로지정되었다.

(Sedanka), 수실노이(Sushilnoi), 탕각(Tangik), 탕기낙(Tanginak), 티걸다(Tigalda), 어거맥(Ugamak), 움나크(Umnak)¹⁸⁾, 어널래스카(Unalaska)¹⁹⁾, 어널가(Unalga), 유니맥(Unimak), 브세비도프(Vsevidof), 위슬로(Wislow)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4개 산맥의 제도(Four Mountains Islands)는 애덕타(Amukta), 채걸락(Chagulak), 처기내택(Chuginadak), 칼라일(Carlisle), 허버트(Herbert)²⁰⁾, 캐거밀(Kagamil Island), 울리아가(Uliaga), 유네스카(Yunaska)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앤드리애노프 제도(Andreanof Islands)는 알류산 열도에 속해 있는 섬들의 무리로, 알래스카 주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랫 제도와 폭스 제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앤드리애노프 제도에 속해 있는 델러로프 제도는 앤드리애노프 제도의 가장 최서단에 위치한 섬들로, 작은 소군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렐로이 섬(Gareloi), 아마티기스 섬(Amatigis), 터내가 섬(Tanaga), 캐너가 섬(Kanaga), 에이택 섬(Adak Island), 태걸라크 섬(Tagalak), 대시트킨 섬(Great Sitkin), 애트카 섬(Atka Island), 앰리아 섬(Amlia), 세괘 섬(Seguum)이다.

이 섬들은 항상 안개로 끼어있고 계속 바람이 부는 섬들이어서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이 섬들은 1761년에 이곳을 처음 방문한 러시아인 탐험가 안드레이안 톨스티크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제2차 세계 대전에는 몇몇 섬들이 미군 기지로 이용되었다. 에이택 섬에서 근거를 둔 미군 기지는 1995년까지는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

이 제도에는 에이택(Adak)²¹⁾, 애글리개택(Agligadak), 아마티기스(Amatigis), 애머티그낙(Amatignak), 앰리아(Amlia), 애너격식(Anagaksik), 아르곤(Argonne Island), 애석삭(Asuksak), 애트카(Atka)²²⁾, 에이지액(Aziak), 바바라(Barbara), 블랙(Black), 보브로프(Bobrof)²³⁾, 볼쇼이(Bolshoi), 복스(Box), 캐슬(Castle), 체이카 암초(Chaika Rock), 채널(Channel), 치색(Chisak), 처걸(Chugul), 콘(Cone), 코머런트(Cormorant), 크론(Crone), 델러로프(Delarof), 도라(Dora), 에디(Eddy), 에그(Egg), 엘프(Elf), 페니모어 암초(Fenimore Rock), 가렐로이(Gareloi), 그램프 암초(Gramp Rock), 대시트킨(Great Sitkin), 그린(Green), 이기트킨(Igitkin), 이키기낙(Ikiginak), 일락(Ilak), 이나(Ina), 캐걸래스카(Kagalaska), 커내가(Kanaga), 캐뉴(Kanu), 캐서토치(Kasatochi), 캐벌가(Kavalga Island), 코뉴지(Koniuji), 리틀

18) 이 섬의 중심지는 니콜스키이다.

19) 이 섬은 알래스카 주 알류산 열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더치 하버로 알려져 있다. 북위 53도 53분 20, 서경 166도 31분 38에 위치해 있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4,283명이다. 인구밀도는 0.65/km² (38.6/mi²)이다. 지금까지 한국인만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던 온돌이 발굴되었다. 약 3000년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어떻게 알래스카에 있는지, 한국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 이 섬은 화산섬으로, 성층 화산이다. 이 화산은 칼데라를 가지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산 (알래스카)보다 남쪽에 떨어져 있다. 칼데라 내에는 큰 화구 호수가 있다.

21) 이 섬의 면적은 450 km²이다. 1700년대에는 이 섬에 러시아인 탐험가가 몇 번이나 방문했다

22) 이 섬의 위치는 북위 52도 07분, 서경 174도 30분의 위치에 있으며 북동부에 화산이 존재하며, 태평양 전쟁 중에 만들어진 미군 기지가 있다.

23) 섬 전체가 하나의 성층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터내가(Little Tanaga), 노스(North), 오글류가(Ogliuga), 오글로댕(Oglodak), 플럼(Plum), 링골드(Ringgold), 샌더태넥(Sadatanek), 새그처댕(Sagchudak), 새기각(Sagigik), 솔트(Salt), 시패럿(Sea Parrot), 세괘(Sequam), 스캐걸(Skagul Island), 실락(Silak), 사우스(South), **스태이튼(Staten)**, 태그(Tag), 태거댕(Tagadak), 태걸럭(Tagalak), 태너댕(Tanadak), 터내가(Tanaga), 태너클렉(Tanaklek), 더시그널(The Signals), 더쓰리시스터스(The Three Sisters), 티지턱(Tidgituk), 어기댕(Ugidak), 울락(Ulak), 어맥(Umak), 어널가(Unalga), 유이액(Uyak), 윙(Whip)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랫 제도(Rat Islands)**는 암치트카(Amchitka), 버드록(Bird Rock), 불디르(Buldir), 데이비도프(Davidof), 흐보스토프(Khvostof), 키스카(Kiska)²⁴, 리틀 키스카(Little Kiska), 리틀 시트킨(Little Sitkin), 피라미드(Pyramid), 랫(Rat), 세굴라(Segula), 세미소포크노이(Semisopochnoi), 타나닥(Tanadak)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니어 제도(Near Islands)**는 애거투(Agattu), 엘레이드(Alaid), 애투(Attu)²⁵, 쿠퍼(Cooper), 깃슨(Gibson), 해머헤드(Hammerhead), 호디코프(Hodikof), 케넨(Kennon), 코홀(Kohl), 로우프(Loaf), 로터스(Lotus), 니즈키(Nizki), 피크드(Peaked), 새비지(Savag), 세미치(Semichi), 셴야(Shemya)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6. **코만도르스키에 제도**(러시아어: Командорские острова, 영어: Commander Islands)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제도이다. 알류산 열도에 속해 있으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알래스카주에 속해 있다.

베링 섬, 메드니 섬 및 두 개의 작은 섬[토포르코프 섬(Топорков)과 아리카멘 섬(Арий Камен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은 러시아인과 알류트족으로, 가장 큰 도시는 베링 섬에 있는 니콜스코예(Nikolskoye)이다.²⁶ 알류트족은 알류산 열도에서 19세기 처음에 왔다. 베링 섬의 알류트 족 대부분은 애트카 섬에서, 메드니 섬의 알류트족은 애투 섬에서 왔다. 현재 주민의 3분의 2는 러시아인, 나머지는 알류트족이다.

1943년, 이 제도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지점에서 일본 제국해군과 미군 간에 코만도르스키에 제도 해전이 발생했다.

24) 이 섬은 알류산 열도(미국 알래스카 주) 서부에 위치한 섬이다.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2년부터 일본군이 점령하던 기간 동안은 나루카미 섬(일본어: 鳴神島 なるかみしま)이라 불렸다. 환태평양 조산대 부근에 있는 화산섬으로, 중앙의 키스카 화산은 성층 화산이다. 가장 늦은 분화는 1962년에 있었다.

25) 이 섬은 알류산 열도의 니어 제도 최서단에 위치한 섬이다. 일본이 점령했을 때는 아쓰타 섬(熱田島)이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중 일본군과 미군의 격전지가 되었다. 기후: 흐리거나 비가 많고, 강풍과 안개도 많다. 맑은 날은 1년에 8일에서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1942년, 일본군은 미드웨이 작전의 양동 작전으로 애투 섬을 키스카 섬과 함께 점령해서 아쓰타 섬이라고 개칭했다. 1943년 5월에는 애투 섬 탈환을 위해 미군이 상륙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쪽 전사 2638명 포로 27명; 미군쪽 전사 약 600명, 부상 1200명.

26) 니콜스코예(Никольское)는 코만도르스키에 제도의 베링 섬에 위치한 마을로, 베링 섬의 중심지이자 알래스카주 군의 중심지이다. 1826년에 애트카 섬에서 이주한 알류트족에 의해 지어졌다. 이곳은 고래잡이와 물고기 사냥을 중심으로 해서, 어업, 수렵, 해양 동물 사냥 등에 종사한다. 이곳의 인구는 700명이다. 니콜스코예 공항이 위치해 있다.

베링 섬: 중심지인 니콜스코예에는 8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리가 많이 내리고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한다.

메드니 섬: 프레오브라젠스코예가 이 섬의 중심지이다.

토포르코프(Топорков) 섬

아리카멘(Арий Камень) 섬.

러시아정부는 1993년 3월 23일 베링 해 알류산열도에 소재한 ‘코만도르스키(Komandorski)’ 지역을 국가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코만도르스키 자연보호구역은 코만도르스키 제도 중 가장 큰 4개의 섬인 메드니(Medni), 베링(Bering), 아리이(Arij), 카멘(Kamen)섬 외에도 보브로예(Bobrowye)섬과 60여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연보호구역의 총면적은 364만 8,679ha로서 해안 구역의 면적은 346만 3,300만ha에 이르고 있다. 코만도르스키 제도는 알류산열도의 일부로서 제2차 캄차카 탐험에서 1741년 비투스 베링이 발견했으며, 그 해 12월 8일에 지금 베링 섬으로 명명한 지역에서 베링과 그의 선원들이 사망했다.²⁷⁾

알류산 열도 대부분의 섬들은 미국령에 속해 있으며, 이 열도의 서쪽 그룹인 코만도르 제도(Komandorskiye ostrova)제도는 러시아령에 속해 있다. 알류산 열도의 미국령은 알래스카 반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알류산 동부자치구(East Borough) 지역(총면적 38,889km², 육지면적 18,099km²)과 알류산 서부센서스(West Census)지역(총면적 36,562km², 육지면적 11,388km²)이며 인구수는 8,200명으로 주로 어업과 모피 사냥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섬은 어널스카(Unalska)로서 함대기지가 있는 더치 하버(Dutch Harbor)항이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코만도르 제도는 캄차트카 변경주의 알류산 열도지역으로 인구수는 약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7) Naturschutzgebiete Russlands: Kommandeurinseln, *Radio Stimme Russlands*, 26 November, 2011.

<https://de.sputniknews.com/german.ruvr.ru/photoalbum/61068875/?slide-3>

북극 러시아를 위한 협력과 개발 방안 연구¹⁾

양정훈²⁾

I. 들어가면서

21세기 초 세계는 북극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극이사회 8개 이사국(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중심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더불어 주변 국가들의 북극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련의 국제기구들(나토, EU)까지도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중심이 되어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극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매력적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 지하자원의 고갈이 세계경제에 불황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곤 한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은 자원부족을 예측한 대책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는 등 발 빠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자원 고갈이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 빙하가 지하자원의 해갈로 이어지는 새로운 돌파구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전망은 일차적인 문제가 원활히 해결 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일차적 문제로는 북극에 삶의 터전으로 뿌리내리고 평생을 살아왔던 주민들의 환경과 원만한 영토분할이다. 이곳 주민들의 수는 약 400만 명이며, 연간 소득은 2300억 달러에 달하는 소규모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환경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대안을 내놓고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 해결책이다. 이는 북극 이사국 중심으로 만들어내야 되며, 동시에 영토분할이 국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나은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북극 진출은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여러 경영컨설팅 분석에서도 발표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부즈앤컴퍼니³⁾ 보고에 따르면, 북극이 차기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래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북극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몇몇 글로벌 기업들은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북극은 에너지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북극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해양로와 항로가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북극과 베링해협 간의 새로운 해상운송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극과 베링해협의 운송해로는 현재 따뜻한 계절에만 운항이 가능하지만 수에즈와 파나마운하를 대신할 운송경비 절약으로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6S1A5A2A03926235) 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의 한국 시베리아 연구 2017년 21권 2호지에 실린 내용을 게재한 것 임.

2) 수원대학교

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87727> (2017.04.10)

이어질 수 있다. 미래학자들의 의견 또한, 지금 인류는 ‘북극의 시대’를 살아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북극과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향방이 나누어질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연구들이 보다 실제적이고 상상 속의 특성을 띄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대답을 북극과 러시아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북극에서의 러시아 관심은 매우 다양하다. 2008년 9월 드미트리 메드베예프 러시아 전대통령도 2020년까지의 청사진을 내놓곤 했다. 북극을 향한 정책과 향후 발전 전망이다⁴⁾.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북극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연구자의 추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II장에서 러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인 북극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조사해 보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III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북극해 교통수단을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교통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경제적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IV장 북극의 유니컬한 시스템 보존 등의 내용을 통해 V장 북극 개발에 대한 방법론적 제안을 하고 이를 협력과 평화의 장으로 이어져 북극을 인류의 자산으로 보존하고자 함이다.

II. 새로운 전략적 기반

북극 온도변화는 전 세계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어 제트기류 변화로 연결되면서 날씨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으로 미치는 것은 북극의 자연환경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들 생활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의 미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 변화 등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만 국제사회의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 북극 러시아의 자원

북극지역의 러시아 인구는 약1.4%인 195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도 약 11%의 수익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자원 분야와 군수산업과 교통로에서 큰 발전을 보여 왔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다른 지역 또는 국외로부터 보충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생산물들이 아니다. 단지 캐나다만이 러시아의 북극해와 육로에 따른 북극 선을 같이 이루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는 캐나다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풍부한 북극 자원개발, 즉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용 광물 생산은 러시아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자원 중 에너지 자원인 석유가스 매장량이 북극의 약 60% 달하고 국제 기준과 법에 따라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다. 절대적 표시로 이곳에 저장 되어있는 석유는 375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보유량 2610억 배럴과 비교 될 수 있다⁵⁾. 그러나 이도 역시 아직은 북극의 전체 매

4) 북극에서의 러시아 연방의 2020년까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정부정책 기반
URL: www.rg.ru/2009/03/30/arktika-osnovy-dok.html (2017.03.20)

장량을 계산한 추정치가 아니다⁶⁾.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곳의 매장 전에 대한 측량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지하자원 매장지로는 지금까지는 약 200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은 약 몇 십개로 보고 있다. 매장지역은

▪ 베렌제바 해양 광구(삐초르스끼를 포함)

·석유 매장지 4곳 : 뿌리라즈롭노이, 마란데이 해양전, 메딘스끼 해양전, 돌긴스끼

·석유- 가스컨덴세이트 매장지 : 세베로-구라브스끼

·가스 컨덴세이트 매장지 3곳 : 세베로-길딘스끼, 물만스끼, 루드로브스끼

▪ 까르스끼 해양광구(따조브스끼와 오브스끼 만)

·석유-가스 컨덴세이트 매장지 2곳 : 사례까쁘뜨스끼, 율하로브스끼

·가스 컨덴세이트 매장지 2곳 : 레닌그라드스끼, 루사노브스끼

·가스 매장지 7곳 : 안띠빠유딘스끼, 세마꼬브스끼, 또따-야힌스끼, 까멘노므스스끼 해양전, 세베로-까멘노므스스끼, 구고리야힌스끼, 오브스끼⁷⁾

향후 러시아의 자원 취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규모의 지질측정 작업과 인프라 구성 및 채굴, 재생산, 보관 그리고 운반에 따라서 환경을 생각한 기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광물 채굴의 2/3가 바렌제바와 까르스끼 해양 광구에서 이루어져 있다면, 향후 자원 채굴 광구는 바스토치노-시비리스끼, 추꼬뜨스끼 해양과 라쁘떼브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향후 러시아 석유 가스 채굴 광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시장 전체에 자원기반에 원천이 될 것이다. 그밖에 북극에서 러시아 지역에 석탄 매장량은 7800억 톤이며 이중 약 810억 톤은 코쿠스 석탄이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총 석탄자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북극에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자원도 있다. 철광석, 광물 외의 자원들이 러시아 전체의 절반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의 매장 현황을 보면

- 인회석 농축소(90%) : 풀스끼 반도, 타이미르 반도, 야쿠티야, 추코트카
- 니켈, 코발트(85%) : 노릴스크, 풀스끼 반도
- 구리(약 60%) : 노릴스크, 풀스끼 반도
- 텅스틴(50%) : 북 야쿠티야, 추코트카
- 백금류(98%) : 노릴스크, 풀스끼 반도
- 주석(50-75%) : 세베로-야쿠트스끼
- 수은(주요 매장) : 추코트크, 타이미르 지역

5) Smith M., Giles K. Russia and the Arctic: "The last Dash North" Advanced Research and Assessment Group. Russia Series 07/26. Defens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2007. p. 1.

6) Истомин А., Павлов К., Селин В. Экономика Ф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и //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2008. № 7. сс. 158-172.

7)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арктики. URL: 20100415/220120223.html. (2017.08.29)

- 금과 은(90%) : 북쪽에 주로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상당한 양이 추코트크, 타이미르, 폴스끼 반도
- 다이아몬드(99% 매장) : 야쿠티야, 아르한겔스크 지역
- 망간 : 노바야 젬라 지역
- 크롬 : 야말과 폴스끼 반도 지역
- 티탄 : 폴스끼 반도⁸⁾
- 희소가치가 있는 원료(95%) : 타이미르, 폴스끼 반도, 북야쿠티야

러시아의 니켈 광산의 주요한 특징은 광산에 다양한 광석들이 함께 매장되어 있다. 이 광석으로 구리, 백금류의 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 은, 셀렌, 텔루르와 같은 광물은 자기 가치가 치솟고 있는데, 이들의 채굴에 자기자본이 많이 들고, 북극 극지방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되고 있다⁹⁾. 크롬 매장전은 러시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방이 붕괴 되면서 켐베르사이스끼 매장 전을 잃게 되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또한 커다란 생물학적 자원을 또 한 가지고 있는데, 북극해는 독특한 다양한 종류와 형태에 어류와 생물체들 볼 수 있는데 즉, 백곰, 북극여우, 일각 고래, 제비, 해마, 흰 돌고래 등을 볼 수 있다. 150여 종 이상의 물고기가 북극해와 북극해저에서 식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수산업 어류로는 대구, 청어, 가재미 등이 있다. 북극해에서의 수산업은 러시아 총 수산업에 15%를 차지하고 있다¹⁰⁾.

2. 북극 waterway(海路)

러시아에 있어 북극항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북극 지역들과 그 밖의 지역을 연결하는 기반적인 교통 간선로의 의미를 지닌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러시아의 주요 회사들로는 “노릴스끼 니켈”, “가즈쁘롬”, “루코일”, “로스네프띠”, “로스셴프”, 그리고 크라스노야르스끼 지역과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추코트카 등이다.

안타깝게도 1990년대에는 경제 붕괴와 더불어서 1980년대에 비교 할 때 화물 운송 양이 약 5-6배가 감소하였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년간 북극항로에서 러시아의 활동은 감소하였고, 그 밖의 나라들은 북극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잠재적 화물운송량을 측정해 보면 동쪽으로는 5-6백만 톤 그리고 서쪽으로는 2-3백만 톤으로 보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극항로에 따른 한해 운송량은 3,500-4,000만 톤이다¹¹⁾.

8) Основы стратег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и.

URL:www.arctictoday.ru/council/654.html(2017.08.29)

9) Витязева В.А., Котырло Е.С.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го и зарубежного Севера. Сыктывкар: Сыктывка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07. с. 128.

10) Кочемасов Ю.В., Моргуннов Б.А., Соломатин В.И. Эколог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оценка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Арктики. URL:www.ecoenergy.ru/Article54.html. (2016.12.19)

11) 인근 북극 연안 지역 발전 맥락으로서 북극항로의 갱생. 2009년 11월 26일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행정부 장의 자

북극항로의 재건에는 단일화된 북극항로 행정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연방방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¹²⁾. 기관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항만을 유지하고 있고, 북극 지방의 공항과 노선 그리고 석유기지 및 석유수송터미널, 철도, 해양 간선도로와 같은 단일화된 교통망을 지닌 아르한겔스크 지역을 재건하여야 할 것이다. 북극항로의 운명은 지금까지 측량된 지하자원의 개발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유니컬한 쉬토크만노브스키 석유-가스 매장전, 뿌리라스 롬노예 매장전과 함께 티마노-빠출스키 석유-가스 함유지역, 세베로-오내쥐스키의 보오크사이트, 아르히빠라그 노브이 제믈라의 망간 및 종합메탈광석의 소유주로부터 북극항로의 사용이 거부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야말 반도로부터 가스 컨테이너가 수송될 수도 있다.

북극의 바다가 녹을수록 북극항로로는 중요한 교통 요지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의미 있을 만큼의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항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11400마일의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함부르크와 요코하마의 항로가 6600마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나토연합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북극항로를 국제화시켜 이곳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그들의 계획에 쉽게 영향력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아직 러시아 경계 뒤 200마일 경제 지역이 온난화 영향으로 항행 가능성이 열리지 않은 지금 북항로를 개발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아르한겔스크 지역 주지사인 미할추크는 생각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뒤로 다른 이들이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알다시피, 현재 경계 뒤 200마일에 비했을 때, 러시아 연안에 얼음이 얇은 것은 러시아에 큰 장점이다.

북극항로의 인프라 개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의 정책 프로그램인 쇄빙선과 보조 선박 건설에 있어 엄격한 제어를 보장하는 것. 둘째, 현존 항만을 현대화 하는 것. 셋째, 화물 이동에 따른 새로운 터미널의 건설(화물량 증가 기대에 따라). 넷째, 액화 천연가스 채굴 공장 인근 지역에 액화 천연가스 운송을 위한 장비 구축. 다섯째, 전체 항로에 따른 탐색 및 해상구조 본부를 구성하는 것(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비상 상황 부의 2010년 법령에 따른 러시아의 북극 지역을 잘 알고 활동 하는 10개의 구조 본부를 구성하는 것). 여섯째, 항로 전반에 있어서 일기예보 및 얼음 상태에 대한 정보를 모든 선박 구성원들에게 중단 없는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것. 일곱째, 북항로에 따른 외국 선박을 유도하는 것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는 것(잘 훈련된 외국어 실력과 함께)¹³⁾ 등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현은 단지 북극항로에 따른 화물운송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뿐만

문위원회에서의 발표 논문.

URL:www.dvinaland.ru/economy/priority/smp_doclad.htm.(2017.05.19)

12) URL:http://www.barentsobserver.com/cppge.4635550-16149.html. (2017.05.19)

13)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как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приарктиче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Доклад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глав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рхангельской области 26 ноября 2009г.

URL:www.dvinaland.ru/economy/priority/smp_doclad.htm; Арктика - исконно русская земля, и осваивать ее будем мы.(2017.09.10.)

URL:www.dvinaland.ru/power/head/appearances/10162/index.php.(2017.09.10)

아닌, 점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러시아에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지구상의 세계적 간선로가 된다는 것이다.

3. 북극 airway(航路)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따른 극 횡단 비행선로 및 운송의 조직에 따른 극지방 전략에 상응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는 단지 러시아의 모든 방향에 따르는 러시아 극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상업적 북극 횡단에 관심을 갖는 이들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찾아온 문제다.

또한 북극 횡단 노선이 전 세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떠오르는 분야이며, 이것이야말로 북극 항공운송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전망이 극지방을 통과하여 북 아메리카로부터 아시아로 가는 극 횡단 항공화물이 통과하는 것이다. 이는 매년 아주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 항공화물운송 속도에 약 4배에 이르는 속도이다. 기획운 영센터 ‘레기온’의 센터장 보이텐코의 말에 따르면 북쪽으로 향하는 운송에 시베리아의 공항은 향후 아시아-아메리카 항공화물운송 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한다¹⁴⁾. 이를 계기로 러시아 극지방에 신흥 서비스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 그리 활발하지 못한 산업이지만 앞으로는 거대한 항공 노선뿐만이 아니라 중, 소형 항공기의 낡은 격납시설을 바꾸고 현대화 시키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야쿠티에서 여름 동안 항해하는 AN-2, AN-12, L-140기는 전체의 단지 20% 밖에 안 된다. 즉 완전히 정비되어 운항 할 수 있는 항공기는 전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비싼 연료 및 장비 가격 등과 같은 것들이 현재 러시아 항공 산업을 하향세로 이르게 했으며, 이러한 여건들은 북쪽 공항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러나 극지방 환경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러시아의 항공기 AN-3(옴스키 생산 협회 “빠료뜨”)의 배치와 운항은 여건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⁵⁾.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여건이 형성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한다. 러시아 북극 지역의 항공 인프라의 향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통신이 선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우주 항공으로 ① 시민들의 극 횡단 비행에 운항 유도 및 수리 ② 기상 관측 지점 등으로 군대 및 시민의 공항을 위한 것이다. 이는 인공위성에 의한 통신에 의지 된다. 그러나 극지방은 새벽의 계속되는 날씨 변화와 낮의 라디오 시그널이 통과하는데 있어서 극지방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안정된 통신을 하기 어렵게 한다. 북극 극지방의 수리학적 그리고 기상학적인 정보는 지상 또는 항공으로부터 얻었는데, 이는 현재 이들 기구는 너무 낡아서 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구 부동 궤도로부터 북극 지역에 따른 정보를 얻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국제 수리학 기구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14) Кроссполярный экспресс. URL:zubow.ru/page/1/225_1.shtml (2017.03.19)

15) Алексеев А.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залог подъема экономики Якутии и. URL:www.parldv.ru/index.php?mod=art_show&id_art=195. (2017.05.20)

따라서 현재 연방 항공 우주국은 큰 타원형의 궤도, 대기 수상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지표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리고 통신의 문제 등을 위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알티카”라는 다목적 우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¹⁶⁾. “알티카”는 지상의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항공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항본부에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지속된 그러한 정보에 의하여 소규모의 비행기들에 있어서도 최대한 많은 비행기 수, 그리고 운항 따른 효과적인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수행을 얻기 위해서는 항공화물선들에 따르는 적절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항공회사들은 이러한 설비들을 설치하기엔 비행 시설이 너무 낡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관여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¹⁷⁾.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의 참여 즉 적극적인 관심을 요하는 유니컬한 부분이 있다.

4. 북극의 유니컬한 시스템 보존

북극의 자연은 세계의 다른 곳들과 비교하였을 때 손상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적 개발에 있어 북극 이사회 이사국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환경 보존 및 보호에 따른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요구가 뒤따른다. 북극 지방에서 활동에 있어서는 환경 시스템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그 시스템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 그 시스템이 확고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지구환경의 보존 상태만 보아도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해서 쉽게 망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아주 천천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북극 또한 방심하게 되면 환경 파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극지방에서 각 정부의 경제활동 증대 및 다국적 회사들의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북극지역에서의 환경 보존 정책이 강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북극 개발은 종합적인 산업생산 접근으로 시설과 가스 생산 및 채굴 등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듯 러시아 한 국가만 보아도 북극 지방에 찾아 올 수 있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생물체의 환경보존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에 흔적들은 공기, 땅, 물에서 만이 아닌 물고기 및 동물들에게서도 찾게 된다.

북극 러시아에는 노틸스끼,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등 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석유 가스 채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지역들은 특히 환경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몇몇 지표에 따르면 벌써 북극 러시아 지역의 약 15%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있다¹⁸⁾.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 환경에 따른 흐름에 배경이 되고 있는 바다 및 강의 흐름이 오염된 물질을 멀리로부터 북극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먼 유라시아 지역들로부터 오염된 물질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걸프 해 물결과 환경적 흐름들 즉, 서 유럽으로부터, 러시아 서 북극 지역으로 오염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이다.

러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은 러시아 지역 북극해의 오염은 생산 활동이 활발한 연안 지역에 국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류 산업재해에 의해 바렌쯔해, 백해, 카라해 에코시스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환경오염의 영향으로는 러시아의

16) URL: [http://www.federalspace.ru/main.php?id=2&nid=12070\(2017.05.20\)](http://www.federalspace.ru/main.php?id=2&nid=12070(2017.05.20))

17) Кроссполярный экспресс. URL: [zubow.ru/page/1/225_1.shtml\(2017.05.22\)](http://zubow.ru/page/1/225_1.shtml(2017.05.22))

18) Боярский П., Великанов Ю., Павлов А. Артику пора спасать//Нефть России. 1999. № 3.

핵연료 찌꺼기와 핵 잠수함 핵 원자로로 인한 쓰임과 매장에 따라서 염려가 될 것이라는 서방 세계의 분석이다. 북극 모니터링¹⁹⁾ 프로그램에 따른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러시아의 공장에서 사용하여 배출하는 핵연료 찌꺼기는 국부적인 방사능 노출이며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러시아 지역 내에 국한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에는 가장 심각한 오염을 가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 카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물속에 방사능은 아일랜드 해, 발트해, 북해에 속해 있는 것보다 적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에서의 방사능 위험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유는 러시아 북쪽 극지방에서 외국계 회사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북극 지방의 생물권 유지에 대한 문제가 역동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TNK British Petroleum은 쉬토크만스키 매장전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멕시코 만에서의 British Petroleum의 석유시설의 사고의 공식적 심리에 따르면 British Petroleum의 임원진은 안전시설 설비에 투자가 미약하여 결국엔 멕시코 만에 환경적 불행을 만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건이 북극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보다 훨씬 심각한 불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관련하여 캐나다의 예도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자국의 광구 개발에 있어 자국 회사나 타국 기관들이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채굴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개발에 나서지 못한다는 조약이 있다²⁰⁾. 러시아 또한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경쟁력 있는 새롭고 깨끗한 산업기술의 부족에 있어서도 실감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뻐랴리에’에서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채굴 및 운송에 따른 새로운 기술적 해법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북극에서의 러시아는 이곳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의 메카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환경적 요인은 러시아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감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이는 북극 지역 개발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에서 경제성과 기술의 평가가 이어질 경우 일정기간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접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은 북극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감시 기관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와 이사회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책임질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Ⅲ. 개발의 효율성

지난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신보호주의가 대두 되고 있어 여러 국가들의 수출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27일 대한민국 주요 수출국가와 주목해야 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연구의 일환인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 방안 수립’으로 Kotra(글로벌전략지원단, 해외 무역관)와 외부 협력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업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 중 각 나라별

19)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AMAP.

20) Amos W. If there 's an oil spill,who's at risk? Canadian taxpayers.

URL:[http://www.theglobeandmail.com/news/opinions/if-theres-an-oil-spill-whos-at-risk-canadian-taxpayers/article1638799.\(2017.03.09\)](http://www.theglobeandmail.com/news/opinions/if-theres-an-oil-spill-whos-at-risk-canadian-taxpayers/article1638799.(2017.03.09))

SWOT²¹⁾ 분석을 따로 정리했다. 러시아 경우²²⁾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Strengths)으로는 ① 다양한 에너지, 광물, 농수산 자원 풍부 ②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과 미래 해상로인 북극항로에 대한 관할권 ③ 항공우주, 원자력, IT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 보유 ④ 비교적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⑤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약점(Weaknesses)을 분석해 보면 ① 금융부문의 저 발달로 인한 신용정보 확보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 ②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산업 인프라 미비 및 노후화 ③ 복잡하고 변경이 잦은 법제도 및 행정절차 ④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로 꼭 안정적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하지만 강점과 약점을 떠나 러시아는 미래 경제발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회(Opportunities)가 높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분석 될 수밖에 없다. 이유는 ① EAEU 경제 통합으로 인한 시장 확대 ② 신동방정책과 극동개발계획으로 인한 한국의 신성장 공간 확보 가능성 제고 ③ 산업 다각화 및 현대화 정책을 통한 혁신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창업,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들 수 있다. 또한 위협(Threats)적 요소인 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환율급락 ② 우크라이나 사태, 테러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존재 ③ 수입 대체 산업 정책 및 정부조달 제약 조치 등으로 인한 한국의 대러 수출 감소 가능성 ④ 러시아 인구 고령화 및 감소 추세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과학적 연구도 이행해야 한다. 천연자원개발을 비롯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코시스템 보호·북극 기후변화 타격 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극권 경제적 효율성을 보면 아직까지도 인프라의 비효율적인 투자가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노르웨이서 서부 러시아 등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북극은 교통과 항구 등 중요한 인프라 개발이 뒤쳐진 상태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는 북극 진출을 망설일 것이다. 기업들은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²³⁾, 이를 위해서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인 북극해에서 항해할 수 있는 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북극 이사회 이사국 정부의 의견을 모아야 해결 될 수 있는 숙제로 남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극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수단이 위험성보다 더 초관심사가 되고 있다. 몇몇의 평가 기관에 따르면 북극에는 900억 배럴의 석유와 47조3천억 큐

21)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4요소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어떤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SWOT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SO전략 :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기회전략 ② ST전략 :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위협전략 ③ WO전략: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기회전략) ④ WT전략 :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위협전략)

22) 물류신문. 신인식 기자. “글로벌 경제협력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2017년 01월 03일자.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러시아 (필자 박지원 등)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62;>(2017.03.09)

23) 이투데이. 조정은 기자. “북극, 차기 신흥시장 가능성 커…자연보호·비효율적 인프라 투자 등 난관 해결해야” 2013.09.0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87727#csidx3c6ab660f66a127952340848639d542> (2017.03.11)

빅미터의 천연가스, 440억 배럴의 가스 컨덴세이트(condensate)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는 아직 측정되지 않은 전 세계의 저장가스의 25%에 달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²⁴⁾.

북극 해안 또한 이사회 8개 이사국(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이 관할하고 있고, 북극해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로 연결되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활용의 가치가 높은 교통로인 것은 틀림없다. 이 많은 다양한 국가들은 지역 간에 서로 가로질러 다다르는 노선에 관심의 증폭되고 있다(특히 북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북극은 또한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세계 기후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세계 해양의 기후와 수준 등).

IV. 개발의 방법론적 제안

지금까지 연구는 북극 지역 러시아의 자원 구성과 자원 활용가치를 논했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자원과 인류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러시아 북쪽 지역을 주요한 전략적 자원을 기반으로 종합적 발전계획을 세웠고,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사회-경제에 우선적 순위를 두고 있다.

러시아의 북극 전략은 이론적 원칙에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과 올바른 방향으로의 조율 그리고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에 러시아는 보유할 풍부한 미래 자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극해는 지난 십수년간 북극 이사회 이사국 정부 특히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서 강력한 산업 인프라 구성에 앞장섰다. 소비에트 시절 수많은 석유-가스 산업시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 배관설비, 전기발전소, 비리빈스키 원자력 발전소, 석탄광구, 철도, 공항, 바다-하천만 등을 세웠다. 북극의 러시아 지역만 해도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주민수가 각 5천명의 인구에 10만 인구를 가진 4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46개의 도시가 있다. 십만 이상의 도시로는 무르만스크, 노틸스크, 노브이 우렌고이, 나야브르스크 등도 있다.

1990년대 초 러시아는 급격한 경제 불황과 정치적 혼란으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연히 북극에 대한 정부 주도의 활동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산업 시설 인프라의 낙후와 그 지역들의 노동력을 가진 인구의 이탈 등이 몇 해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북극 지역의 노동력 이탈을 막고 지역의 국가적 이익을 만들어 내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북극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의 프로그램 목적은 인프라 재건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 간의 협력을 원칙으로 잡아 나가고자 함도 있을 것이다. 필수적인 인력 보충과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 그리고 전향적인 환경 보존 기술에 따른 북극 재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구성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극에서의 러시아 경제활동은 자원을 채굴하여 해외에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닌 러시아 자체에 공급하는 것이 우선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즉, 석유-가스 재처리 사업을 현대화

24) Smith M.,Giles K. Russia and the Artic : "The last Dash North" Advanced Research and Assessment Group. Russia Series 07/26. Defens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2007. P. 1.

시키는 것으로 높은 수준(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로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의 채굴 및 가스 액화에 따른 생산과 높은 수준의 광물 재처리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으로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수준의 지원이 아닌 직접적, 개별적이고 종전과는 차별을 두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²⁵⁾. 그리고 대기 수상학을 발전시켜 경제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 기반 시설을 개선하며 정보통신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같은 기술을 발전을 시키지 않았으면 러시아는 중, 장기적 향후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아무튼 북극의 개발은 진행 될 것이기에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첫 번째, 향후 북극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술력이 주변 국가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9월 노르웨이와 러시아간의 계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노르웨이에 풍부한 자원이 있는 지역들의 개발을 양보하였다. 이유는 노르웨이가 러시아 보다 북극 환경에 있어 산업 기술 부족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노르웨이가 언젠가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오직 노르웨이가 양보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북극의 접경 밖 특별경제지역 200마일, 그 곳을 개발하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제법은 이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 확실하고 실제적인 경제력이 필요한데 이는 따르는 법과 그 밖의 요인들을 확보한 이후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자원 채굴과 운송 기술을 향상 시키고 습득하는데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미 이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노르웨이의 기술이 가장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극에서 천연자원을 채굴 하는 것에 있어 러시아와 노르웨이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양측을 위한 지역을 두는 데 합의하였다.

러시아 측 뿐만 아니라 노르웨йд도 러시아와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특히 석유-가스 회사인 Hydro Statoil가 관심이 높다. 이는 수산업 관계자들의 로비와 환경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노르웨이 정부는 바렌체바 해역 지역에서의 가스 탐사와 채굴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Hydro Statoil은 자신들의 자산을 넘겨주면서까지 러시아의 가스매장 전에 협력하여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 Shtocrman Development가 바렌체브 해양의 쉬또크마노브스키 매장 전에 오퍼레이터인 Hydro Statoil의 주식 24%를 매입한 것을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곳에서 어떠한 분쟁이건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따른 이사국 간의 영해권을 원만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 이후 이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광구 개발을 국제법에 의해 권리를 확실히 굳혀야 한다. 러시아 또한 이러한 절차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활동을 절실히 요구한다. 러시아는 2001년 풍부한 가스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로마노소프 북극 꼭지점과 멘델레바 광구를 러시아에 포함시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대륙 광구 경계에 따른 러시아 경제 구역 이 외에는 UN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이는 지질학적 증거가 충분치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25)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Путина на заседаниях Президиу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Ф. Салехард, 28-29 апреля 2004г.

URL:www.arctictoday.ru/council/702.html. (2017.04.10)

러시아와 경쟁국가들 또한 이 문제에 있어 위원회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와 덴마크이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극 이사국들은 이 신청서가 학술적 근거가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북극 로마노소프 북극 꼭지점과 멘텔레바를 그리고 라쁘테브이 해양과 바스또치노 시비르스크, 추꼬뜨스끼 광구 등을 잘 이해하는 지질-지구 물리학적 탐험 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실질적 투자 프로그램도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그 밖의 나라들의 지질-지구 물리학적 실험의 결과는, 가스와 다른 종류의 자원 양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륙 광구의 외적 경계를 정하는 등에 따르는 아주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비교 분석은 북극 해양수역을 나누는 것에 결정적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계구역 200마일 지역에서의 예외 경제적 구역 확장에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북극에서 학술적 실험들을 획득하는 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을 것이다. 학술적 기반에 의지하여 정부 정책의 모든 수준과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활용한 북극에서의 외교적 활동에 우선권을 확실히 갖추는 것도 중요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V. 나가면서 : 평화와 협력의 장 Arctic

북극은 러시아의 여러 분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 전략적 의미에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위에서 논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낼 것으로 본다. 러시아 연방 북극 국경은 거의 2만 km에 이며, 일련의 중요한 러시아 안보 산업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외부 요인의 중요성도 적지 않다. 이곳에서의 지속적인 미국 핵 잠수함 탐사,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사일 안보 시스템 구축, 탄도 미사일을 요격 훈련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러시아와 나토 간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나토 간에 실질적인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사실이다. 러시아에 있어 북극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사회-경제적, 인구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큰 어려움이 동반된 것 또한 명확하다.

그러므로 북극지역 원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의 일차적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이 지역의 풍족한 자원을 국제법에 의해 개발과 환경을 고려한 인프라가 구성되었으면 한다. 국제 운송 시스템의 발전 등과 같은 것들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 수요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영해 분쟁, 북극 이사회 이사국들 간의 공동경제활동 조직체와 그들의 협력에서 의서 효과적 메커니즘 등도 상황 상황에 따라 국제정치적 문제로 적지 않게 축적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북극에서는 북극 이사회 이사국 및 국제적 기관들이 협력 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다. 그들 간의 누적된 문제들을 정치 및 법률적인 방향이 아닌 경쟁 또는 무력으로서의 해결 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러시아가 자국의 영해권이라는 지역에서 대륙 광구의 경계, 해양 구획, 석유-가스 생산, 생물자원 채굴, 북극 항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북극 이사국들은 이에 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북극은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험성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여러 나라들의 관심사를

모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오늘날 나토의 군 현대화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력 강화(특히 해양 함대)는 북극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자국의 입장에서 찾고자 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획득하고자 군사 인프라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제사회는 스스로가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보다 러시아의 목적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북극 러시아 영해권에서 군사력 증대 보다는 항공, 해상, 육상에 대한 소유권 쟁취와 이를 법리화 시켜 경제발전과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내고자 함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 러시아의 북극 독트린에 나타나 있다. 러시아 연방의 국경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국경 컨트롤,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의 행정구역으로서 경계, 북극항로 해협, 간척지, 강 하구, 호수 지역의 기구적-기술적 제어를 조직하는 것 등과 같은 북극 정황에 대한 종합적 제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⁶⁾.

결론적으로 북극 이사회 국가들은 북극에 대해 매우 다양한 국가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북극에서의 강력한 자국의 이익을 수호 하려는 것과 다른 국가들과의 이익에서 균형을 찾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들과 나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익을 제재 하려는 대결적 극면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문제들을 사전에 막고자 현재 북극 해상 및 육상 국경에 따른 국경수비대²⁷⁾의 정책 방향을 국제기구(북극 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안보 및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도 북극 위원회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극이사회 회원국이 단순한 협의체에서 온전한 국제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북극에서의 더 이상의 무력화를 진척시켜서는 안 되며, 주요한 분쟁에 있어서는 중재자 역할하기를 바라고 있다. 각 정부의 관심과 더불어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부각시켜 북극에서의 문제를 평화적 해결책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26)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утверждени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от 18 сентября 2008г. (Пр-1969).

27) Проницев В.Е. Граница меняет замки.URL:www.rg.ru/2010/06/02/ pronichev.html. (2017.07.10)

<참고문헌>

- 신인식 기자. “글로벌 경제협력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물류신문. 2017년 01월 03일자.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러시아 (필자 박지원 등)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62>; (2017.03.09)
- 조정은 기자. “북극, 차기 신흥시장 가능성 커...자연보호·비효율적 인프라 투자 등 난관 해결해야” 이투데이. 2013년 09월 05일자 신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87727#csidx3c6ab660f66a127952340848639d542> (2017.03.11)
- 북극에서의 러시아 연방의 2020년까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정부정책 기반
Кроссполярный экспресс. URL: zubow.ru/page/1/225_1.shtml (2017.03.19)
URL: www.rg.ru/2009/03/30/arktika-osnovy-dok.html (2017.03.20.)
- 아르한겔스키 지역의 행정부 장의 자문위원회에서의 발표 논문 “인근 북극 연안 지역 발전 맥박으로서 북극항로의 갱생” 2009년 11월 26일자
URL: www.dvinaland.ru/economy/priority/smp_doclad.htm. (2017.05.19.)
- Amos W. If there ‘s an oil spill, who’s at risk? Canadian taxpayers.
URL: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opinions/if-theres-an-oil-spill-whos-at-risk-canadian-taxpayers/article1638799>. (2017.03.09)
- Алексеев А.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залог подъема экономики Якутии.
URL: www.parldv.ru/index.php?mod=art_show&id_art=195. (2017.05.20)
-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AMAP.
Боярский П., Великанов Ю., Павлов А. Арктику пора спасать//Нефть России. 1999. № 3.
Витязева В.А., Котырло Е.С.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го и зарубежного Севера. Сыктывкар: Сыктывка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07. с. 128.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как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приарктиче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Доклад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глав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рхангельской области 26 ноября 2009г.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Путина на заседаниях Президиу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Ф. Салехард, 28-29 апреля 2004г.
URL: www.arctictoday.ru/council/702.html. (2017.04.10)
- Кочемасов Ю.В., Моргунов Б.А., Соломатин В.И. Эколог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оценка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Арктики.
URL: www.ecoenergy.ru/Article54.html. (2016.12.19.)
- Кроссполярный экспресс. URL: zubow.ru/page/1/225_1.shtml (2017.05.22)
- Истомин А., Павлов К., Селин В. Экономика Ф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и //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2008. № 7. сс. 158-172.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утверждени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от 18 сентября 2008г. (Пр-1969).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арктики. URL: 20100415/220120223.html. (2017.08.2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87727> (2017.04.10)

- Проничев В.Е. Граница меняет замки.URL:www.rg.ru/2010/06/02/ pronichev.html. (2017.07.10)
- Smith M., Giles K. Russia and the Arctic:"The last Dash North" Advanced Research and Assessment Group. Russia Series 07/26. Defens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2007. P. 1.
URL:www.arctictoday.ru/council/654.html(2017.08.29)
- URL:http://www.barentsobserver.com/cppge.4635550-16149.html. (2017.05.19.)
- URL:www.dvinaland.ru/economy/priority/smp_doclad.htm; Арктика-исконно русская земля, и осваивать ее будем мы.(2017.09.10.)
- URL;www.dvinaland.ru/power/head/appearances/10162/index.php. (2017.09.10)
- URL: http://www.federalspace.ru/main.php?id=2&nid=12070 (2017.05.20.)

북극 원주민의 권리¹⁾

서승현

북극 해양 해운은 북극지역 원주민들의 생활양식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각기 다른 의미와 가능성이 있는 원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토대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국제인권규약(ICCPR)²⁾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자국의 부와 재원을 자유롭게 처분하며 자신의 생존 수단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명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극 원주민에게 중요한 점은 국제인권규약(ICCPR)이 한 국가 내의 소수 민족이 자신의 문화, 종교 및 언어를 누릴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항을 노르웨이가 비준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내부 및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노르웨이와 원주민 간의 20년 이상 지속돼 온 협상 끝에 사미족의 자결권이 확정되었다. 북유럽 사미(Nordic Sami) 협약은 기능적 자치권의 범위를 중앙 정부에서 각자의 사미 의회로 확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협약 초안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 임명 된 실무 그룹은 노르웨이 당국에 대한 규정의 일부가 국제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을 넘어서고 있음을 결론지었다. 이것은 북유럽 사미(Nordic Sami) 협약이 여전히 계류 중인 이유의 일부일 수 있다. 북유럽 협약의 일원인 러시아 연맹의 사미(Sami)족은 당이 아니지만, 북유럽 협약과 어떤 형태의 협력을 권고하는 전문가 집단은 러시아 사미족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미족의 실제적 주도권은 정치권력에 넘어간 상태이다.

1) 본 기고문은 Brit Fløistad & Lars Lothe의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the Arctic”을 수정, 보완, 서평한 글이다.

2) 국제인권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한 다자간 조약이다. 2010년 현재 167개국이 참가하고 72개국이 서명했다. 한국은 1990년 4월 10일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서문(序文)과 53개의 문서가 6개 파트로 나뉘어서 기술되어 있는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두 영역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A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B규약이라고 부른다.

A규약과 B규약은 1조에서 자결권을 만국공통의 권리로 선언해 국가가 자결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A규약은 주로 국가가 법률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B규약은 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A규약은 노동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권, 기초생활 향상권, 교육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B규약은 생명권, 인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 노예상태와 강제노동의 금지, 거주이전과 주거의 자유, 평등한 법적 적용,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B규약은 부칙 형태의 제1선택의정서와 제2선택의정서를 두고 있다. 제1선택의정서에서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들이 침해당한 권리를 접수받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제인권규약은 마지막 조항에 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이행을 감시할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 Committee)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756n1101>)

북동 항로 - 토착민

북동 항로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북극의 원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토의 토지와 수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북동 항로/북해 항로를 따라 사는 원주민은 노르웨이와 러시아 연안의 지역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그러한 민족들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아 북극(Sub-Arctic) 지역으로 묘사되는 사미(Sami)족이다. 대략 40,000명의 사미족이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 절반 이상이 러시아 북극과 핀마르크(Finmark)³⁾주(州) 지역에 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미족과 다른 핀마르크 거주민의 핀마르크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생겨난 북해로(Northern Sea Route)도 사미족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핀마르크 Finnmark)주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주로 사미(Sami)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핀마르크주의 법령은 사미 사람들이 핀마르크 지역에서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므로, 해당 지역의 자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듣고 사미(Sami) 의회에 핀마르크 토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의회의 영향력과 이미 획득한 사미족의 권리와 관련하여, 핀마르크 토지국은 토착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⁴⁾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핀마르크 법령은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005년 핀마르크 법안(Finmark Act)은 노르웨이 핀마르크(Finmark) 지역에서 약 95%의 면적(약 46,000km²)을 핀마르크(Finmark) 주민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이 지역은 핀마르크 토지국(Finmark Estate Agency)에서 관리한다. 핀마르크 토지국은 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중 3명은 노르웨이의 사미(Sami) 의회에서, 다른 3명은 핀마르크 주 협의회(Finmark County Council)에서 임명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사미(Sami) 의회와 주 의회가 번갈아 선출한다.

핀마르크 법안의 배경은 자신들의 토지와 문화를 관리 할 권리를 얻기 위한 사미인들의 투쟁이다. 1978년에 노르웨이의 수자원과 에너지 이사회는 인공 호수와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인공호수의 개발로 인하여 사미(Sami)족의 마을인 마제(Máze)가 물에 잠긴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사미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알타(Alta) 논쟁⁵⁾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쟁의 결과로, 노르웨이 정부는 1980년과 1981년에 노르

3) 북극권에 위치한 노르웨이 북부의 주이다. 핀란드(남쪽), 러시아 연방(남동쪽), 북극해(북쪽과 북동쪽)와 경계를 이룬다. 길고 넓은 협만이 들쭉날쭉한 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에는 섬들이 이들 협만을 막아주고 있다.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 해에 있는 노스케이프는 유럽 대륙의 최북단 지점이다. 바드쇠가 주도이지만, 유럽의 최북단 도시인 함메르페스트가 관광교역의 중심지이다. 이곳에는 쇠르바랑거 철광석 광산과 알테 협만과 바랑거 협만을 따라 구리 매장지가 있다. 햇빛이 계속 나고 온도가 적당한(약 9°C) 노르웨이의 여름기간(대략 5. 13~7. 29) 동안에 농작물이 재배된다. 해안에서는 1년 내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어업이 이루어진다. 이곳은 순록떼를 몰거나 어업으로 살아가는 라플란드인들의 고향이다. 면적은 48,649km²이고, 인구는 76,668이다.

4)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만들어졌으며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13항(노동)에 따라 국제연맹(LN)에 속하게 되었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B%85%B8%EB%8F%99_%EA%B8%B0%EA%B5%AC)

5) 알타 논란은 북부 노르웨이의 핀 마르크 (Finmark)에 있는 알타 (Alta) 강에서 수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대규모 시위를 언급한다. 1978년 7월 12일,

웨이 사미 위원회(Norwegian Sami Association), Sami Reindeer의 노르웨이 사미 순록 협회(Sami Reindeer Herders' Association of Norway)와 노르웨이 사미 협의회(Norwegian Sami Council)가 임명 한 사미(Sami) 대표단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사미족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사미 인권 위원회(Sami Rights Committee)의 설립과 사미 의회(Sami Parliament) 설립을 위한 제안, 그리고 2005 년의 핀마르크 법안(Finnmark Act)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핀마르크 법안(Finnmark Act)을 통해 핀마르크의 천연 자원 관리를 위한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 지역의 원주민 인 사미(Sami)족이 획득 한 특정 권리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핀마르크의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한 예로는 이 지역의 구리 및 금과 같은 광물 자원 개발 계획에 관한 것이다. 이 계획은 전통적인 순록 방목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 개발 방법과 사미 인구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High North 정책의 목적 중 하나로서 광물 채취를 공표한 노르웨이 정부는 광물 개발 및 순록 방목은 핀마르크주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핀마르크 법안은 국제법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규범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 조약과 협정에 따라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법과 규정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통적인 영토에 속한 자원의 사용과 소수 민족 단체를 인정한다는 기저 하에 통과되었다. 소수민족 단체의 법률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규정은 소수민족 단체에게 이 원주민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 권리 및 그들의 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소위 원주민 소수민족 공동체를 조직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소수민족 단체들은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직된다. 다른 입법 조치를 더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의 원주민들이 획득 한 실제 권리에 대해보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문제는 이 법과 규정이 어느 정도로 적용되어왔으며,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영토에서 토지와 자원의 실제 개발과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다.

원주민들에 따르면 1980년대 말 러시아 정부의 지원정책은 원주민의 자치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 당국의 원주민 자치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원주민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드러났으며, 또한 러시아 정부 대표자들은 원주민에 대한 가부장주의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주민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실, 원주민에 대한 통제는 그린란드(Greenland) 자치정부 당국이 입법 및 집행 책임을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입법 규칙 및 집행 권한 부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린란드가 그러한 책임을 떠맡는 것은 실질적인 분야에서 자산에 대한 권리와 자금 조달 의무를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법안은 그린란드가 천천히 성숙해지면서 그린

Alta-Kautokeino 수로의 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단체가 설립되어 반대 운동을 시작한 후, 건설 작업에 저항 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단체 관련자들과 일반 참가자들은 노르웨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 착오를 막기 위해 노르웨이 법원에 청원하였다. 1979년 가을 건설이 시작될 준비가 됨에 따라 시위대는 시민 불복종의 표시로 두 가지 행동을 취했다. 즉, 스틸라(Stilla)의 건설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땅에 앉아서 시위를 벌이며 기계를 막았고, 동시에 사미족 활동가들은 노르웨이 의회 밖에서 단식 투쟁을 하였다.

란드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회가 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지만, 그린란드 자치정부 당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자기 유지가능성(Economic Self-Sustainability)을 얻는 것이다. 즉, 자치정부 당국의 목적은 새로운 소득원을 찾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그린란드의 주요 산업은 수산업과 수산 가공품이 모든 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수산업이 그린란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지만, 살아있는 해양 자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린란드가 경제적 자기 유지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수입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날 그린란드는 다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린란드의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적한 그러한 자원 중 하나가 이 핀마르크주에 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탄화수소 라이선스에 대한 참여는 그린란드의 정유회사 Nunaoil A/S가 담당한다. 2009년 법에 따라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이전에 덴마크 정부가 소유한 주식을 인수하여 Nunaoil A/S는 현재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소유이다. 경제적 자급자족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언급 할만한 하나의 난관은 해당 비즈니스 및 산업에 내재된 다양한 임무를 관리할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린란드의 경제 발전에는 탄화수소 이외의 다른 광물 자원도 포함된다. 그린란드의 다양한 광물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주로 외국 기업에 70개 이상의 면허가 발급되었다. 199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캐나다 연방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된 자원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북극지역의 규제 시스템을 구조 조정하고 개선하는데 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메티스(Métis)를 포함한 이누이트(Inuit)에 대한 13개 면허가 또한 있다. 누나부트 준주(Nunavut)는 이누이트(Inuit)와 비(非)이누이트(Non-Inuit)를 모두 지원하는 자체 영토 정부를 운영한다. 1993년에 누나부트 준주의 토지 소유권 주장 합의가 달라졌다. 원주민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그중에 20%가 이누이트인 이 지역에서 약 30개 원주민 공동체 중 4곳의 공동체만이 2003년에 20톤의 위험한 화학 물질로 가득찬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고 해안에 좌초한 지역을 포함한 토지 수용 계약을 체결했다. 컨테이너에 금이 가면서 약 15톤의 화학 물질을 새어 나왔다. 그 당시 재난 대응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염으로 인한 결과를 예방할 예방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바다에서 멀리 나가서 북극을 향해하는 선박들이 이 지역 활동에 환경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예이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사건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선박의 운항이 북극을 횡단하는 것일지라도, 항만 시설과 같은 육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개발은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지만, 원주민이 환영하는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시베리아 소수민족 장난감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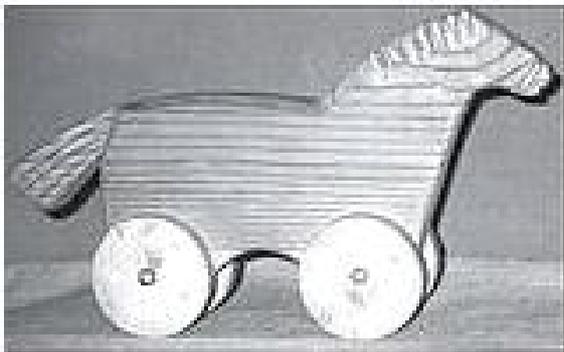
계용택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 발전을 가지고 온다, 또한 외부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장난감 놀이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장난감은 인류에게 고대로 부터 알려져 왔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출토품에서 사람 또는 동물 형태의 장난감들을 발견하였다. 시베리아 지역 고대 마을에서 사람, 동물 모양 및 도기류 유물 등이 발견되었다. 장난감들은 초기에 뼈, 나무, 점토, 식물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유리나 가죽, 철로 만들어 졌다.¹⁾

시베리아 지역에 아이들 장난감이 언제 출현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 시베리아에서는 부드러운 돌이나 mammoth 앞니를 갈아서 만든 장난감들이 발견되었다. 장난감은 항상 모

든 민족의 생활양식에 본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그들 삶의 거울이 되었다.



나무로 만든 말 장난감

예전부터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장난감 제작 공장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베리아에는 집단적인 수공업으로 장난감을 생산하는 공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아이들에게도 항상 장난감이 있었다. 아이들의 어머니, 할머니, 언니 등이 한가할 때 장난감을 만들었다.



나무로 만든 자동차 장난감

이들이 만든 장난감은 나무, 뼈, 자작나무 껍질, 가죽조각 등의 일상생활 소재들로 만들어졌으며 독특한 형상을 지녔다. 장난감은 미래의 성인이 될 어린이들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²⁾

에벤키족 남자아이들은 숨씨 있게 나무 잔가지로 순록들을 몰면서 성인들처럼 순록에 짐을 싣기도 하며 유목 놀이를 하였다. 부랴트족 아이들에게는 말을 묘사한 장난감들이 매우 많았다.

부랴트족은 세습 목축 민족으로 그들의 장난감은 나무나 뼈를 도려내어 만든 다양한 말 모양의 형태

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속학자들은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에서 장난감과 의 연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자 아이들의 장난감은 나무로 만든 자동차 형태가 많은데 화물 및 목재 운반차는 농촌 소년들에

1) <http://www.naomuseum.ru/issled/201-igrushka-v-nashem-krae>

2) <http://www.pribaikal.ru/talci-item/article/2169.html>

의해, 레이싱 자동차는 도시 소년들이 가지고 놀았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는 영웅적 행위 및 군대의 낭만에 대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나무로 만든 항공기, 선박, 권총, 라이플총, 기관총 등이 관심을 끌었다. 장난감은 단지 교육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신격화 되었는데, 수많은 제례의식에 관여하고 부적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난감은 매우 존중받았으며 특별한 바구니 및 상자에 보관 되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딸랑이

고대 최초의 아이 장난감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딸랑이였다. 현대적인 딸랑이와 구별되는 것은 장난감 소재 및 제작기술뿐이다. 한때-만시 자치구에서는 뼈로 만든 2개의 딸랑이가 발견되었다. 이 뼈들은 가축의 다리 발굽관절로 아마도 어린양의 것으로 추측된다. 작은 뼈들에는 구멍이 뚫려있어 이들 구멍사이로 실을 꿰어 침대에 매달았다.

네네쯔족의 딸랑이는 자고새의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졌다. 새들의 모래주머니에 버들이나 밀쌀을 채워 넣어 만든다. 딸랑이의 색상은 투명한 갈색이다.



가축의 발굽 뼈로 만든 딸랑이

밀쌀을 채워 넣은 딸랑이가 마르게 되면 손으로 가지고 놀던지 아기요람에 매달아둔다. 코미족의 딸랑이는 자작나무 껍질로 짜서 만든다. 코미족은 이 딸랑이를 <솿>이라고 부른다. 코미족의 <솿>은 자작나무 껍질로 짜여진 작은 바구니이다. 여기에 조약돌이나 모래를 채운다. 이 딸랑이는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무로 딸랑이 외에도 다른 장난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나무가 농경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나무토막이나 넓적한 형태의 나무로 장난감들이 만들어 졌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만들어진 통나무집에서 나무로 만든 손도끼가 발견되었다. 또한 가벼운 개썰매에 사용하는 작은 나무 조각도 발견되었다.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에선 개썰매 없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아버지가 개썰매를 만드는 것처럼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개썰매를 만들었는데 실제 개썰매와 매우 흡사하였다. 더 나아가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순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장난감 순록은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장난감 순록 제작에 사용된 나무는 한쪽이 돌출되고 다른 쪽은 비스듬히 절단된 작은 나무 블록을 사용하였다. 툰드라에 사는 네네쯔족은 그들의 활동, 상거래, 대화 등이 순록 주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순록은 네네쯔족에게 삶과 재산, 자랑거리, 희망이었다.

러시아인의 구비문학, 서적, 문학작품에는 말의 형상이 뿌리박혀 있다. 러시아인들에게 말은



새의 모래주머니로 만든 딸랑이



점토로 만들어진 망아지 장난감

다. 인형놀이는 단지 여자아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어린이들은 인형놀이를 하였으며, 아이가 7-8살이 되어서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옷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때 남자 아이는 바지를 입었고, 여자아이는 치마를 입었으며, 그들의 역할과 놀이가 확연히 분리되었다.

7-8살 이후 여자아이들은 결혼할 때 까지 인형과의 놀이에 관심이 줄어들었다, 형겔 인형은 단순 여성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이 인형은 시적이며 원시적인 순수함과 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인형놀이는 삶의 거울과 같은 것으로,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반영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민족의 도덕적 기반 및 미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의 민족문화에서 민족적 축일 및 제전에 인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제례의식용 인형을 만들 때에는 찌르거나 베일 수 있는 물체 사용이 금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형제작을 위해 천이나 실을

고대로 부터 끊을 수 없는 동반자이다. 러시아 농민에게 말은 농경에서 도움을 주는 부양자이며 이야기 상대가 되었다. 장난감 말은 나무뿐만 아니라 점토로도 만들어 졌다. 네네쯔족 자치구에서 점토로 만들어진 망아지가 발견되었다.³⁾

고대로 부터 인형은 여러 제례의식에 참가자가 되었다. 인형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연결된 고리역할을 하였으며, 혼수상태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중개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기 인형들은 고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더나가 인형-허수아비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사람대신에 신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거의 모든 고대 슬라브민족의 제례의식에서 인형들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선조들은 종교의식 과정에서 인형과 함께 있지만, 놀이나 오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정신적인 작업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형은 질병, 불행, 굶주림, 무자식을 피할 수 있는 부적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시베리아에 사는 러시아인들의 생활양식에서 형겔 인형은 가장 확산된 장난감중의 하나이

3) <http://lepni.narod.ru/lep6.html>



새 부리 형상의 인형

다양한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들 인형은 스스로에게 질병이나 불행을 대신하여 가질 수 있고, 농사 풍작을 도와준다고도 믿었다.



얼굴, 손, 발이 없는 네네쯔족의 인형

칼로 자르지 않고 찢어서 사용하였다.

네네쯔족 세례의식용 인형의 몸통은 색상이 있는 두꺼운 천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머리 부분은 여자 인형인 경우 오리 부리로, 남자 인형의 경우 거위 부리로 만들었다, 두꺼운 천 덩어리와 새의 부리 접합부분은 천 조각으로 감 싼다.

네네쯔족의 전통적인 인형에는 개성을 특징짓게 하는 눈, 코, 입 등이 없는데 특히 손과 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인형에서 손이나 다리가 없는 부분은 모피로 된 인형 옷을 감고 띠로 두른다.

이러한 인형에는 악령이나 다른 악한세력이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또한

전통적인 러시아 인형은 형태와 장식에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수많은 농촌명절은 교회의 달력을 따라 지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인형들은 명절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중에는 세례의식용 인형, 결혼인형, 학질인형, 집안에 행운을 주는 인형들이 포함 되었다.

이밖에 인형들을 아이의 요람에 두어 악령을 물리치기도 했다. 인형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집안에 소중히 보관하였다.

이렇게 각각의 민족들의 문화에서 장난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극권 관련 뉴스
(2017.09.26 - 2017.12.20. 최신 뉴스순 정리)

계용택

2017-12-19 http://polit.ru/news/2017/12/19/ps_protarcros/
☞ 고대 캐나다 북극곰은 딸기를 좋아하였으며 만성 골염을 앓았다

2017-12-14 <http://www.itar-tass.com/nauka/4811361>
☞ 최근 1500년 동안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

2017-12-06 <http://fishretail.ru/news/novie-ribolovnie-rayoni-v-arktike-stanovyatsya-380451>
☞ 기후 온난화로 북극의 신규 어로구역이 늘어나다

2017-12-06 <http://peterburg.fishretail.ru/news/v-sankt-peterburge-zavershilsya-vii-megdunarodniy-380442>
☞ 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포럼 <북극의 현재와 미래> 포럼이 완료되다

2017-12-04 <http://fishretail.ru/news/kanada-podpisana-istoricheskaya-megdunarodnaya-dogovorennost-o-380293>
☞ 캐나다는 북극에서의 산업생산에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다

2017-12-04 <http://ca-news.org/news:1419153>
☞ 북극에서 일시적으로 상업적인 어로활동 금지가 실시되다

2017-12-03 <http://echo.msk.ru/news/2103518-echo.html>
☞ 얼음이 녹는 북극수역에서 어로활동이 금지되다

2017-12-03 <http://echo.msk.ru/news/2103496-echo.html>
☞ 북극에서 온난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어로활동이 제한되다

2017-11-29 <http://www.ng.ru/news/601330.html>

☞ 톨러슨은 미국이 북극이용에 뒤쳐져 있음을 밝히다

2017-11-24 <http://www.itar-tass.com/politika/4756212>

☞ 러시아의 북극개발에 관한 법률이 내년에 채택될 수 있다

2017-11-21 <http://www.itar-tass.com/v-strane/4745123>

☞ 북극 겨울 관광을 위한 도로가 야쿠치아에 개설되다

2017-11-20 <http://www.interfax.ru/russia/527147>

☞ 러시아 정부는 북극대를 선도개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다

2017-11-16 <http://www.itar-tass.com/nauka/4734037>

☞ 북극얼음속에 동결된 고대 박테리아는 화성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2017-11-16 <http://www.itar-tass.com/v-strane/4733149>

☞ 야쿠치아에서 북극 개설매 관광을 계획하다

2017-11-16 <http://24rus.ru/more.php?UID=149736>

☞ 타이미르에서 제3차 북극 축제를 준비하다

2017-11-15 <http://www.itar-tass.com/nauka/4730655>

☞ 튜멘의 학자들은 북극에서의 도로건설에 필요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다

2017-11-15 <http://interfax.com.ua/news/economic/461949.html>

☞ 환경학자들은 북극에서의 유전탐사를 허가해준 노르웨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다

2017-11-10 <http://www.itar-tass.com/v-strane/4713305>

☞ 북극의 깨끗한 자연과 현지주민들의 생활양식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다

2017-11-02 <http://www.ng.ru/news/598939.html>

☞ 러시아 북극지역에서 인가되지 않은 위험한 폐기물 저장소가 발견되다

2017-11-01 <http://echo.msk.ru/news/2084206-echo.html>

☞ 미국재무부는 북극에서의 러시아 석유채굴 프로젝트에 미국인 참여를 금지하다

2017-10-23 <http://echo.msk.ru/news/2077930-echo.html>

☞ 북극에서의 활동을 위한 러시아 호송부대가 창설되다

2017-10-23 <http://www.itar-tass.com/v-strane/4663864>

☞ 최초의 북극 수륙양용 비행기 L-172가 2018년에 야말에 공급될 것이다

2017-09-29 <http://news.tut.by/https://news.tut.by/world/562488.html>

☞ 최근 10년간 북극 얼음면적이 13퍼센트 감소하다

2017-09-27 <http://www.itar-tass.com/v-strane/4596717>

☞ 튜멘 학자들은 북극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순록고기와 야생 식용식물로 만든 소시지를 개발하다

연구단 소개

 <p>북극연구단장</p> <p>한종만(韓種萬, Han, Jong-Man)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mhan@pcu.ac.kr 논저: “러시아 극동바이칼지역의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과 한러 경제협력의 시사점(2014)”,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의 자원/물류 전쟁(2014)”, “러시아 현대화전략의 가능성 및 시사점(2012)”,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 (2014), 『TKR 건설, 북한을 열고 세계를 뚫다』 (2013),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 (2010) 등</p>	 <p>러시아북극연구팀장</p> <p>김정훈(金正勳, Kim, Jung-Hu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hkrm@pcu.ac.kr 논저: “‘한·러 수교’ 이후의 한국 내 시베리아 지역 연구현황(2010)”, “러시아 극동 지역의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에 관한 현황적 분석(2010)”, “러시아 극동지역 범죄증가 현상의 사회·역사적 요인(2014)” 등</p>
 <p>공동연구원</p> <p>계용택(桂鏞澤, Ke, Yong-Tek)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러시아리서치 센터 대표 e-mail: dovri@hanmail.net 논저: 『러-한 경제용어』(2013) 『러-한 의학용어』(2013) 『러-한 화학용어』(2013) 등</p>	 <p>박사급연구원</p> <p>박종관(朴鍾寬, Park Jong-Kwa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한국교통대학교 e-mail: parkjk7377@naver.com 논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2009)”, “중앙아시아 - 세계 지정학 전쟁의 투기장(2011)”,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살펴본 러시아의 유라시아 커뮤니티 시스템: 중요성과 제한(2014)” 등</p>

 <p>공동연구원</p> <p>배규성(裴奎星, Bae Kyu Sung)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 현) 한국-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 센터장 e-mail: baeks777@pcu.ac.kr 논저: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과 부패현상 - 국유기업을 중심으로(2013)”, “악의 삼각축: 조직범죄·부패·테러리즘 - 러시아 마피아를 중심으로(2011)”,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2010) 등</p>	 <p>공동연구원</p> <p>서승현(徐承顯, Seo, Seunghyun) 미국 Indiana University 슬라브언어학 박사 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mail: seoseung5@hanmail.net 논저: “사할린 인구 감소 현상과 그 원인(2014)”, “Consonantal Devoicing and Assimilations/Dissimilations Phenomena in Chukchee(2011)”,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German, and Polish Diasporas in the Russian Far East & Central Asia and the Results of Repatriation to Their Homelands(2010)" 등</p>
 <p>공동연구원</p> <p>양정훈(梁庭熏, Yang, Junghun) 러시아외교아카데미 국제정치학 박사 e-mail: jhyang@suwon.ac.kr 현) 수원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논저: “극동연해주 지역 한국과 러시아의 농업협력(2013)”, “한국의 대외정책 및 러시아와의 관계(2013)”, “한국의 대외정책 및 러시아와의 관계(2013)” 등</p>	 <p>공동연구원</p> <p>예병환(芮秉煥, YAE Byung-Hwan) 독일 Bamberg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대구대학교 강사 e-mail: yaebh@pcu.ac.kr 논저: “Die handelsbeziehungen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nach dem Zweiten Weltkrieg,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1997)”. “푸틴시기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2010)”,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과 부패현상-국유기업을 중심으로(2013)” 등</p>

 <p style="text-align: right;">선임연구원</p> <p>이재혁(李在赫, Yi, Jae-Hyuk) 독일 키일대학교/경희대학교 지리학박사 현)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e-mail: yijh@hallym.ac.kr 논저: “Koreanische Migration nach Russland(2002)”,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인 구의 형성과 발달』 (2010),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공저)』 (2014) 등</p>	<p>[공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월 창간한 본 전자저널 ‘북극 연구(The Journal of Arctic)’는 한국연구재단 2014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간한 ‘북극연구단(KARC)’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호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잡지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난 2017년 12월 북극연구단을 중심으로 ‘북극학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전자저널 ‘북극연구’ 이번 호(11호)부터 공동출간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널 ‘북극연구’와 같은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p style="text-align: right;">박사과정생</p> <p>백영준(白榮準, Baek, YoungJun)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아스타피예프 국립사범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kiseling@daum.net 논저: 『북극의 눈물과 미소』 (2016)</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보조원</p> <p>박찬주(朴贊珠, Park, Chan Ju)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 경영학 전공 e-mail: pcj0389@naver.com</p>
---	---

자문위원

이병화	주 노르웨이/주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대사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성조	극지연구소 자문위원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11. 2017 Winter

- 발행인 : 한종만(북극연구단 단장, 경제학박사 jmhan@pcu.ac.kr)
- 편집집 : 김정훈(러시아북극연구팀장, 역사학박사 jhkrm@pcu.ac.kr)
박종관(박사급연구원, 정치학박사 parkjk7377@naver.com)
계용택(공동연구원, 역사학박사 dovri@hanmail.net)
배규성(공동연구원, 정치학박사 baeks777@naver.ac.kr)
서승현(공동연구원, 언어학박사 seoseung5@hanmail.net)
양정훈(공동연구원, 정치학박사 jhyang@suwon.ac.kr)
예병환(공동연구원, 경제학박사 yaebh@pcu.ac.kr)
이재혁(선임연구원, 지리학박사 yijh@hallym.ac.kr)
- 연구보조원 : 백영준(박사과정, kiseling@daum.net)
박찬주(학사급, pcj0389@naver.com), 010-8912-0691

발행처 : 한국북극연구단(KARG), 북극학회

전화번호 : 042)520-5364

F A X : 070 4850 8428

주소 :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1길14

배재대학교 21세기관 448호(배재대학교 한국북극연구단)